

R 966 | 2022. 10. |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Tasks to Expand Farm Income Reporting

임소영 김정승 김영준 박미선 김태곤 박명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7장 집필

김정승 | 연구원 | 제3, 4장 집필, 자료 수집 및 분석

김영준 | 강원대학교 조교수 | 제1, 3장, 부록 집필

박미선 | 부연구위원 | 자료 수집 및 분석

김태곤 | KREI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 일본 사례 조사

박명호 | 홍익대학교 조교수 | 영국 사례 조사

연구보고 R966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2. 10.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동양문화인쇄포럼

I S B N | 979-11-6149-584-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나 정부가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가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분야 내의 농가 단위 소득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득파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농업분야의 소득파악 활성화로 이어져 농정의 고도화, 농가의 경영개선, 농가 지원 확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자료 수집에 협조해주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농협 관계자, 농산물 유통 관계자, 농업재무회계 전문가, 농업인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해주신 원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2.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농업 현장에서 매출 및 소득파악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보관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농업인의 세무·회계 활용도와 소득신고 의사를 조사하여 농업소득의 파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여 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 이 연구에서는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 관행과 장부 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은 1,709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 대상 중 704명은 청년창업농이다.
-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였으며 세무사, 농업정책 전문가, 조세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득파악 방안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 영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신고사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 개인 차원에서 매출을 파악하는 것과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은 차이가 있다. 농업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고 할 경우, 매출액은 자기 기입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다. 소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정보의 범위는 매출만 파악, 매출과 주요 비용 파악, 매출과 상세 비용 파악 순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정보의 범위가 작으면 추계 방식, 확보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넓으면 장부기장을 비롯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다.
- 농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이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략적으로는 매출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업인이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어도 매출자료를 가지고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으로는 상당수의 농업인이 소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인건비 지출 관련 자료를 생산할 수 없고, 고령화로 인해 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이 많다는 점은 비용 파악까지 어렵게 만들어 장부를 이용한 소득신고를 농업인이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소득파악과 연관된 영농환경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을 신고할 유인인 없다는 점이 소득파악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 소득파악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나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

견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신고 도입 시 찬반이 매우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인들이 소득신고에 부정적인 이유는 세부담과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장부 작성, 신고절차 이행 등에 따른 번거로움이다.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농업경영체가 세부담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꺼리며, 고령농이 소득파악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담과 소득파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 제언

- 소득파악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제도개선 과제는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이다. 국가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경영개선 등 소득파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신력을 갖춘 소득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이기 때문에 세제개편을 통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또한 인건비 지출자료, 판매자료를 농업인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납세라는 목적이 없이는 농업인이 소득신고를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 과세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농업분야는 여전히 영세성이 높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세수에 비해 클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납세 환경이 개선되었고 농업소득의 신고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농업분야의 과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는 국세청 소득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첫 번째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을 도울 수 있는 인력 지원이다.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판매 및 지출 증빙자료의 수집과 기록이며 이를 돕기 위한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가 세무사와의 계약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등록의 활용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전체 농업인이 소득신고 의무를 가지더라도 일부 영세농은 여전히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세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도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전산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발전하고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기초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수집에 드는 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장부를 작성하는 소득신고자에게 정책금리 추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 세제를 개편하고 농업인의 소득신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득자료를 이용한 농정 고도화이다. 소득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득자료를 활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소득자료의 활용 확대는 소득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 역으로 소득 기반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득신고 활성화의 목적이기도 하다. 소득 기반 농정은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정책의 확대, 정책수혜 자격 확인에 소득정보 활용, 소득 수준별 차등화 지원, 정책금융 지원 시 근거자료 활용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신고의 확대는 농업인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 확대 등의 편익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납세를 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제개편이 가져올 국가경제적 영향과 지원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농업계 내부적으로도 소득파악 및 신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소득신고 의향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준 것처럼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과 소득파악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신고 의사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득신고로 인한 영향도 농업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 간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 현재는 소득추계만으로 대략적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이 이루어져야 경영손실 증명이나 정확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장부 작성 방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매우 단순한 추계방식에서 장부 기장으로 점진적으로 신고제도가 변화하였다는 점도 신고방식의 점진적 이행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Policy Tasks to Expand Farm Income Reporting

Purpose of Researc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olicy tasks for expanding agricultural income reporting in response to the policy changes towards income-based support.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ituation of collecting information used to calculate income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reporting agricultural income when it is mandated.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sons why farmers do not report their income, and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promote farm income reporting such as a reporting assistance scheme.

Research Method

- In this study, we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to understand the current income identification system, income reporting in foreign countries, and sale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grasp the present state of work practices in farm businesses, we surveyed farmers with regard to transactions and the collection of trading documents such as bills, bookkeeping, and the experience of income declaration. In addition, farmers' perceptions of the need to report income and their intention to do so were also surveyed.

- In addition to the survey, a number of meetings were held with experts in agricultural product distribution, persons working for Nonghyup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merchandisers, and farmers to supplement the survey. Also, we interviewed tax accountants and researchers having expertise in tax policy to seek advice on policy tasks to expand income reporting in the agricultural sector.
- This study includes income reporting by farmers in the UK and Japan to derive implications to Korean farmers and policy makers in terms of expanding income reporting.

Main Findings

- As a result of our survey of farmers,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m received papers related to sales and could roughly grasp their sales.
- As different reporting methods are applied corresponding to sales, the range of information required for income declaration can be expanded in the following order: only sales, sales and major costs, and sales and detailed costs. That is, more complicated accounting methods such as bookkeeping by double entry are required of a reporter with higher level of sales and vice versa. Therefore, given that farmers collect and keep sales information and they remember their total sales to some extent, it is not impossible for farmers to report income to the tax authorities at least by estimating methods.

- It is necessary to obtain information on costs in order to calculate farm income with accuracy and to report it by bookkeeping. However, it is rare to acquire documents related to labor cost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farmers find it difficult to keep books due to aging and complexity of taxation.
- Regarding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income identification, some positive results were found from the survey. Nonetheless,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have negative opinions about income declaration was similar to that of supporters. Therefore, it seems that farmers will be sharply divided if the income declaration system is introduced.
- One of main reasons for negative responses about income declaration is the inconvenience caused by the burden of paperwork and bookkeeping. Possible tax burden was found to be another main reason to be unwilling to report income.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reporting procedure and to reduce tax burden so that farmers become less reluctant to report income.

Policy Suggestions

-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bookkeeping method to be expanded in the long run because more accurate income must be identified to prove management losses or make accurate management diagnosis. The fact that the reporting system has gradually changed from a very

simple estimation method to a bookkeeping method in foreign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examined in this study also suggests the need for a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complicated reporting method.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incentives for farmers to keep books.

- The first institutional improvement tasks for vitalizing income identification are income tax on agricultural income and value-added tax on raw agricultural produc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income identification such as government support, financing through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nagement improvement, income identification is required so that public confidence can be gained. However, since income data can win public credibility through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taxation through tax reform is inevitable. In addition, since a business registration is required for farmers to produce labor cost and sales data, income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is essential. Above all, the fact that there is no incentive for farmers to report income without the purpose of tax payment causes the need for taxation. Since the agricultural sector is still small, collection costs may be higher than tax revenues, but the tax environment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socio-economic benefits of reporting agricultural income are very large, so it is necessary to push for taxation in the agricultural sector.
- The second is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o facilitate income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in principle. As specific plans,

first, human resources who can help collect and record basic data are necessary. As a result of our survey, it was found that farmers feel difficulty in collecting and recording sales and cost evidence, and they most need human resources who can help them to do thi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ifficulty of reporting income by supporting tax services to farmers through contracts with tax accountants by producer organizations, including Nonghyup. The second is the use of the agricultural holding registration system. Through the tax reform, even if all farmers are obligated to report income in principle, some small farmers can still be exempted from the duty to report, and there is a limit to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In order to sup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use the agricultural holding registration system as an auxiliary. The third is the active use of computerized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effort to collect data by constructing a system that allows farmers to input information through third parties rather than directly collecting basic data by actively using the developing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fourth plan is to induce more accurate identification of income by providing incentives such as additional cuts in policy interest rates to reporters who prepare books.

- Improving agricultural policy by using income data is as important as reorganizing the tax system and establishing a system that can help farmers report their income. The reason why income is not well identified is that income data has not been used, so the expansion of the use of income data serves as an opportunity to vitalize income

reporting. Conversely, promoting income-based agricultural policy is also the purpose of vitalizing income reporting. Income-based agricultural policy can be embodied by expanding management stability policies based on income data, using income information to verify eligibility for policy support, providing differentiated support by income level, and using evidence when providing policy financial support.

- In addition to the benefits of improving business and being qualified to receive governmental supports which are based on income reports, the expansion of income reporting is important in that farmers' tax payment increases the public persuasion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m. In order to expand income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more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national economic impact of the tax reform and how to build a support system.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ensus on income identification and reporting within the agricultural sector as wel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farmers' intention to report income, their intention may vary depending on their economic situations and their perceptions of income identification.

Researchers: Lim Soyeong, Kim Jeongseung, Kim Youngjune, Park Misun, Kim Taegon,
Park Myeongho

Research period: 2022. 1. - 2022. 10.

E-mail address: syl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5
3. 연구 범위와 방법	11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13
1.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	15
2.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	19
3. 소결	24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27
1. 국세청 사업소득신고	29
2.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소득파악 체계	34
3. 농업분야 소득정보 작성 및 수집 현황	39
4. 소결	54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57
1. 농산물 매출 및 생산비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실태	59
2. 소득파악 및 신고 의사	88
3. 소득신고 시 필요한 지원 영역	102
4. 시사점	104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109
1. 프랑스 농업소득신고	111
2. 일본 농업소득신고	116

3. 영국 농업소득신고	121
4. 시사점	128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129
1. 농업분야 세제 개편	131
2. 소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34
3. 소득정보 기반 정책 확대	142
제7장 요약 및 결론	147
부록	
1. 농업인 소득신고 유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3
2. 일본 농협의 청색신고 지원	162
3. 농업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171
참고문헌	181

표 차례

제2장

〈표 2-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변천	16
〈표 2-2〉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17
〈표 2-3〉 매출액 감소 근거자료	23

제3장

〈표 3-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30
〈표 3-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31
〈표 3-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31
〈표 3-4〉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32
〈표 3-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33
〈표 3-6〉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33
〈표 3-7〉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36
〈표 3-8〉 자영업자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및 월보험료 예시	37
〈표 3-9〉 2020년 주요 업태별 사업소득신고 현황	41
〈표 3-10〉 최근 5년간 농림어업 사업자의 금액별 신고 건수	41
〈표 3-11〉 농축산물소득자료 조사 작목별 표본 농가 수(2020년)	47
〈표 3-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표본 규모(2020년)	48
〈표 3-13〉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조사 항목(2020년)	49

제4장

〈표 4-1〉 인터뷰 시행일, 장소, 대상	60
〈표 4-2〉 응답자 일반 특성	62
〈표 4-3〉 농산물 출하처	66
〈표 4-4〉 판매처별 농업인 매출 증빙 서류	67
〈표 4-5〉 출하 방법별 발급되는 증빙자료 및 지역농협 보관 여부(금천농협 사례) ...	68
〈표 4-6〉 영농형태별 농산물 판매금액 증빙 서류 수수 여부	69

〈표 4-7〉 발급받는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	69
〈표 4-8〉 구입처별 농업인 농자재 구매 비용 증빙 서류	70
〈표 4-9〉 농자재 구입처	71
〈표 4-10〉 농자재 구입대금 지급 방법	71
〈표 4-11〉 농자재 구입대금 증빙 서류 수령 여부	72
〈표 4-12〉 발급받는 농자재 구입대금 증빙 서류	72
〈표 4-13〉 영농분야별 인력 고용 여부	73
〈표 4-14〉 인력 고용 시 노무관리 현황	74
〈표 4-15〉 농지 임대차 계약 방식	76
〈표 4-16〉 농지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77
〈표 4-17〉 농지 임차 시 임대료 지급 방식	78
〈표 4-18〉 농작업 외부 위탁 여부 및 비용 지급 방법	79
〈표 4-19〉 농산물 판매 및 비용 관련 증빙자료 보관 현황(현지통신원)	80
〈표 4-20〉 영농 관련 기록 형태(현지통신원)	81
〈표 4-21〉 경영상태 파악(청년창업농)	81
〈표 4-22〉 경영장부 활용 용도	82
〈표 4-23〉 농업회계 프로그램 현황	83
〈표 4-24〉 농업회계 프로그램 활용 현황	84
〈표 4-25〉 경영기록 장애요인	85
〈표 4-26〉 경영장부 작성 방법(청년창업농)	85
〈표 4-27〉 매출/생산비 지출 관련 자료 전산 기록 여부(현지통신원)	86
〈표 4-28〉 연령대별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농가	87
〈표 4-29〉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88
〈표 4-30〉 연령대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89
〈표 4-31〉 영농분야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90
〈표 4-32〉 경영주 성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90
〈표 4-33〉 사업자등록 여부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91
〈표 4-34〉 연평균 매출액 규모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91

〈표 4-35〉 연령대별 매출액 및 비용 파악 가능성에 대한 인식	92
〈표 4-36〉 영농분야별 매출액 및 비용 파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93
〈표 4-37〉 국세청 농업소득신고 의향(세부담 미발생 가정)	95
〈표 4-38〉 국세청 농업소득신고 의향(세부담 발생 가정)	95
〈표 4-39〉 소득신고 장애요인	96
〈표 4-40〉 순위 로짓 모형의 변수 기초 통계량	100
〈표 4-41〉 소득신고 의향에 관한 분석 결과	101
〈표 4-42〉 소득파악/신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영역	103
〈표 4-43〉 소득파악/신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104

제5장

〈표 5-1〉 프랑스 소득세율(2022년 기준)	112
〈표 5-2〉 프랑스의 과세 카테고리	114
〈표 5-3〉 프랑스의 정액소득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비교	115
〈표 5-4〉 일본 소득세율	116
〈표 5-5〉 일본의 농업소득신고 시 인정 경비	117
〈표 5-6〉 일본 청색신고의 간이기장 장부	118
〈표 5-7〉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방식 비교	119
〈표 5-8〉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120
〈표 5-9〉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소득세율 체계	123
〈표 5-10〉 스코틀랜드 소득세율 체계	123
〈표 5-11〉 개인사업자의 과세 여부 및 장부기입 의무	125

제6장

〈표 6-1〉 지역별 국세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서 수	139
---------------------------------------	-----

부록 2

〈부표 2-1〉 농협과 세무사의 청색신고 업무 분담	164
〈부표 2-2〉 사가 농협 청색신고회의 연간사업	167

부록 3

〈부표 3-1〉 마이데이터 원칙	172
〈부표 3-2〉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예시	173
〈부표 3-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참여 사업자(2022년 7월 기준)	176
〈부표 3-4〉 마이데이터의 제공 정보	17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12
-------------------------	----

제3장

〈그림 3-1〉 국세청 등록 농업 사업자 수	40
〈그림 3-2〉 수입보장보험의 보장 범위	54

제4장

〈그림 4-1〉 임차료 지불 형태	77
--------------------------	----

제5장

〈그림 5-1〉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차이	119
---------------------------------------	-----

제6장

〈그림 6-1〉 소득신고 지원체계 구축 예시	136
--------------------------------	-----

부록 1

〈부도 1-1〉 대출 한도 및 리스크가 있는 투자의 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157
〈부도 1-2〉 확실한 투자의 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158
〈부도 1-3〉 정부 지원금 수혜 등 편익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159
〈부도 1-4〉 소득신고 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160

부록 2

〈부도 2-1〉 농협의 농업경영지원사업과 청색신고 지도	163
〈부도 2-2〉 JA 사가의 농업부기시스템 개념도	169

부록 3

〈부도 3-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173
〈부도 3-2〉 NH국민은행 마이농가 서비스	178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 필요성

국내 농업정책은 해방 이후 생산성 향상과 가격지지를 목표로 추진되다가 WTO 출범과 시장개방이 확대되면서 소득안정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소득안정정책은 직접지불제 및 재해보험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은 품목을 특정하여 가격을 지지하기보다는 품목 및 농가 단위의 소득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0년에는 공익직불제가 시작되어 농지 형상 유지,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을 조건으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농업정책은 소득안정을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소득안정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농가소득자료는 확보되지 않고 있다. 농가 소득은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표본조사나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농축산물 소득조사자료를 통해 평균적으로 파악되지만 이는 통계적 목적을 띤 것으로서 농업경영체 지원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농가의 소득파악은 농업경영의 진단과 경영개선 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농업인이 자신의 매출과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작목 선택,

마케팅 전략 수립, 투자 결정, 비용 절감 방안 검토 등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농업인의 상당수는 경영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전략을 세우는 일도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내 복지정책이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구분하고 지원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가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국민에 대한 지원이 소득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는 고용보험의 범위를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원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가 활용되었다.

그러나 소득 기반 복지정책의 논의 속에서 농업분야는 소득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시, 주로 특고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논의할 뿐 농가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농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규모 농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소득에 기초하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이처럼 농업소득의 파악 및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농업인에게 소득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농산물 매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는 농업 환경이 납세 편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소득신고를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식 작성 및 제출 등을 하기에는 농업인의 경영 관행이나 인프라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농업인의 거래는 전산화되고 있고 경영장부의 보급도 과거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직거래 판매가 늘면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농업인도 증가하는 추세이다.¹⁾ 이것은 소득파악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1) 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2007년 1만 8,446명에서 2021년 4만 90명으로 증가하였다(국세청, 2021a).

과 여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소득파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농업분야 소득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소득신고 방안에 대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분야의 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확대와 농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농업소득과 관련된 기초 정보 획득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농업 현장에서 매출 및 소득파악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및 보관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농업인의 세무·회계 활용도와 소득신고 의사를 조사하여 농업소득의 파악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분석하여 소득신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와 지원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노동자 대상 소득파악

권형근(2017)은 2009~2015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율과 가구 특성별 소득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별 분석에서는 소득 하위권 가구의 소득축소 보고율이 상위권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김재진(2004)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근거자료로 소득파악 과세 인프라 현황을 소개하고 자영업자의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한 조세제도와 정책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및 면세 범위 축소,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금대체 결제수단의 다양화, 적격영수증 사용범위 확대, 기장의무자 확대 등 총 15개를 제시하였다.

김문정(2020)은 특고종사자 관련 소득파악 실태를 조사하고, 과세자료에 근거한 소득파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국세청은 특고종사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 1)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보고된 인정용역 소득자료, 2) 사업장 제공자가 제출한 특고종사자 과세자료, 3) 특고종사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과세자료에서 특고종사자를 보다 식별하기 쉽도록 국세청 인정용역 코드를 개편하고 특고종사자와 관련된 업종을 세분화하여 특고종사자의 실태 파악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신영임, 강민지(2014)는 2003~2012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의 소득 분위별 소득탈루율을 추정하였다. 연구에서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정확하게 보고되었고,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함수는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먼저 근로자 가구의 소득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의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추정 소득에 기반한 소득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3년 자영업 가구의 소득탈루율인 약 25%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소득별로 소득탈루율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탈루율이 중산층의 소득탈루율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에 가까울수록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소득탈루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유한욱(2008)은 개인사업자의 소득파악률 개선을 위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소득조사 현황을 살펴보고 탈세이론에 기반한 최적 소득조사 전략 수립 및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의 생계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소득조사전략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선주 외(2011)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7종(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자차),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의 소득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개선과 그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규언, 오윤택(2005)은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과소신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영업자 사업소득신고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성실납세 유인제도 정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납세제도 개선을 위해 1) 중간예납 횟수 증가, 2) 세금 선납제도 도입, 3) 성실신고자에 대한 소득세 평준화제도 도입, 4) 신고성실도를 반영한 세무조사 결과 차별적 처리, 5)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신고 활성화, 6)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에 대한 자진신고제도, 7)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시행의 총 7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인혁, 정훈(2021)은 이 연구와 가장 유사한 배경을 가지고 진행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복지 체계의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세청의 소득파악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무행정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방안은 임금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월별로 제출할 것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정형 취업자의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정형 취업자의 소득신고가 정착되기 전에는 소득추계 모형을 개발·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

2.2. 농업회계 및 경영장부

농촌진흥청(2020)은 농업회계의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회계관리를 이용한 현장 컨설팅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우수 컨설팅 사례를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회계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농업회계 프로그램인 더존, 회계박

사,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바로바로, 옥답, 알차니, 태극회계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경영기록 및 농업회계 활용 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농가경영기록 및 농업회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시간 부족 또는 기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농업회계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무제표 해석의 어려움과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인해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농가 실정에 맞는 농업회계 실용화를 위하여 농업회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소순열 외(2007) 또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농업경영기록의 실태를 분석하고 경영진단능력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에서 경영기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가경영에 관한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한 농가가 가장 많았고(34.6%), 다음으로 시간이 없다는 응답(27.3%)이 뒤를 이었다. 연구에서 경영진단은 농업경영기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기반해서 농업경영기록 농업인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을 경영진단 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서상택 외(2012)는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하에서 농업회계기준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구에서 수행한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 현황 조사에서는 농업종합자금을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사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비율이 3.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영농일지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충청지역 및 경기남부 지역에 위치한 마이스터대학 소속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설문 대상자의 44%가 회계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가 회계기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에서는 농업인들이 농업회계기준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보급방안을 검토하였다.

서상택 외(2014)는 농업회계기록 실태, 농업회계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농업 회계기록의 제도화를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을 통해 농업회계기록과 관련된 농업경영체의 회계지식 부족, 일관성 있는 교육의 부재,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률 저조, 회계기록의 활용방안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회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상택 외(2019)는 기존 농업회계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다른 분야의 회계기준과 농업 분야 회계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여 농업 및 농업경영체 회계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컨설팅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농업회계기준의 보급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학 외(2012)는 농업경영기록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인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농업인 농업경영기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가 경영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2.5%가 농업회계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조금 아는 것으로 응답하여, 농업인들의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기록 여부에는 연령, 판매액, 전업농가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판매액이 많을수록, 그리고 겸업농가보다는 전업농가에서 농업 관련 경영기록을 기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경영기록장 개발 및 경영기록 관련 교육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조경란(2015)은 농업회계 처리, 농업회계 제도 및 농업회계 교육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연구에서 농업회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농업회계 교육을 수강한 전후로 농업회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는지와 농업회계 처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련 수업을 수강한 후 농업회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장의 재산, 채무, 세부정보 등 정보 노출 우려로 농업회계 처리 결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회계 교육의 필요성 및 농업회계 처리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낼 적절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명수환 외(2017)는 농업경영회계기록의 참여 및 관련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후계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회계기록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전체 응답자의 36.6%가 회계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나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귀농을 했거나 회계에 관심이 많고, 농업경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농가일수록 회계기록을 수행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2.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연구 대상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는 소득과 악의 대상을 자영업자 또는 특고종사자로 하고 있으며 농업인 대상으로는 농업회계 확대를 위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대상의 차이는 세부 연구 내용이나 주제 면에서도 차이를 불러왔다. 대부분의 자영업자 또는 특고종사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산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는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이나 세무조사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과세 단계 이전에 소득신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소득신고 시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3.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위한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농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타 사업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서 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농업소득으로만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또한 소득파악은 농가가 경영효율화 등 사적인 차원에서 매출액과 지출액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개인 차원의 소득파악을 넘어서 정부에 대한 소득신고까지 연구 내용에 포함한다. 소득파악의 목적이 경영효율화를 넘어서 정책지원 수혜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정부에 대한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먼저 경영체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소득파악의 주체는 농가인 동시에 정부라고 할 수 있다.

3.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판매 경로, 판매 시 거래증빙자료 수수 여부 및 거래계약서 활용도, 생산자재 구매 현황 및 지출증빙자료 축적 여부 등 거래 관행과 장부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조사 대상은 KREI 리포터 및 현지통신원이며 각각 1,005명, 704명이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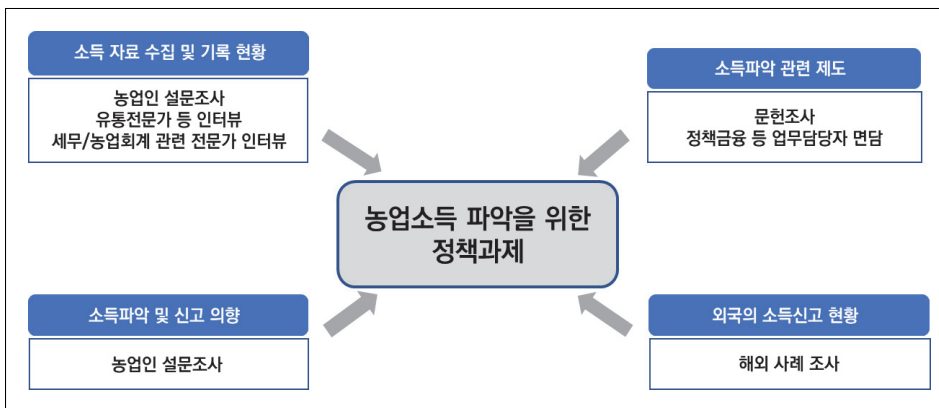
생산 현장에서의 거래 증빙 수취 여부와 소득자료 수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세무사 등과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소득신고 방안에 대해 조세 전문가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일본의 농업소득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3.3. 연구추진 체계

이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을 위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거래 관행과 장부작성 및 회계활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농업인, 농협, 유통관계자, 경영컨설턴트 등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둘째, 소득파악과 신고의향에 대한 농업인 조사를 통해 소득신고에 필요한 지원수요와 인식을 파악하였다. 셋째, 외국에서 농업인들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과 신고제도의 변화, 소득신고 지원체계 등을 조사함으로써 소득신고로 이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였다.

〈그림 1-1〉 연구추진 체계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과 소득파악 필요성

1. 농업소득 미신고 배경²⁾

1.1. 농업분야 과세 제외

1.1.1. 농업소득세제 변화

농업소득, 즉 작물재배업 소득의 파악이 어려워진 것은 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결정적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작물재배업 소득은 당초 과세 대상이었으나 세제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비과세 대상으로 바뀌었다. 다만 2015년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작물재배 소득에 대해서도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³⁾

작물재배와 관련된 과세는 지방세인 농지세로부터 시작된다. 농지세는 노지에

2) 해당 절은 임소영 외(2016)의 pp.37-41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3) 세무 관계자 인터뷰 결과, 법적으로는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작물재배업 소득을 가진 자가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납세를 하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농업 사업자가 자산을 구입한 경우, 세무당국이 자금의 원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물재배 소득의 규모를 인지하게 되고 그때 소득세 납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나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김태호, 2000; 안종석 외(재인용), 2010). 따라서 농지세의 납부의무자는 농지 소유자와 농지 이용자였다. 하지만, 시설작물과 작물재배 외 농업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2-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변천

농업소득	2001년 이전	2001~2009년	2010년	2015년
벼와 특수작물 재배소득	농지세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폐지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소득세 부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제외)
시설작물 재배소득	소득세			
작물재배업 이외 농업소득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자료: 임소영 외(2016, p.38)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농지세는 사실상 소득세지만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그 개념이 혼동될 수 있어 정부는 2000년 말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과세 범위도 벼와 특수작물 재배소득, 시설작물 재배소득으로 확대하였다. 과세 범위가 달라짐에 따라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농지 소유자를 제외한 자경농민만 포함되었다. 농업소득금액(= 수입금액-(필요경비+기초공제액))이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이었다.

농업소득세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2005년부터 잠정적으로 과세 중단되었다.⁴⁾ 이후 농업소득세는 징수행정비용 과다를 이유로 2010년에 폐지되었다.

현재도 작물 생산을 위해 논밭을 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소득세법 2021: 제12조)이지만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을 제외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에 따른 수입금액 10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또한 축산업

4) 경제장관간담회의에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2004~2008년 귀속 농업소득) 과세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대만의 경우도 1986년 이후 잠정적으로 과세중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행정자치부, 2005).

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과세를 하고 있으나, 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 5,000마리 이내인 농가부업 규모 범위 내에는 과세하지 않고 있다. 작물재배업, 축산업,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복합 운영을 통한 소득에는 과세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소득 외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에 농업소득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농업소득만 있는 농업인은 원천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을 통한 농업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2-2〉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농업 분류		과세내용
작물 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과세 제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 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주: 어업과 임업은 과세하고 있음.

자료: 임소영 외(2016, p.23).

1.1.2.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소득신고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소득세 면제로 인해 농업소득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매출액이 파악된다면 이를 근거로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신고 외에 국세청에 매출액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농업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신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인이 생산하는 미가공 농·축·임산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농업인은 사업자등록의 의무가 없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때 식료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비중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미가공 농·축·임산물 면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미가공 농·축·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과 세금징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영세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세금 신고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임소영, 박지연, 2018, p.26).

다만 농업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년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수입금액명세서 등 수입 및 비용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 이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신고하지는 않는다.

1.2. 소득신고의 행정부담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운 것은 세제상 농업분야가 제외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과세 제외의 이유를 따져보면 농업인의 매출 및 비용 파악이 어려운 환경이 근본적인 장애요인이다.

과거 농업소득세가 폐지된 사유나 미가공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이유가 이를 잘 보여준다. 농업소득세는 2010년에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세수에 비해 징수행정비용이 크다는 것이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물이 다양하므로

작물별로 소득, 필요경비 산정이 어려워서 농가별 수입, 필요경비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면제금액 이하이고 전체 농가의 1~2%만이 농업 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수에 비해 징수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임소영 외, 2016, p.39).

납세자인 농업인 입장에서 소득신고는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소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제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만 세제의 복잡성으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다. 농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이 67.2세(통계청, 2022)에 이를 정도로 고령화 수준이 높다는 점은 더욱 세제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또한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지출과 수입 자료의 수집, 기록, 신고서식 작성, 신고 서류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전체 농가의 70.2%가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미만(통계청, 2021a)의 영세농으로서 농산물 판매와 생산비용에 대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쉽지 않다.

2.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

현재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소득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있다.

2.1. 농업소득 안전망 강화

농업소득은 외부 환경에 따라 매우 크게 변동하고 감소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농가는 이러한 경영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략을 취할 수 있으나 개별 농가 단위에서 재해위험이나 유가 상승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경영위험을 모두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농가의 경영위험을 상쇄하고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경영위험요인 중 하나인 재해에 대한 대응은 재해보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유가 상승 등 재해를 제외한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영안정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수입보장보험인데 수입보장보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가별 매출 및 소득자료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작물재배업 소득이 비과세로 분류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과거 수입실적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아 농가의 수입이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수입보장보험의 보험금 계산을 위해 농가의 수입을 개별 수확량과 도매시장 등의 평균가격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계산하고 있는데⁵⁾ 이러한 방식은 개별 농가마다 다른 수입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어 개별 농가와 보험 사업자 간에 보상 규모를 놓고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농업인의 소득파악, 즉 공신력 있는 소득자료의 확보가 이루어지면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입보장보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소득자료가 있으면 수입보장보험과 같은 정책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경영안정정책을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 또한 가능해진다. 외국에서는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경영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소득안정계정이나 농업투자계정,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미국의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등이 대표적 사례인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도 신규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5) 현행 수입보장보험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피해율-자기부담비율)로 결정된다. 피해율은 (기준수입-실제수입)/기준수입이다. 여기서 기준수입은 평년수확량과 농지별 기준가격의 곱으로 결정되고, 실제수입은 (실제 수확량+미보상감수량)×Min(수확기 가격, 농지별 기준가격)으로 결정된다(서상택 외, 2020, p.13).

2.2. 농가 경영효율화

농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경영체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경영효율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매출과 비용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경영체의 수익성, 성장성을 진단할 수 있고 경영성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자료를 토대로 향후 경영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다.

실제로 소순열 외(2007)에서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소득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에 농가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부 작성으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2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영 문제 해결 능력 배양(26.1%), 농사일에 대한 자신감 상승(23.0%)이 뒤를 이었다. 장부 작성으로 인한 소득 증가 정도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47.7%는 10~20%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0% 이상 소득이 증가하였다는 응답도 전체의 44.9%에 달하였다.

소득파악을 위해 영농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적·화폐적 거래 내역을 기록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집계분석, 평가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소순열 외, 2007, p. 60), 이를 통해 농가 경영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파악은 농가 경영을 효율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가 규모화·전문화되는 과정에서 소득파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3. 농업경영자금 확보

농가는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본인 자금, 금융기관 대출금, 정책 자금, 보조금 등으로부터 조달한다. 특히 자금조달 규모가 클수록 금융기관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전업농의 경우 자금조달에 있어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약 30%로 본인 자금에 이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박준기 외, 2010, p.61).

농업인이 은행이나 투자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자금회수 가능성이 입증해야 한다. 이때 경영체의 매출액, 영업이익, 자산과 부채 등 재무정보는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신뢰할 만한 매출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금융에서는 개인의 신용평점과 담보가 자금조달의 근거가 되며 대출 심사 시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금융에서도 일반금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신용평점과 담보가 주된 자금조달 근거이며 개인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서는 납세 및 매출 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입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농업인은 납세 및 매출서류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크게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LTV)과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에 따라 결정된다. DSR로 인해 소득을 입증해야 대출 규모가 결정되기에 자영업자, 농업인 등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해야 하지만 농업인은 실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여 DSR 산식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연 소득이 낮아지고 그 결과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이러한 점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더욱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인이 신빙성 있는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게 된다면 농업인의 자금조달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 소득 기반 정부지원 확대

정부는 근로장려금, 재난지원금, 사회보험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때 정부의 복지지원은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일을 하지만 낮은 소득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과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가구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

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부부의 총급여 합산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되는데,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대해 총소득 기준(2022년 기준) 각각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각각 연 최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녀지원금 역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가 총소득 기준(2022년 기준)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연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한다. 두 제도는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되며 지급 신청도 국세청 소득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 또한 국세청 과세자료를 이용하여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었을 때 받을 수 있다<표 2-3>.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가구의 소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 감소분,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분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감액 평가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액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특고·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분 평가는 1)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상의 총수입금액, 2)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장 입금내역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표 2-3〉 매출액 감소 근거자료

구분		매출액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따른 업종별 수입금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22, pp.1-3).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은 가입 요건으로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보험료 산정 시 국세청 소득자료가 기초가 된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을 파악하기 어

려운 직군에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용보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2021년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켜 실시간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은 국세청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소득 기반 지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지원 근거 확보라는 측면에서 소득파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3. 소결

농업소득, 특히 작물재배업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농업소득이 소득세 비과세되고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농·축·임산물이 면세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상 비과세 및 면세로 인해 농업인은 사업자등록, 소득 및 매출 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는데 이로 인해 농업소득의 파악이 어렵게 되었다.

농업분야가 세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농가가 농업 관련 매출 및 소득을 파악하고 신고하기까지 상당한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세무 당국 입장에서도 세수에 비해 징수비용이 높은 농업분야에 과세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낮다는 점이 농업소득 비과세의 원인이었다. 종합하면, 오늘날 농업소득 파악이 어렵게 된 것은 제도적요인과 환경적요인이 중첩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소득파악에 따르는 불편과 행정비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농업계가 놓치고 있는 편익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입증이 중요한 요건이지만 농업인은 이를 위한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아 논의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가 매출 및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경영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꾀할 수 있으나 그러한 활동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에 따라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나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자료의 부재가 농가의 경영개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

이 외에도 소득자료의 부재로 인해 저소득 농가를 구분하여 두텁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이나 정책사업 대상자를 정의할 때 농업소득이 아닌 농외소득이나 자산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수혜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점 또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지불하고 있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때 농업분야에도 소득파악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동안 소득파악이 되지 않았던 원인인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검토함으로써 소득파악의 편익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소득파악 관련 제도 현황

1. 국세청 사업소득신고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2021: 제19조).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다. 회계적으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기획재정부, 2021, p.58).

소득 계산에 필요한 수입은 과세기간 동안 소득종류별 총수입이고, 회계상으로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총수입금액으로 산입되는 것은 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금,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가액과 부채 감소액, 사업용 자산이 손실된 경우 받은 보험차익, 그 외 사업 관련 수입금액 등이다.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은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충당액, 이전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소득금액, 수확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이다(국세청, 2016, pp.105-106).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⁶⁾이며 소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가사와 관련된 각종 경비,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에 미포함된다.

사업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할 수 있으며⁷⁾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을 통해 소득세를 산정·납부할 수 있다.⁸⁾ 추계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 3-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			내용
장부 신고	복식 부기	자기 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외부 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추계 신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료: 국세청(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을 재정리하여 저자 작성.

6) 필요경비에는 원료매입비, 제품 보관료 및 포장비, 운반비 등이 포함된다.

7) 간편장부는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이다(임소영 외, 2016, p.13).

8) 추계결정은 정부가 그 조세의 과세표준액을 실시조사 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징수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2021: 제80조. 검색일: 2022. 5. 6.).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주요경비, 두 항목을 수입금액에서 제한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하여 계상한다(국세청, 2016).

〈표 3-2〉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 산출 방법

계산 유형	산식
기준경비율 적용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2020년 귀속 배율은 간편장부 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①과 ② 중 작은 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종합소득세 개요. 검색일: 2022. 1. 15.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매입비용에는 재화 매입비, 외주가공비 및 운반비, 사업 관련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임차료, 피고용인의 인건비 및 실지급 퇴직금을 포함한다. 적용 대상자는 매입비용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필요 시 제출해야 한다. 기타 경비는 정부에서 규정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출한다.

〈표 3-3〉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구분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비치 보관

자료: 국세청(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신고유형에 따라서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복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비롯하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손익을 나타내는 서류, 영수증 수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간편장부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만 제출한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한다(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 제외).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가 거의 없는데 기준경비율 신고자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등 소득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다양한 서류가 있으나, 매출 혹은 경비를 직접적으로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을 직접적으로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는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면 제척기간이 5년이므로 소득신고자는 장부 및 각종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은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다.⁹⁾ 만약 세무감사를 할 경우 증빙자료가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표 3-4〉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신고유형	제출서류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조정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료: 임소영 외(2016, p.18).

9) 국세기본법(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의2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5년이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면 제척기간은 7년으로 증가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증가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인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¹⁰⁾ 여기서 장부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는 추계방식으로 계산된다. 추계방식에 따르면, 농업인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표 3-5〉 신고유형별 사업자 수입기준

신고유형			수입기준
장부 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3억 원 이상
		외부조정	6억 원 이상
	간편장부		3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		15억 원 이상
추계 방식	기준경비율		(기존사업자) 6,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자) 3억 원 이상
	단순경비율		6,000만 원 미만

자료: 국세청(2021, pp.11-1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한 방법으로 나뉜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에는 전자 납부 또는 은행 등을 통한 방문 납부가 있다.

〈표 3-6〉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구분	방법	구체적 방법
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10)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작물재배업(식량작물 제외)에는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이 13억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고, 그 이하는 간편장부 의무자이다. 그리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적용은 수입금액 10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소득세법 시행령 2022: 제9조의4).

(계속)

구분	방법	구체적 방법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	홈택스 전자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카드로텍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 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검색일: 2022. 1. 15.

2. 사회보험 및 공적부조 소득파악 체계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원칙은 가입자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회보험에서 근거로 삼고 있는 가입자의 소득은 그 정의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소득원에 대한 파악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료 산정 및 부과는 각 공단에 의해 별도로 이루어진다(최인혁 외, 2021, p.150).

2.1.1.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국민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산정하기 전에 연금 가입자의 업종 변경 여부, 현재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을 과세자료 등에 기반하여 조사하고 확인한 후 결정한다. 외부자료인 국세청 과세자료만을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의 기준소

득월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공단의 별도 징계 규정은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단, 1) 가입자의 종사업종이 변경되거나, 2)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하였거나, 3) 실제소득보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향 결정을 희망할 경우, 변경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1.2.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건강보험은 1977년에 도입되어 2019년 현재 전 국민의 99%가 가입되어 있다. 이 중 직장가입자는 3,723만 명(72%)이며 지역가입자는 1,416만 명(약 27%)이다 (최인혁 외, 2021, p.53).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최저보험료에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연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보험료 부과점수와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결과가 보험료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가 있으며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이 포함된다(최인혁 외, 2021, p.64).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자료가 공단에 통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며 별도의 소득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허위 소득신고에 대한 공단의 별도 징계 규정도 없다.

2.1.3.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을 가입 대상으로 하므로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고 이를 1,000으로 나눈 금액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자영업자도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보험료는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표 3-7〉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구 분	보수액(월)	보험료(월)	실업급여(월)
1등급	1,820,000	40,950	910,000
2등급	2,080,000	46,800	1,040,000
3등급	2,340,000	52,650	1,170,000
4등급	2,600,000	58,500	1,300,000
5등급	2,860,000	64,350	1,430,000
6등급	3,120,000	70,200	1,560,000
7등급	3,380,000	76,050	1,690,000

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350Info.do>). 검색일: 2022. 7. 6.

고용보험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게 되었는데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던 고용보험을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자영업자, 인적용역 사업자, 프리랜서 등)를 포함하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는데 이 로드맵에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임에도 미가입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 내지 강제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전 국민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대상자의 소득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

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경우, 대상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해당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¹¹⁾ 그러나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려워 장기적인 가입 추진 과제로 남아 있다.¹²⁾

2.1.4.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는 실제소득과 관계없이 스스로 기준 보수액을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표 3-8>.

〈표 3-8〉 자영업자 산재보험 기준보수액 및 월보험료 예시

단위: 원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등급	기준보수액	월보험료
1등급	2,198,400	48,800	7등급	4,806,300	106,690
2등급	2,632,800	58,440	8등급	5,241,000	116,350
3등급	3,067,500	68,090	9등급	5,675,700	126,000
4등급	3,502,200	77,740	10등급	6,110,400	135,650
5등급	3,936,900	87,390	11등급	6,545,100	145,300
6등급	4,371,600	97,040	12등급	6,979,800	154,950

주: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하여 업종 평균요율(22.2%)을 적용하여 월보험료를 계산함. 농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은 20%임.

자료: 경상남도(202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11)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7&cntntslid=23892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내. 검색일: 2022.07.26.

12)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카드 가맹점의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하여 소득과 카드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파이낸셜 뉴스. 2021. 6. 1.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2.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¹³⁾

수급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보장기관)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수급권자의 수급자격 여부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조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관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지출실태조사표를 통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자료 등으로 파악한 소득에 더한다.

실제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법은 소득 유형별로 다르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이 포함된다. 사업소득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이 있고,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다.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근로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소득은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근로복지공단, 3) 국민연금공단, 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5) 국세청의 순서대로 반영된다. 일용근로자소득은 국세청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결과를 반영한다. 자활근로소득의 경우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을 매월 반영한다. 공공일자리소득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와 협의하여 소득을 반영한다.

사업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종합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소득을 반영한다.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소

13) 이 절은 보건복지부(2021)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반영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획득이 어렵거나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인적용역제공 사업자(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재산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대소득은 국세청의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토록 하여 소득을 파악한다. 이자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자소득 조회 결과를 반영하며, 연금소득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금융정보 등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은 해당 연금 등에 대한 가입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전소득 조사방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사적이전소득의 경우 생계급여 보장기관에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의 지원 지속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유형별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을 활용하여 사용대차 사전이전소득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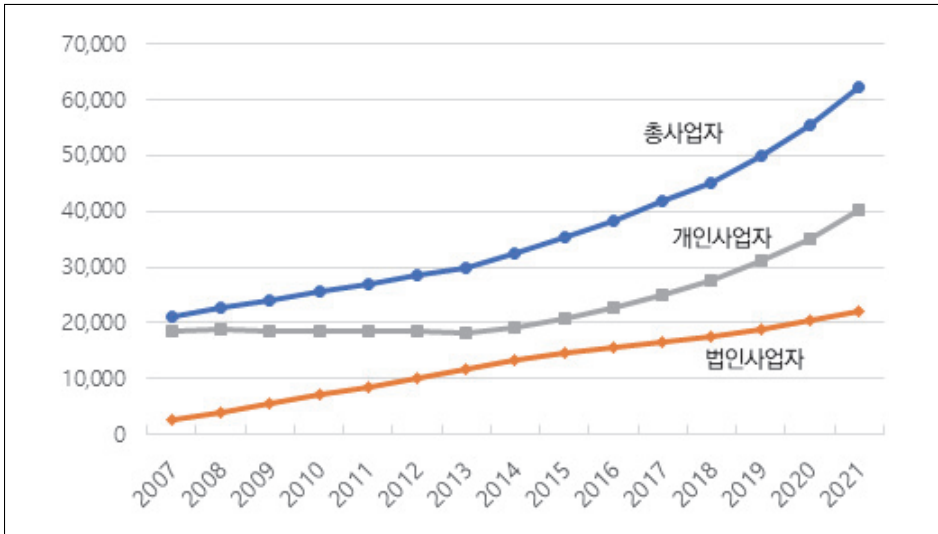
3. 농업분야 소득정보 작성 및 수집 현황

3.1. 국세청 신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총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는 2013년 2만 1,084명에서 2021년 6만 2,26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개인사업자는 최근 2년간 9,043명이 등록하여 성장세가 더욱 가팔랐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 중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와 납세 신고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다.

〈그림 3-1〉 국세청 등록 농업 사업자 수

단위: 명



자료: 국세청(각 연도), 국세통계.

농림어업 소득신고자는 2020년 기준 약 1만 4,900명으로 전체 사업소득신고자의 약 0.2%를 차지하여 그 비중은 미미하다. 농림어업 분야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총수입은 약 6조 7,036억 원으로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총수입인 1,013조 4,787억 원의 약 0.7%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림어업분야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은 4,224억 원으로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인 125조 4,655억 원의 약 0.5% 수준이다.

전체 세수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반면, 2020년 기준 농림어업의 1인당 총수입과 소득은 다른 업태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다. 사업소득 업태를 농림어업으로 신고한 경우 1인당 평균 총수입과 신고소득은 각 4억 4,891만 원, 2,829만 원으로 제조업보다는 낮으나, 그 외 도·소매업 등보다는 높다.

〈표 3-9〉 2020년 주요 업태별 사업소득신고 현황

단위: 백 명, 억 원, (%)

업태	인원	총수입		소득	
		전체	1인당 총수입 (만 원)	전체	1인당 소득 (만 원)
사업소득 전체	63,559 (100.0)	10,134,787 (100.0)	15,945	1,254,655 (100.0)	1,974
농·임·어업	149 (0.2)	67,036 (0.7)	44,891	4,224 (0.5)	2,829
제조업	3,155 (5.0)	1,397,572 (16.7)	44,290	142,531 (13.7)	4,517
도·소매업	9,178 (14.4)	3,766,231 (40.8)	41,037	229,273 (20.5)	2,498
음식·숙박업	5,919 (9.3)	10,134,787 (10.0)	19,333	1,254,655 (7.2)	1,357
기타 서비스업	24,048 (37.8)	67,036 (6.1)	3,613	4,224 (13.2)	913

주 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함.

2) 괄호 안은 사업소득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2021). 국세통계연보.

농림어업 사업자의 소득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 사업자의 수는 2016년 2만 6,200건에서 2020년 3만 500건으로 증가하였다.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주로 소액 신고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확대되고 있다. 천만 원 이하의 신고는 2016년 전체 신고 건수의 28.6%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에는 38.7%로 증가하였다. 반면, 2천만 원 초과 구간의 비율은 최근 5년간 감소하였다.

〈표 3-10〉 최근 5년간 농림어업 사업자의 금액별 신고 건수

단위: 백 건, %

수입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전체	262	100.0	260	100.0	273	100.0	293	100.0	305	100.0
1천만 원 이하	75	28.6	74	28.5	87	31.9	105	35.8	118	38.7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12	4.6	12	4.6	13	4.8	14	4.8	15	4.9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22	8.4	21	8.1	22	8.1	23	7.8	22	7.2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0	7.6	21	8.1	20	7.3	28	9.6	18	5.9

(계속)

수입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8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4	5.3	13	5.0	14	5.1	14	4.8	14	4.6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42	16.0	41	15.8	40	14.7	44	15.0	44	14.4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9	14.9	38	14.6	38	13.9	37	12.6	36	11.8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1	8.0	22	8.5	21	7.7	21	7.2	21	6.9
10억 원 초과	16	6.1	19	7.3	17	6.2	15	5.1	16	5.2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괄호 안은 사업소득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2021). 국세통계연보.

3.2. 농업분야 소득정보 수집 실태

3.2.1. 농업경영체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은 각종 농림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이 경영체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경영체는 약 175만 개이며 그중 173만 개가 개인 경영체, 1만 4,567개가 농업법인이다(2020년 기준).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등록하는 정보는 개인 경영체의 경우 경영주를 비롯한 경영체 내 농업인의 인적 정보, 생산 품목, 농지 및 사육 시설 등의 규모이다. 농업법인은 법인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정보와 출자 규모, 근로 인원수, 생산 규모,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처별 점유비율 등을 등록한다.

현행 관련 법률에 따르면 농업경영체등록은 임의 방식으로서 등록정보의 범위와 정확성은 등록인에게 맡겨져 있다.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주요 판매처에 대한 정보는 농업인이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¹⁴⁾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농업 외

1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 검색일: 2022. 4. 21.

연간 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추정값을 등록할 수 있다.¹⁵⁾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해 농업인,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판매량 및 판매액, 자산과 부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2014년에 개정된 관련 법 시행령¹⁶⁾에 있었다. 그러나 2019년에 시행령¹⁷⁾이 개정되면서 농업인의 경우에는 소득, 자산과 부채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2014년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등록할 때 생산,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농산물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다. 2019년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은 농업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이는 현행 시행령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의 경우 2014년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농업인(자신+세대원)과 농업법인의 농업소득, 자산과 부채를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개정된 시행령에서 관련 항목이 삭제되었고, 시행규칙에 농업법인만 연간소득(농업소득+농업 외 소득), 자산과 부채를 등록하도록 개정되었다.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되어있는 기간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 농업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치를 등록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수준의 소득파악에는 한계가 있었다.

3.2.2. 농업ON 경영장부¹⁸⁾

농식품지식정보서비스 농업ON은 2019년에 개설되어 농업경영장부 외에 도매 시장 가격 등 가격 정보, 지원사업 정보, 기술 컨설팅, 그 외 농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농업ON에서는 농업경영장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5호, 2021. 10. 8., 타법 개정). 제2조. 검색일: 2022. 4. 21.

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5341호, 2014. 4. 30., 일부개정). 검색일: 2022. 4. 21.

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407호, 2018. 12. 24., 일부개정). 검색일: 2022. 4. 21.

18)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22)의 농업경영장부(복식) 매뉴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있다. 농업인은 농업ON의 경영장부를 통해 품목별, 거래처별, 입출금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농가의 자산과 부채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어 종합적인 경영상태 파악에 용이하다.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은 영농일지, 입출금장부, 회계장부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농업인이 작성한 기록에 근거하여 회계 진단과 분석을 제공한다.

농업경영장부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농일지, 입출금장부를 작성하기 전 농업인이 해당 농가의 영농 관련 정보와 자산·부채 정보를 먼저 등록하여야 한다. 영농 관련 항목에는 품목, 비료, 농약, 거래처, 교육, 고용 노동력, 농지와 관련된 사항을 등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용량, 일자 등을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비료명, 농약명, 노임 등에 대한 사항을 등록한다. 자산·부채 관련 정보에는 토지, 건물, 영농시설물, 대농기구, 유동자산, 차입금이 포함되며 자산명, 규격, 구입 및 설치 연도와 가격 등을 등록한다.

영농일지에는 작업내용, 교육내용이 포함되며, 농업인이 등록내용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영농 작업내용 등록 사항은 작업 시작일 및 종료일, 해당 품목, 작업단계, 작업내용, 면적, 사업유형(생산, 유통, 판매, 가공, 체험, 시설관리, 기타)이다. 다음 단계로 사용한 농약 및 비료 종류, 고용한 농업노동력 인원수 및 결제 방법, 사용한 농기구 관련 사항, 날씨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다. 농업인은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엑셀 양식을 이용해서 작업내용을 일괄 등록할 수도 있다.

입출금장부에는 영농 활동에 따른 비료, 농약 등 지출과 농산물 출하에 따른 수입 사항을 등록한다. 입출금장부의 등록 사항은 유형(수입, 지출), 일자, 관련 품목 정보(품목, 사업유형, 면적), 수입 및 지출의 세부 유형 및 내용이다. 수입 내역에는 출하한 농산물의 품질, 수량, 단가, 금액, 결제 방법, 거래처 정보, 세부내용을 등록하고,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지출 내역에는 비료, 농약, 농자재를 사용한 날짜, 수량, 기타 세부 내용을 등록하고,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각 수입 및 지출 내역별로 수금 및 결제 완료 여부¹⁹⁾와 결제 방법 등을 구분해서 등록할 수 있다. 결제 방법에는 신용카드, 현금, 계좌이체 등으로 구분해서 입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등록된

입출금장부 내용은 농업인이 기간을 설정해서 해당 기간 동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회계장부에는 자산·부채와 입출금장부에 등록된 내용이 연계되어서 등록된다. 회계장부는 수입, 지출, 감가상각액별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되고, 계정과목(농산물판매수익,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등)을 등록할 수 있다. 회계장부에는 자산부채 항목에 등록된 건물, 영농시설물, 대농기구 등의 정보가 연동되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액이 자동으로 나타난다.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농업인은 의무적으로 농업경영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경영장부를 기록해야 한다.²⁰⁾ 대상자는 경영장부(회계기록, 영농일지)를 해당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전월 기록을 익월 25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인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경영장부 사용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로 다음 달부터 정착지원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일시 정지가 3회 이상이면 정착지원금 지급 중단 및 청년후계농 자격을 박탈당한다.

2021년 말 기준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에 등록된 인원은 1만 8,000명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약 7,000명 정도로, 아직은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매우 한정적이다.²¹⁾

19) 예를 들어, 농산물 출하 대금이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미수금'으로 등록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수금 완료'로 수정할 수 있다. 지출에서도 결제 예정이면 '결제'로, 입금을 완료하면 '결제 완료'로 수정할 수 있다.

20) 농림축산식품부(2021)의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참조하였다.

21) 농업ON 이용 인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이며, 이용 실적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3.2.3. 농축산물소득조사 및 농축산물생산비조사²²⁾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하여 매해 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조사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2020년 기준 50개 작목, 4,018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생산량, 총수입, 경영비, 소득을 조사하는 자료이다.

본 조사는 1975년에 시작되어, 그간 조사 대상 품목, 조사 항목, 표본 농가, 조사 방법이 바뀌어 왔다. 2021년 기준 농축산물소득조사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겉보리, 쌀보리, 밀, 노지팥옥수수, 고구마, 봄감자, 가을감자), 노지채소(수박, 가을무, 고랭지무, 당근, 봄배추, 가을배추, 고랭지배추, 시금치, 양배추, 대파, 쪽파, 생강), 시설채소(수박(반축성), 참외, 딸기, 오이(축성·반축성·억제), 호박, 토마토(축성·반축성), 방울토마토, 가지, 파프리카, 시금치, 상추, 부추, 고추),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참다래, 블루베리, 자두, 시설포도), 화훼(시설장미), 특용 및 약용작물(참깨, 인삼(4년근), 오미자, 들깨)이다.²³⁾

조사 대상 표본 농가의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농가의 모집단은 2015년 농업총조사(이하 총조사) 자료이다. 총조사자료에서 상대표준오차, 목표오차를 기반으로 작목별로 표본 수를 산정한다. 다음으로 총조사의 도별 재배 비율을 바탕으로 산정된 작목별 표본 수를 도별로 배분한다. 총조사자료의 품목별 도내 재배면적을 바탕으로 시·군 재배면적에 비례한 확률비례추출에 의해 시·군별 표본 수를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단순임의추출 혹은 유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해서 표본 농가를 선정한다. 품목별 표본 농가 수는 최소 50여 농가부터 최대 180여 농가까지 다양하다.

22) 이 절은 농촌진흥청(2021)의 2020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23) 참고로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대상 품목은 논벼, 마늘, 양파, 고추, 참깨, 콩이다(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농축산물 생산비조사. 검색일: 2022. 5. 23.).

〈표 3-11〉 농축산물소득자료 조사 작목별 표본 농가 수(2020년)

단위: 호

조사작목	농가	조사작목	농가	조사작목	농가
겉보리	51	노지쪽파	64	시설고추	98
쌀보리	57	노지생강	65	사과	159
밀	56	시설수박(반축성)	107	배	175
노지뽕옥수수	103	시설참외	102	복숭아	140
고구마	121	시설딸기	169	노지포도	179
봄감자	141	시설오이(축성)	51	노지감귤	51
가을감자	39	시설오이(반축성)	92	단감	73
노지수박	59	시설오이(억제)	39	참다래(키위)	55
노지가을무	68	시설호박	108	블루베리	103
노지고랭지무	50	시설토마토(축성)	55	자두	59
노지당근	55	시설토마토(반축성)	99	시설포도	71
노지봄배추	57	시설방울토마토	118	시설장미	35
노지가을배추	117	시설가지	57	참깨	50
노지고랭지배추	53	착색단고추(파프리카)	51	인삼(4년근)	73
노지시금치	48	시설시금치	35	오미자	93
노지양배추	65	시설상추	63	들깨	53
노지대파	79	시설부추	57		

자료: 농촌진흥청(2021, p.4). 2020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

기준에는 조사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수입과 비용을 조사하였으나, 2013년부터 농가가 직접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조사원의 대면 조사를 병행하였고, 2018년부터는 농가의 경영기록을 바탕으로 통계를 작성하되 조사원이 기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축산물소득조사의 조사 항목은 총수입, 경영비, 생산비, 그 외로 구성된다. 총수입은 주산물의 생산량에 농가 평균 수취가격을 곱한 주산물 평가액에 부산물 평가액을 합한 금액이다. 생산비는 경영비와 그 외 기회비용으로 구성된다. 경영비는 소모재에 대한 비용(종자·종묘비, 비료비(무기질, 유기질 구분), 농약비, 기타 재료비, 소농구비), 수도광열비, 자본재에 대한 감가상각비(대농구상각비, 영농시설상각비), 수리·유리비, 기타 비용, 임차료(농기계 및 시설, 토지), 위탁영농비, 고용노동비로 구성된다. 생산비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기회비용으로는 자가노동비,

유동자본용역비, 고정자본용역비, 토지자본용역비가 있다. 총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그 외에 조사 대상 농업인의 나이, 영농 경력, 해당 품목의 재배 경력, 교육 기간 등을 추가로 조사한다.

조사된 결과는 품목별로 10a당 전국 평균 총수입, 경영비, 생산비, 소득으로 나타난다. 추가로, 작목별 10a당 소득 분포, 작목별 규모별 소득 분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작목별 10a당 소득 분포는 작목마다 다르나, 소득의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작목별 규모별 소득 분포 자료는 모든 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 수가 일정 이상인 품목만을 대상으로 제공한다.²⁴⁾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해 조사하여 발표하는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자료이다. 이 통계의 목적은 농업경영개선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1년 기준 농작물 5개 품목과 축산물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모집단은 농업총조사의 농가로서²⁵⁾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은 논벼 1,980㎡ 이상, 나머지 4개 농산물 660㎡ 이상이다. 축산물은 한우 번식우 5두 이상, 한우 비육우 및 육우 10두 이상, 젖소 20두 이상, 비육돈 100두 이상, 산란계 및 육계 5,000수 이상이다. 그 결과 벼는 1,024 농가, 그 외 다른 품목 및 축종별로 100 농가가 넘는 표본이 있다 <표 3-12>.

〈표 3-12〉 농축산물생산비조사 표본 규모(2020년)

구분	표본 규모
농산물	(전체) 1,600 / 논벼 2,024 / 고추 168 / 마늘 122 / 양파 133 / 콩 153
축산물	(전체) 1,400 / 한우 번식우 420 / 한우 비육우 190 / 육우 151 / 젖소 160 / 비육돈 195 / 산란계 143 / 육계 141

자료: 통계청(2021b).

24) 2020년 자료에는 고구마, 붕감자, 사과, 배, 노지포도, 복숭아, 시설수박(반축성), 시설참외, 시설 딸기, 시설오이(반축성)의 규모별 소득 분포가 제공되었다.

25) 2017년까지 생산비조사의 모집단은 농가경제조사의 조사 대상이었다가, 2018년부터 농업총조사의 농가로 모집단이 변경되었다.

조사 항목은 매우 구체적이다. 농작물에 대해서는 수입 관련 항목으로 재배면적, 수확량, 총수입 등을 조사하고, 비용 관련 항목으로는 종묘비, 비료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등을 조사한다. 축산물은 사육현황, 구입·판매·수입 실적, 사료비·노동력 고용 사항 및 노임 등 투입물 사용 실적과 비용 등이다<표 3-13>.

〈표 3-13〉 농축산물생산비조사 조사 항목(2020년)

구분	조사 항목
농산물	- 경지면적, 작물별 재배면적, 농작물 총수입, 농작물 수확량 -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수도광열비, 기타재료비, 농구비, 영농시설비, 위탁영농비, 노동비, 생산관리비, 자동차비, 조세 및 기타비용 - 토지용역비, 자본용역비
축산물	- 가구원현황, 토지, 영농시설물, 농업용 기계·기구, 부채 - 대/소동물 사육현황, 사료작물 재배현황, 대/소동물 구입/판매, 축산물 판매수입, 축산부산물 판매 수입 및 자가소비, 사료비, 생산비 투입내역, - 농업노동 투입내역, 사료작물 농업노동 투입내역, 사료작물 투입내역, 사료작물 생산 및 이용량, 사양관리 고용노임 지불현황

자료: 통계청(2021b).

농축산물소득조사와 농축산물생산비조사는 우리나라 농가의 특정 작목에 대한 평균 소득 및 분포를 추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조사 항목이 매우 세부적이어서 해당 품목을 경작하거나 사육하는 농가의 생산 및 투입물 사용 현황, 수입과 비용 실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자료는 재해보험이나 공적부조 등 농업인의 소득정보가 필요할 때 소득을 추산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들은 품목 단위로 작성되고 평균치로만 발표되기 때문에 개별 농가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

3.3. 농업소득정보 활용 현황

3.3.1. 생계급여²⁶⁾

생계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서 포함된다. 농업소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재배작물은 농지원부 및 신고를 통해 확인하고 농지원부에 있는 경작면적에 농사로의 농산물 표준소득정보를 통한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도 한다. 축산업 소득을 산정하는 데에는 신고자료에 있는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의 정보를 이용한다. 임업소득은 급여 수급자가 있는 지역의 유통기관에서 판매 관련 기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을 산정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는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 어업소득은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수협에서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서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산정한다. 기타사업소득의 경우, 사회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자의 소득은 사회보험 소득자료를 통해 산정한다. 다음으로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3.3.2. 농업신용보증기금²⁷⁾²⁸⁾

농업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농업인이 농어업용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출연한 기금을 재원으로 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농신보의 관리기관은 농협중앙회이다. 보

26) 보건복지부(2021)의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27) 본 명칭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고, 그 대상은 어업인, 임업인, 농업법인 등까지 포함하나, 여기에서는 농업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8) 농신보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nongshinbo.nonghyup.com:8100/user/indexMain.do?siteId=nongshinbo>). 검색일: 2022. 10. 8.

증 대상은 농업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농협,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종자생산업자, 농산물생산단체, 농산물 유통 및 가공업자 등이다. 보증 대상 자금은 농업 관련 운전 및 시설 자금,²⁹⁾ 농산물 유통 및 가공 수출 자금, 농림수산물 기자재 생산자금, 농어촌 융복합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등이다.

보증 절차는 농업인이 농신보 지역센터나 금융기관에 보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금융기관 또는 농신보 센터에서 신용 조사 및 검토를 한다. 이후 보증이 승인이 되면 보증서가 발급되어, 농업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다.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간이신용조사를 하며,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내는 신용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하고, 3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재무평가, 사업성 평가를 시행한다.

보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통 자료로 개인 증명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합원확인서, 농지원부), 주택 및 주사업장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 서류(경영체등록 확인서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책자금일 경우 정책자금 배정문서 등이 있다. 간이 신용조사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예금 거래상황 등을 기재한다. 대출금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신보에서 직접보증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추가 자료로는 부채현황표, 사업자현황표,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산세납부영수증 등이 있다. 부채현황표에는 부채현황, 1년 이내 만기도래 및 상환계획, 향후 3개월 내 신규차입 계획을 기입한다. 사업자현황표에는 신청 내용, 신청인 현황 등을 기재하는데, 그중 판매 현황 부분에 최근 3년 판매실적, 최근 3년 원재료 또는 상품 구매 현황을 기입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혹은 농신보에서는 보증심사를 시행한다. 간이신용조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받은 개인 신용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를 시행한다. 간이신용조사에서는 보증 대상의 적정성 여부,

29) 단, 가계 및 생활 자금은 제외한다.

신용상태 악화 여부 등을 조사한다.³⁰⁾ 직접보증에서는 사업자현황표, 재무제표, 부채현황표 등을 이용해서 심사한다.

3.3.3. 농업정책자금: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농업정책자금은 중앙 정부에서 농업인, 농림축산업자 및 단체, 정책사업자 등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농림축산정책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¹⁾

농업종합자금은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을 평가하여 시설·운전·개보수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고, 대출기간은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13~15년, 개보수자금 5~10년이다. 농업종합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농업인의 실명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농지원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거래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기타 대출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 나뉜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중에는 사업계획서, 출하증명자료,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등이 있다.³²⁾ 지역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 신청자의 신용 등을 평가해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종합자금 중 시설자금은 주로 담보에 기초하여 대출이 결정되지만 운전자금의 경우 소득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한다. 그러나 실제로 농업인의 재무제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가 갖추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바탕으로

30) 이 외 조사 항목으로는 주사업의 휴·폐업 여부, 주택 및 주사업장의 권리침해 여부, 신청인의 건강상태,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등록이 되었는지의 여부 등이 있다.

31)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8호, 2022. 5. 10., 일부개정) 검색일: 2022. 7. 13.을 참조하였다.

32) NH농협 금융상품몰 홈페이지(<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071R.view>), 검색일: 2022. 10. 7.; 경산농협 홈페이지(<https://kyungsan.nonghyup.com:8100/user/indexSub.do?codyMenuSeq=2016821&siteId=kyungsan&dum=dum&command=list&comSeq=2026527&parentMenuSeq=2026527&selectedSeq1=2026527&page=1>), 검색일: 2022. 10. 8.를 참조하였다.

농업인의 소요 경비를 산출하고 소득을 추정하고 있다.³³⁾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18~50세 미만의 농업인 중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하인 자이고, 농업 관련 교육을 받은 자 중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이다. 연간 지원 인원은 2022년 기준 약 3,100명이고, 대출 한도는 세대당 최대 3억 원이다. 대출은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이루어지며, 대출금리는 연 2% 고정금리이다.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실명확인을 위한 서류, 후계농업인 선정 통보 문서, 사업계획서, 소요금액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 계산서 혹은 영수증,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 그 외 기타 필요한 서류이다.³⁴⁾ 금융기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신용상태, 사업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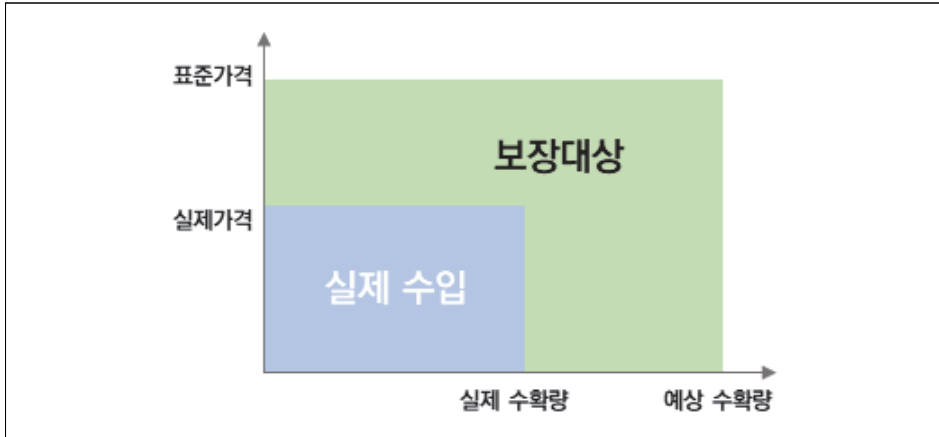
3.3.4. 수입보장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격과 수확량 중 어느 것 하나라도 감소하여 수입이 기준 수입 이하로 하락하면 보상이 이루어진다. 보상이 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대상 품목은 고구마, 콩, 가을감자, 양배추, 마늘, 포도, 양파 등 7개 품목이다. 수입보장보험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보상수준을 수입 감소분의 60%에서 90%까지 선택할 수 있다(2021년 기준).

33) 농협중앙회 농업경영자금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이다(농협중앙회 신OO(농업경영자금 담당자), 2022.10. 22. 전화 인터뷰).

34) NH농협 금융상품몰 홈페이지(<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071R.view>). 검색일: 2022. 10. 7.를 참조하였다.

〈그림 3-2〉 수입보장보험의 보장 범위



자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90&menuId=%205325#>). 수입보장보험. 검색일: 2022. 10. 18.

농작물재해보험이 수확량 감소만을 보상하는 것과 달리 수입보장보험은 가격 변동까지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이 좀 더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2015년에 도입되었으나 계속 시범사업에 머무르며 사업 가입도 일부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손실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농가별 수확량, 매출액자료가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현재는 자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자료의 경우 개인의 수취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을 활용하고 수확량자료는 농가 조사를 통해 확보하고 있다.

4. 소결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일부로 취급되기 때문에 농업소득의 국세청 소득신고는 사업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세청 소득신고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의 지원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근거가 된다. 각 사회보험의 관리 주체는 별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득조사도 하지만

국세청자료가 가장 기초적인 판단근거가 된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은 자영업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세청 소득자료와의 비교·검증을 통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사회보험의 수혜 범위에 농업인이 포함되지 않으며 농업인의 소득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소득이 아닌 추정소득이 활용되고 있다.

국세청 소득신고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파악 체계 외에 농업분야 내에서 경영체 단위의 소득자료를 수집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다. 과거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매출 등의 자료를 등록하도록 시도하였으나 강제성이 없고 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 보니 결국 매출자료의 등록은 중단되었다. 농촌진흥청이나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품목 단위의 표준소득자료는 품목별 평균 매출액 및 경비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개별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경영체 단위의 소득파악을 위하여 농업인이 농업경영장부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이 스스로 매출과 비용, 자산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

농업인의 소득정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금융상품과 연계되어 활용되는데 이때 농업인별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전국 평균가격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 대출 시 농업인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기록된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의 자료와 농축산물생산비 조사 또는 농축산물소득조사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또한 국세청 소득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여 신용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소득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한다. 요약하면, 금융, 복지지원 등 각종 지원 시 실제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우므로 간접적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

제4장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농업인의 소득파악 여건과 인식

1. 농산물 매출 및 생산비 정보의 수집 및 보관 실태

1.1. 면접 및 설문조사 개요

1.1.1. 면접조사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기록의 용이성은 소득신고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인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제반 환경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 관계자, 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농산물 출하, 농자재 구매, 인력 고용, 농작업 위탁이 이루어질 때 계약서,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의 수수 여부와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여부 등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시행한 대면 혹은 전화 인터뷰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 4-1〉 인터뷰 시행일, 장소, 대상

면담일	장소	대상
2022. 1. 18	KREI(영상 회의)	농업인
2022. 3. 22	영암군	농업인
2022. 3. 22	나주시	농업인
2022. 3. 26	KREI(영상 회의)	농업경영컨설턴트
2022. 4. 13	KREI(전화 회의)	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2022. 4. 14	나주시	농협 관계자
2022. 4. 21	나주시	인력지원센터 관계자
2022. 4. 27	대구광역시	산지유통인
2022. 4. 29	광주광역시	산지유통인

자료: 저자 작성.

1.1.2. 설문조사

인터뷰 결과를 보완하고 농업 현장에서의 실태를 보다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 2,490명과 최근 2년간 선정된 청년창업농 3,7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응답자는 현지통신원 1,005명(응답률 40.4%), 청년창업농 704명(응답률 18.8%)이다. 설문조사 대상으로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을 선택한 것은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방식과 이메일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설문내용은 크게 세 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응답자의 경영 현황, 둘째, 농산물 판매 및 생산비 관련 지출의 증빙자료 수취 현황, 장부 작성 실태 등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여건, 셋째, 소득신고의 장애요인, 신고 의사, 소득신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부지원 수요 등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 인식이다.

현지통신원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4-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이 50대 21.0%, 70대 18.8% 순이다. 특히 5·60대의 합이 전체 응답자의 69.4%로 가장 비율이 높는데 이는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영주가 응답자에 많이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³⁵⁾

응답자 중 남성은 83.6%, 여성은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영농 경력은 25.1년이다. 응답자 가구의 52.2%가 2인 가구로 부부가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3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뒤를 잇고 있다.

응답자의 주요 영농형태는 과수 28.5%, 벼농사 25.1%, 채소 18.1% 순으로 전국 평균의 과수 농가 비율보다 많은 비율이 설문조사에 포함되었다. 농림어업조사(2021년)상 영농형태별 농가는 논벼 농가가 37.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채소·산나물 23.8%, 과수 16.6%인 점과 대비된다.

응답자의 평균 재배 규모는 논 3.0ha, 시설 밭 0.6ha, 노지 밭 0.8ha, 과수원 1.1ha이며 평균 사육 규모는 소 75두, 돼지 1,234두, 가금류 4,048수이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천만 원 미만이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20.3%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 중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비율은 96.3%로 대다수이다. 농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8.8%이고, 이들 중 54.6%는 농업 외 다른 업종이 주된 경제 활동이라고 응답했다. 현지통신원 중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이며 주로 5·60대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작물 재배업 20.0%, 도소매업 19.0%, 농업 관련 서비스업 13.6%, 축산업 9.9% 순으로, 대부분 농업 생산 및 유통 등과 관련되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인다.

35) 통계청(2022)의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영주 중 60대는 34.6%, 50대는 17.0%이며 70대 이상은 42.7%로 설문조사 응답자는 전국 연령 분포에 비해 고령농의 비율이 낮다.

〈표 4-2〉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명, %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나이	만 30세 미만	3	0.3	186	26.5
	만 30~39세	37	3.7	433	61.5
	만 40~49세	79	7.9	85	12.1
	만 50~59세	211	21.0		
	만 60~69세	486	48.4	-	-
	만 70세 이상	189	18.8		
	계	1,005	100.0	704	100
남녀	남성	840	83.6	539	76.6
	여성	165	16.4	165	23.4
	계	1,005	100.0	704	100.0
지역	서울	2	0.2	2	0.3
	부산	1	0.1	4	0.6
	대구	1	0.1	6	0.9
	인천	1	0.1	9	1.3
	광주	-	-	7	1.0
	울산	3	0.3	1	0.1
	세종	4	0.4	5	0.7
	경기	102	10.2	71	10.1
	강원	103	10.3	37	5.3
	충북	92	9.2	50	7.1
	충남	138	13.7	75	10.7
	전북	108	10.8	119	16.9
	전남	138	13.7	89	12.6
	경북	182	18.1	112	15.9
	경남	122	12.1	87	12.4
	제주	8	0.8	30	4.3
	계	1,005	100.0	704	100.0
영농 경력(년)		25.1	14.0	2.2	2.0
가구원 수	1명	85	8.5	233	33.1
	2명	525	52.2	116	16.5
	3명	197	19.6	160	22.7
	4명	129	12.8	135	19.2
	5명 이상	69	6.9	60	8.5
	계	1,005	100.0	704	100.0
영농 분야	벼농사	252	25.1	119	16.9
	채소	182	18.1	177	25.1
	축산	73	7.3	102	14.5
	과수	286	28.5	175	24.9

(계속)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두류·서류	43	4.3	32	4.6
	임산물	31	3.1	13	1.9
	특용작물	124	12.3	56	8.0
	화훼	11	1.1	26	3.7
	기타	3	0.3	4	0.6
	계	1,005	100.0	704	100.0
영농 규모	논(ha)	3.0	6.4	1.8	4.6
	밭(시설, ha)	0.6	1.2	0.5	0.8
	밭(노지, ha)	0.8	1.2	0.9	1.8
	과수(ha)	1.1	1.6	0.8	1.0
	소(두)	75	81.3	84.8	116.9
	돼지(모돈 기준, 두)	1,234	1,328.1	119.0	81.1
매출액	가금(수)	4,048	14,439	21,988	26,470
	2천만 원 미만	319	31.7	338	48.0
	2천만~3천만 원	148	14.7	113	16.1
	3천만~5천만 원	183	18.2	89	12.6
	5천만~1억 원	204	20.3	87	12.4
	1억 원 이상	151	15.0	77	10.9
경영 규모 확대 계획	계	1,005	100.0	704	100.0
	있음	245	24.4	628	89.2
	없음	760	75.6	76	10.8
	계	1,005	100.0	704	100.0
경영체등록 여부	예	968	96.3	628	89.2
	아니오	37	3.7	76	10.8
	계	1,005	100.0	704	100.0
농업 외 다른 업종 종사 여부	예	390	38.8	197	28.0
	아니오	615	61.2	507	72.0
	계	1,005	100.0	704	100.0
겸업 농업인의 주된 경제 활동	농업	177	45.4	101	51.3
	농업 외 사업 또는 근로	213	54.6	96	48.7
	계	390	100.0	197	100.0
사업자 등록 여부	예	353	35.1	199	28.3
	아니오	652	64.9	505	71.7
	계	1,005	100.0	704	100.0
사업자 등록 업종	작물재배업	69	20.0	100	50.3
	축산업	35	9.9	19	9.6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영농	7	2.0	7	3.5
	농업 관련 서비스업	48	13.6	29	14.6
	임업	5	1.4	1	0.5
	농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8	5.1	8	4.0

(계속)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빈도/평균	비율/표준편차
	식품 제조업	20	5.7	6	3.0
	도소매업	67	19.0	24	12.1
	숙박업	12	3.4	-	-
	음식점업	7	2.0	1	0.5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17	4.8	1	0.5
	기타	48	13.6	3	1.5
	계	353	100.0	199	100.0

주: 영농 경력, 영농 규모는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청년창업농 응답자는 30대가 61.5%, 20대가 2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의 응답자가 40세 이상이였다. 응답자 중 남성은 76.6%이고, 여성은 23.4%로 현지통신원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높다.

가구원 수는 단독 가구가 33.1%, 3명이 22.7%, 4명이 19.2%, 2명이 16.5%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통신원 응답자는 2인 가구가 가장 많았던 것에 반해 청년창업농은 독신이거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많다.

주요 영농분야로는 채소 25.1%, 과수 24.9%, 벼농사 16.9%, 축산이 14.5%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통신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영농형태별 농가 분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비교적 수익단가가 높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설문에 응답한 청년창업농의 평균 경지 규모(자가+임차)는 논 1.8ha, 시설 밭 0.5ha, 노지 밭 0.9ha, 과수원 0.8ha이다. 청년창업농의 평균 영농 규모는 현지통신원보다 작은 편이나 밭의 규모는 논보다는 상대적으로 그 차이가 적다. 축산 농가의 평균 사육두수는 소 84.8두, 돼지 119두, 가금류 21,988수로, 현지통신원보다 소나 가금류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천만 원 미만이 48.0%로 가장 많고, 2천만~3천만 원이 16.1%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통신원에 비해 청년창업농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

경영 규모 확대 계획이 있다는 청년창업농은 응답자의 89.2%로 현지통신원(24.4%)에 비해 매우 높아 현지통신원에 비해 경영진단, 경영전략 수립, 자금조달 등에 더 관심이 클 가능성이 높다.

농업 외 다른 업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0%로 현지통신원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다른 업종에 종사하여도 주요 업종이 농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1.3%이다.

청년창업농 응답자 중 89.2%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다. 또한 30대를 중심으로 청년창업농 중 28.3%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사업자등록 업종은 작물 재배업(50.3%), 농업 관련 서비스업(14.6%), 도소매업(12.1%) 순이다.

현지통신원은 전체 평균에 비해 활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소득신고가 필요해진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이다. 청년농업인은 미래의 핵심 농업인력으로서 이들 또한 소득신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경영실태 파악을 통해 소득신고의 확대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설문 대상이 전체 농업인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2. 조사 결과

1.2.1. 농산물 매출 관련 증빙자료 수수

농업인의 농산물 주요 판매처는 농협, 소비자 직접 판매,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도매시장 등으로 나뉜다. 2020년 농업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판매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농협(32.6%)이며 그다음으로는 소비자 직판이 29.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응답자의 농산물 주요 출하처는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모두 소비자 직판, 농협,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순으로 나타났으며 1순위만 놓고 보자면 농협이 출하처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중치를 부여한 농산물 출하처 1, 2, 3순위의 합은 소비자 직판, 농협, 도매시장, 산지공판장 순으로 나타났다.³⁶⁾

36) 1, 2, 3순위 응답의 합은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이다.

〈표 4-3〉 농산물 출하처

단위: 명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농협	353	123	64	1,369	219	90	53	890
소비자 직판	319	175	105	1,412	172	148	87	899
산지유통인	45	84	65	368	25	47	30	199
산지공판장	54	77	51	367	71	59	43	374
도매시장	91	82	56	493	86	56	47	417
대형 유통업체	27	32	37	182	20	18	27	123
농업법인	47	52	26	271	37	29	16	185
생산자 단체	31	47	37	224	36	19	34	180
가족/지인	19	8	16	89	7	3	4	31
온라인 판매	3	3	8	23	7	7	5	40
공공기관	8	2	5	33	4	1	2	16
기타	8	10	12	56	20	10	7	87
계	1,005	695	482	4,887	704	487	355	3,441

주: 계는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산물 출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판매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조사 결과 농협은 농산물을 출하한 농업인에게 정산서를 지급한다.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을 발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택배 송장 혹은 영수증을 보관하여 매출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판매처에는 산지유통인, 산지공판장 및 도매시장, 친환경농산물 전문유통업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등이 있다. 해당 판매처별 농산물 판매에 대한 증빙 서류로는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계약서류, 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농업인이 산지유통인과 거래한 경우, 포전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면, 포전매매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전매매 계약서에는 평당 계약액, 계약 평수, 계약액 등이 기입된다. 계약서는 산지유통인과 농업인이 각각 보관하여, 농업인은 계약서를 통해 농산물 판매액을 파악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소규모 산지유통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산지유통인은 농업인에게 계좌이체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있다. 법인으로 등록된 산지유통인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산물을 산지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경우, 산지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서 판매전표를 발행한다. 판매전표에는 납품일, 품목, 단가, 출하량, 판매액과 상·하역 비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도매시장 법인은 일시, 품목, 단가, 수량, 기타 비용(운송비, 수수료 등)이 포함된 내용을 출하자에게 문자 또는 팩스로 통보한다. 대금 지급은 계좌이체로 하고 있어 대금 수수 기록이 남아 있게 된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결과를 전산 기록으로 보관하며, 최소 5년 이상 기록을 보관한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농산물을 출하한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농업인에게 거래내역서를 발급한다.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농업인과 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전자계약을 하고 있다. 농업인은 유통업체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거래내역서를 보고 농산물 판매액을 파악할 수 있다. 공급하는 농산물의 가격 결정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가격 결정 결과는 대형마트에서 농업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크지 않은 범위에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납품된 농산물에 대한 대금의 지급은 계좌이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4-4〉 판매처별 농업인 매출 증빙 서류

판매처	증빙서류	비고
농협	정산서	
소비자 직판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사업자등록 시
	택배 송장 혹은 영수증	
산지유통인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산지공판장	판매전표	
도매시장	판매전표	
대형 유통업체	거래내역서	
기타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계약서류, 거래내역서	

자료: 이OO, 2022. 4. 14. 나주시; 윤OO, 2022. 1. 18. 영상 회의; 전OO, 2022. 3. 22. 영암군; 노OO, 2022. 3. 22. 나주시; 김OO, 2022. 4. 29. 광주광역시; 이OO, 2022. 4. 27. 대구광역시; 이OO, 2022. 3. 24. 전화인터뷰; 변OO, 2022. 3. 28. 전화 인터뷰.

농업인들의 주요 출하처인 농협에서 발급되는 판매액 관련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표 4-5>. 농협에서는 농업인과 계약재배, 수탁매매 등으로 농산물을 매입할 때 정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출하하는 방법은 크게 계통 출하와 자가 출하로 구분된다. 계통 출하 시 농협은 출하일시, 품목, 단가, 출하량, 출하액을 기록한 정산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한다. 농업인이 공판장으로 자가 출하하였으나 농협을 통해 정산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공판장 및 도매 시장에서 농협으로 판매전표를 보내준다. 판매전표에는 출하일시, 품목, 단가, 출하량, 출하액, 수수료 및 제 비용 등이 기입되어 있다. 공판장에서 발급한 판매전표는 농협이 농업인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며 관련 기록은 전산화되어 보관된다. 필요한 경우, 농업인은 농산물 판매에 대한 정보를 농협에 요청할 수 있다.

〈표 4-5〉 출하 방법별 발급되는 증빙자료 및 지역농협 보관 여부(금천농협 사례)

경로		서류명	기입 사항	서류 전달 방법 / 농협 보관 여부	비고
계통 출하		정산서	출하일시, 단가, 출하량, 출하액	농협 전산 보관	
공선회 출하		정산서	출하일시, 단가, 출하량, 출하액	농협 전산 보관	
공판장	농협 정산	판매전표	출하일시, 단가, 출하량, 출하액, 공판장 수수료, 제비용	농협 전산 보관	공판장에서 농협으로 관련 서류 Fax 송부
	농협 비정산	-	-	-	지역농협에서 파악 불가

자료: 이OO, 2022. 4. 14. 나주시.

농업인이 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 관련 증빙 서류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판매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23.9%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판매 증빙 서류를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형태별로는 화훼 농가와 축산 농가의 서류 수취 비율이 높았으며 두류 및 서류 재배농가, 임산물 재배농가의 증빙자료 수취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6〉 영농형태별 농산물 판매금액 증빙 서류 수수 여부

구분	발급받지 않음		발급받고 있음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벼농사	83	22.4	288	77.6	371	100.0
채소	102	28.4	257	71.6	359	100.0
축산	31	17.7	144	82.3	175	100.0
과수	107	23.2	354	76.8	461	100.0
두류·서류	22	29.3	53	70.7	75	100.0
임산물	13	29.5	31	70.5	44	100.0
특용작물	45	25.0	135	75.0	180	100.0
화훼	4	10.8	33	89.2	37	100.0
기타	1	14.3	6	85.7	7	100.0
계	408	23.9	1,301	76.1	1,709	100.0

주: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응답 결과를 합하였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판매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발급 서류의 종류를 설문한 결과, 농업인이 발급받는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는 주로 정산서, 거래내역서, 판매전표, 택배송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들은 신고 목적이 아닌 경영기록의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택배송장 등은 국세청의 적격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신고까지 감안한다면 매출 파악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표 4-7〉 발급받는 농산물 판매 증빙 서류

구분	발급자 수(명)	비율(%)
정산서	605	27.9
현금영수증	143	6.6
카드영수증	152	7.0
택배송장	247	11.4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35	1.6
판매전표	339	15.6
거래내역서	612	28.2
개인 기록/장부	21	1.0
기타	17	0.8
계	2,171	100.0

주: 발급받는 증빙 서류는 발급받고 있다는 응답자들이 중복응답을 한 결과임. 따라서 '발급받고 있음'으로 응답한 수보다 많음.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2. 생산비 관련 지출 증빙 수수 및 기록

가. 비료, 농약 등 농자재

농자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구입처, 거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농자재 구입은 현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외상 거래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령 농업인이나 소규모 농업인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업인이 외상 거래로 농자재를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

현찰 거래 시, 농업인은 현금 혹은 카드로 결제를 하고, 농협과 농자재상에서는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한다. 농업인은 필요에 따라 농협 혹은 농자재상과 외상 거래를 하기도 한다. 농업인은 농자재 구입대금을 계좌이체로 결제하고, 농협 혹은 농자재상에서는 거래 명세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농업인은 거래 명세서나 계좌를 확인하여 본인이 사용한 농자재 비용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8〉 구입처별 농업인 농자재 구매 비용 증빙 서류

거래처	증빙서류	비고
농협	전산 출력물,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영수증	현찰 지급
	거래명세서	외상 거래
일반 농자재상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영수증	현찰 지급
	거래명세서	외상 거래
기타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 육묘 계획서	

자료: 이OO, 2022. 4. 14, 나주시; 윤OO, 2022. 1. 18, 영상 회의; 전OO, 2022. 3. 22, 영암군; 노OO, 2022. 3. 22, 나주시.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은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대부분 지역농협, 비료상 및 농약상 등 지역의 상인에게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모두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다. 특히 현지통신원은 농협에서 농자재를 구매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를 차지하고 있다. 농협 다음으로는 일반 농자재상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4-9〉 농자재 구입처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농협	921	65.1	561	54.1
일반 농자재상	416	29.4	399	38.5
마을/작목반 공동 구매	60	4.2	54	5.2
기타	17	1.2	23	2.2
계	1,414	100.0	1,037	100.0

주: 중복응답 허용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지역농협에서는 부가세 환급 업무를 대행하는데 이에 따라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는 모두 전산에 등록된다. 이에 농업인이 요청하면 증빙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도 농협에서 구매한 농자재 지출 내역은 전산화 되어 추후 확인이 가능하다. 외부 농자재상에서 구입한 농자재는 농협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부과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여, 환급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인의 농자재 구매 지출자료를 얼마나 수취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대부분 현장에서 바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카드 결제 비율이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계좌이체, 현장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는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금액 확인이 용이한 계좌이체와 카드 결제 비율이 약 80%에 이르고 있어 농업인 스스로 생산비를 확인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0〉 농자재 구입대금 지급 방법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좌이체	238	23.7	150	21.3	388	22.7
카드 결제	545	54.2	409	58.1	954	55.8
현장에서 현금 지급	186	18.5	120	17.1	306	17.9
외상 거래 후 결제	29	2.9	19	2.7	48	2.8
기타	7	0.7	6	0.9	13	0.8
계	1,005	100.0	704	100.0	1,70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지 설문한 결과, 농자재 구입 증빙 서류를 발급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1.9%로 대다수의 농업인이 증빙 서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집단별로는, 현지통신원의 17.2%, 청년창업농의 28.7%가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청년창업농이 상대적으로 농자재 구매 증빙자료를 수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농이 대체로 현지통신원에 비해 영농 규모가 작아 증빙자료의 수취에 대해 덜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4-2>의 매출액별 응답자 분포 참고).

〈표 4-11〉 농자재 구입대금 증빙 서류 수령 여부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발급받고 있지 않음	173	17.2	202	28.7	375	21.9
발급받고 있음	832	82.8	502	71.3	1,334	78.1
계	1,005	100.0	704	100.0	1,70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자재를 구입하고 발급받는 증빙 서류로는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카드영수증과 거래명세서가 발급받고 있는 증빙서류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9.2%와 37.7%로 가장 많고 현금영수증과 간이영수증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4-12〉 발급받는 농자재 구입대금 증빙 서류

구분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기타	계
빈도(명)	260	745	172	716	6	1,899
비율(%)	13.7	39.2	9.1	37.7	0.3	100.0

주: 발급받는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서류 수령 인원의 총합을 초과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자재 구매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농업인의 거래처와 거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농업인이 사용한 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조사 대상 중 약 80%의 농업인이 증빙자료를 받고 있으며 증빙자료를 발급 받지 않더라도 무자료 거래가 아닌 이상 추후 전산 조회를 통해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인건비

농업경영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는 인건비이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가족 외에 추가로 노동력을 고용하는 농가가 응답자의 42.1%이며 임산물, 화훼, 특용작물, 과수의 순으로 고용 비율이 높았다.

〈표 4-13〉 영농분야별 인력 고용 여부

구분	고용없음		고용하였음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벼농사	237	63.9	134	36.1	371	100.0
채소	202	56.3	157	43.7	359	100.0
축산	134	76.6	41	23.4	175	100.0
과수	239	51.8	222	48.2	461	100.0
두류·서류	45	60.0	30	40.0	75	100.0
임산물	18	40.9	26	59.1	44	100.0
특용작물	92	51.1	88	48.9	180	100.0
화훼	18	48.6	19	51.4	37	100.0
기타	4	57.1	3	42.9	7	100.0
계	989	57.9	720	42.1	1,70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인건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유무와 유형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건비 지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우선 작성해야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이 대부분이다.³⁷⁾

37) 엄진영, 김부영(2020, p.103)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중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70.9%이나,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이 각 26.9%, 4.8%에 불과하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인력을 고용하는 농가 중 약 80% 정도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동력을 고용할 때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지통신원 13.2%, 청년창업농 17.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약 80% 수준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표 4-14〉 인력 고용 시 노무관리 현황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약 방식	일용근로자	423	80.9	223	79.9	
	1개월 이상 월급근로자	44	8.4	23	8.2	
	1년 이상 월급근로자	56	10.7	33	11.8	
	계	523	100.0	279	100.0	
계약서 작성 여부	예	62	13.2	43	17.2	
	아니오(구두로 계약함)	408	86.8	207	82.8	
	계	470	100.0	250	100.0	
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 여부	모두 작성하지 않았음	298	63.4	144	57.6
		작성하였음	172	36.6	106	42.4
		계	470	100.0	250	100.0
	작성하는 서류	근로자 명부만 작성	34	19.8	23	21.7
		임금대장만 작성	59	34.3	44	41.5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79	45.9	39	36.8
		계	172	100.0	106	100.0
	임금내역서 제공 여부	예	78	16.6	44	17.6
아니오		392	83.4	206	82.4	
계		470	100.0	250	100.0	
주요 임금 지급 방법	계좌이체	172	36.6	101	40.4	
	현장에서 현금 지급	298	63.4	149	59.6	
	계	470	100.0	250	100.0	

주: 계약 방식은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합계가 고용 농가의 수를 초과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근로자 명부 혹은 임금대장 모두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지통신원이 63.4%이고 청년창업농이 57.6%로 현지통신원의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따라서 노동력을 고용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아, 농가에서 노동 비용에 대해 근거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 명부 혹은 임금대장을 작성한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현지통신원은 그 둘을 통합하여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임금대장만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4.3%이다. 청년창업농은 임금대장만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이고,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된 노동자에게 임금대장 혹은 임금내역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모두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농가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다른 근거 서류를 고용된 노동자에게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에서 임금 지급에 대한 근거 서류를 따로 작성하거나, 보유하고는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약 60% 정도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농가에서 따로 기록하지 않으면, 고용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자료가 남기 어렵다.

설문조사 결과는 농업 분야에서 고용계약서나 임금대장 작성 등 노무관리의 미비로 인해 인건비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면접조사 결과, 농가가 내국인이나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임금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임금은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만 가능하여 인건비 지출 증빙자료가 남지 않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인건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타 명목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다. 농지 임차료

농업인이 농지 임대차 거래를 하는 방식은 서면 계약과 구두 계약으로 나뉜다. 채광석 외(2016)에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차 계약 방식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서면 계약을 하는 비율이 52.0%로 구두 계약에 비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임소영 외(2021)에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면 계약을 하는 비율이 94%로 서면 계약 비율이 매우 높았다. 두 조사는 설문조사 대상과 조사기간의 차이로 인해 결과에 차이가 있으나 서면 계약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5〉 농지 임대차 계약 방식

출처	단위: %	
	서면 계약	구두 계약
채광석 외(2016)	52.0	48.0
임소영 외(2021)	94.0	6.0

자료: 채광석 외(2016, p.59); 임소영 외(2021, p.68).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65%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 임차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서면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현지통신원 82.3%, 청년창업농 93.7%)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할 때 서면 계약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액수와 지급 방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서면 계약의 확대는 농지 임대차 비용을 파악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줄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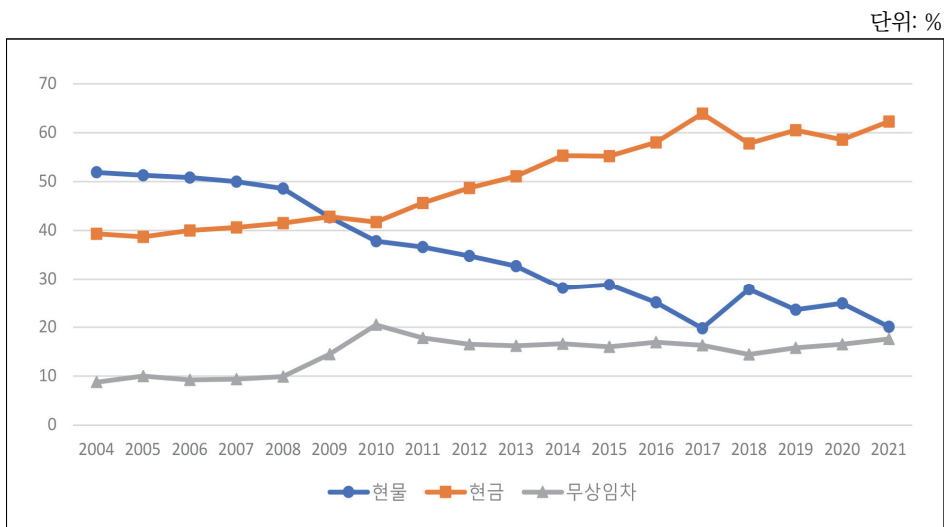
〈표 4-16〉 농지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있음	572	82.3	429	93.7	1,001	86.8
없음(구두로 계약함)	123	17.7	29	6.3	152	13.2
계	695	100.0	458	100.0	1,15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농지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계좌이체를 하는 비율이 높아서 계약서 외에도 계좌 확인을 통해 비용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농가경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으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비율은 2004년에 39.3%였으나 2021년에는 62.3%로 상승한 반면, 현물로 지급하는 비율은 51.9%에서 20.1%로 감소하였다.

〈그림 4-1〉 임차료 지불 형태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농지 임대료 지급 방식에 대한 설문에서는 계좌이체를 한다는 응답이 현지통신원 63.0%, 청년창업농 73.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현지통신원의 경우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10.2%, 현물로 지급한다는 응답이 18.6%를 차지하고 있어, 농지 임차료 지급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더 많았다.

〈표 4-17〉 농지 임차 시 임대료 지급 방식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전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계좌이체	438	63.0	335	73.1	773	67.0
현장에서 현금 지급	71	10.2	39	8.5	110	9.5
현물 지급	129	18.6	42	9.2	171	14.8
무상 임차	57	8.2	42	9.2	99	8.6
계	695	100.0	458	100.0	1,15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농작업 위탁

농업인은 농협, 위탁영농회사, 농기계를 보유한 개인 등에게 농작업을 위탁하기도 한다. 농작업 위탁은 주로 수도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일부 밭작물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작의 경우 농작업 위탁은 육묘, 경운, 이앙, 제초, 방제, 수확, 건조 등 작업별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모든 과정을 일괄 위탁하기도 한다. 밭작물은 파종, 피복작업, 수확 등에 대해 농작업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작업 위탁 시 농업인과 농작업자 또는 대행기관은 농작업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신청서를 받거나 서류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에게 농작업을 위탁할 때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농작업위수탁 계약서는 표준 양식이 없으며 대체로 농작업 시기, 농작업 내용, 위탁 대금, 그 외 기타 사항이 기재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작업 위탁을 해 본 응답자는 현지통신원 15.7%, 청년창업농 13.6%인데 이들은 대부분 농작업의 위탁 비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농작업을 위탁하였으나 증빙 서류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현지통신원 11.9%, 청년창업농 9.2%이다.

또한, 농작업 위탁 비용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현지통신원 44.6%, 청년창업농 50.0%인데 이 경우 기록이 남지 않아 관련 비용 파악이 어렵다.

〈표 4-18〉 농작업 외부 위탁 여부 및 비용 지급 방법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위탁 여부	예	74	15.7	34	13.6
	위탁 증빙 서류 수령	18	3.8	11	4.4
	위탁 증빙 서류 미수령	56	11.9	23	9.2
	아니오	396	84.3	216	86.4
	계	470	100.0	250	100.0
비용 지급 방법	계좌이체	40	54.1	17	50.0
	카드 결제	1	1.4	-	-
	현장에서 현금 지급	33	44.6	17	50.0
	계	74	100.0	3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3. 증빙자료의 보관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수집과 보관이 필수적이다. 국세청 소득신고자가 의무적으로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해야 국세청 소득신고가 가능하다.

현지통신원 중에서 농산물을 판매 및 비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0.9%로 <표 4-6>과 <표 4-11>에서 판매금액 및 농자재 구입대금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최소 70%를 넘는 것에 비해 증빙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증빙자료를 발급받더라도 보관하지는 않는 농업인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매 및 비용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농업인들도 대부분 보관 기간이 5년을 넘지 못한다. 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농업이 중 48.5%가 1년 이상 3년 미만 동안 보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자료를 보관하는 비율은 17.5%이다.

〈표 4-19〉 농산물 판매 및 비용 관련 증빙자료 보관 현황(현지통신원)

구분		빈도(명)	비율(%)
보관 여부	예	439	50.9
	아니오	424	49.1
	계	863	100.0
보관 기간	1년 미만	81	18.5
	1년 이상 3년 미만	213	48.5
	3년 이상 5년 미만	68	15.5
	5년 이상	77	17.5
	계	439	100.0

주: 자료 보관 기간별 비율은 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함.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4. 경영장부의 작성과 활용

면담조사와 설문조사 결과, 일부 농업인은 수입 및 지출 내역이 기입된 경영장부를 작성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농업인은 경영장부를 작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통신원 설문조사에서 영농 기록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1%이고 55.3%는 영농일지만 작성하고 있어 절반 이상의 현지통신원이 경영장부를 통해 매출 및 비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표 4-20>. 반면 매출액만 기록하거나 회계·경영장부를 작성하는 비율은 30%를 차지하여 현지통신원과 같이 영농 경력이 오래된 농업인의 경우 일부만이 장부를 통한 소득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0〉 영농 관련 기록 형태(현지통신원)

구분	빈도(명)	비율(%)
기록하고 있지 않음	142	14.1
농약, 비료, 인력 투입 등에 관한 영농 일지만 작성	556	55.3
매출액만 기록	23	2.3
매출액·지출액 포함 간단한 경영장부 작성	249	24.8
회계장부 작성	29	2.9
모름/무응답	2	0.2
기타	4	0.4
계	1,005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청년창업농은 현지통신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부 활용 비율이 높았다. 매출액과 생산비를 기록만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1.5%, 매출액과 생산비를 장부로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1.6%, 매출과 생산비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경영계획 수립 및 자산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는 비율이 9.8%로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비율은 모두 52.9%이다<표 4-21>.

〈표 4-21〉 경영상태 파악(청년창업농)

구분	빈도(명)	비율(%)
매출과 비용 정보는 전혀 기억나거나 기록하지 않음	68	9.7
연간 매출액만 대충 기억하고 있는 정도임	147	20.9
매출전표와 생산비 관련 영수증을 모아 놓는 수준임	117	16.6
매출액과 생산비를 기록하고 있음	151	21.5
매출액과 생산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음	152	21.6
매출과 생산비 모두 장부에 기록, 이를 바탕으로 경영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자산 평가를 실시함	69	9.8
계	70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경영장부를 작성하더라도 투입재 사용량 및 시기, 농작업에 관한 기록으로 한 정되어 있어 소득파악을 위한 용도로서는 한계가 있다.

농촌진흥청(2020, p.117)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영농일지로 활용하는 농가가 47.4%, 구입 및 판매 관리를 위해 활용하는 농가는 29.5%, 재산 및 부채 관리, 복식회계 기반 재무분석용으로 활용하는 농가는 각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현지통신원은 작성한 경영장부를 투입·생산량 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한다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관리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으며 자산 및 부채 관리, 현금흐름 등 자금 관리, 재무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에 경영정보를 활용한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청년창업농도 현지통신원과 마찬가지로 투입·생산량 확인을 위해서 경영장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1순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재무·회계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1, 2, 3순위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합한 결과 청년창업농은 구입/판매 관리를 위해 경영장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투입·생산량 확인 용도보다 많았다. 또한, 자산 및 부채 관리, 현금흐름 등 자금 관리에 활용한다는 응답이 현지통신원보다 상대적으로 많다. 젊은 연령대일수록 정확한 소득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22〉 경영장부 활용 용도

구분	현지통신원(명)				청년창업농(명)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투입·생산량 확인	411	163	63	1,622	219	77	34	845
구입/판매 관리	234	288	79	1,357	165	166	28	855
자산 및 부채 관리	40	93	125	431	26	62	108	310
현금흐름 등 자금 관리	71	69	112	463	40	47	80	294
재무분석 및 경영전략 수립	93	49	109	486	12	19	60	134
모름/무응답	1	0	0	3	11	2	1	38
기타	13	2	5	48	8	0	0	24

주 1) 청년창업농에게는 농업ON 경영장부 활용자만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음.

2) 계는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내 농업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농업회계 프로그램은 7개에 이르지만 농가의 경영기록 및 농업회계 활용 비율은 높지 않다. 농촌진흥청(2020, p.116)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영기록 및 농업회계를 활용하는 농가 비율은 46.3%, 활용하지 않는 농가는 37.3%, 활용하다가 중단한 농가는 1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3〉 농업회계 프로그램 현황

명칭	기관	구축기반	부기형태	영농일지 포함 여부
더존	더존	PC	복식	미포함
회계박사	농촌진흥청	PC	복식	포함
농업경영체계기록분석시스템	경북농업기술원	웹	복식	포함
바로바로	충북농업기술원	웹	복식	포함
농업ON 농업경영장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웹	복식	포함
알차니	농협	PC	단식	미포함
태극회계	송도부기연구소	웹	복식	포함

자료: 농촌진흥청(2020, p.61)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저자 작성.

이 연구에서 현지통신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농업회계 프로그램 활용도가 더욱 낮게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79.8%가 회계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즉, 일반 농업인은 경영장부 혹은 영농일지를 기록하더라도 농업회계 프로그램까지는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창업농은 응답자 모두 농업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조건 중 하나인 농업ON을 이용해서 경영장부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3.6%였다.

〈표 4-24〉 농업회계 프로그램 활용 현황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활용하고 있지 않음	689	79.8	-	-
더존	0	0.0	8	1.6
회계박사	5	0.6	2	0.4
농업경영체계기록분석시스템	24	2.8	14	2.7
바로바로	39	4.5	9	1.8
농업ON 경영장부	87	10.1	481	93.6
알차니	2	0.2	0	0.0
태극회계	3	0.4	0	0.0
기타	14	1.6	0	0.0
계	863	100.0	51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농가에서 경영기록 및 회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기록 및 회계를 중단한 이유는 주로 필요성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기록이 어려워서이다. 경영기록 및 회계를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는 필요성이 없어서가 42.5%, 시간이 부족해서가 21.8%, 기록이 어려워서가 13.4%를 차지하고 있다. 경영기록 및 회계를 중단한 이유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36.6%, 필요성이 없어서가 17.1%, 기록이 어려워서가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 2020, p.118).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에게 설문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지만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의 특성이 달라 경영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요한 이유는 조금씩 다르다. 현지통신원은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기록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응답 순이다. 이에 반해, 청년창업농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회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순이다.

〈표 4-25〉 경영기록 장애요인

구분	현지통신원(명)				청년창업농(명)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시간이 부족함	211	65	83	846	285	54	76	1,039
장부 작성 방법에 대한 이해 부족	112	150	65	701	117	168	53	740
컴퓨터 등을 이용한 회계 프로그램 이해 부족	184	122	65	861	78	118	93	563
필요성을 못 느낌	81	33	51	360	42	35	42	238
어려움이 없음	269	0	0	807	168	0	0	504
모름/무응답	4	0	0	12	11	4	6	47
기타	2	0	2	8	3	0	0	9

주: 계는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청년창업농은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에 익숙하고, 세무·회계 교육을 받아서 회계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현지통신원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이들은 경영장부 작성에 어려움을 덜 느끼고 결과적으로 소득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젊은 층은 정보화 기기 활용도가 높는데 이는 청년농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수단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응답이 7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기로 작성한다는 응답은 17.3%를 차지하였다.

〈표 4-26〉 경영장부 작성 방법(청년창업농)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기로 작성함	122	17.3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작성함	514	73.0
작성하지 않음	68	9.7
계	70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반면 현지통신원 중에서 매출 및 생산비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기록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에 불과하다. 이는 <표 4-6>, <표 4-11>에서 매출 및 농자재 구입 증빙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응답한 비율과 <표 4-19>에서 증빙자료를 보관한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즉, 매출 및 농자재 구입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는 하나, 이 서류를 보관하는 농업인은 그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류를 보관할지라도 이 자료를 전산화시켜서 기록하는 농업인은 그보다 적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4-27〉 매출/생산비 지출 관련 자료 전산 기록 여부(현지통신원)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0	22.0
아니오	673	78.0
계	863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연령별 경영기록 및 회계 프로그램 활용 비율은 농업총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영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추세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과 활용률이 낮아져 경영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70대 이상 농가의 정보화 기기 보유 비율은 59.0%로 경영주 연령 60대 이하 농가의 정보화 기기 보유 비율이 최소 90% 수준인 것과 차이가 크다. 정보화 기기 활용 농가 비율은 경영주 연령이 20대 이하가 50% 수준이고, 70대 이상 농가가 11.6%로 젊은 농가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화 기기를 활용하는 농가들도 주로 농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로 활용할 뿐 농업경영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3.6%에 불과하였다.

〈표 4-28〉 연령대별 정보화 기기 보유 및 활용 농가

단위: 호, (%)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보유 농가		1,078 (98.2)	11,057 (97.6)	60,007 (96.8)	192,948 (95.4)	309,934 (89.1)	242,446 (59.0)	817,470 (79.0)
용도	활용 농가	552 (50.3)	5,229 (46.2)	25,423 (41.0)	75,611 (37.4)	102,468 (29.5)	47,707 (11.6)	256,990 (24.8)
	농업 재배시설 및 축사관리	103 (9.4)	882 (7.8)	2,559 (4.1)	5,963 (2.9)	6,433 (1.9)	1,783 (0.4)	17,723 (1.7)
	농산물판매	162 (14.8)	1,530 (13.5)	6,711 (10.8)	18,731 (9.3)	23,086 (6.6)	8,921 (2.2)	59,141 (5.7)
	농촌 관광사업	7 (0.6)	26 (0.2)	136 (0.2)	358 (0.2)	408 (0.1)	123 (0.0)	1,058 (0.1)
	농업경영관리	175 (15.9)	1,485 (13.1)	5,138 (8.3)	12,538 (6.2)	13,642 (3.9)	4,259 (1.0)	37,237 (3.6)
	관련 정보수집	471 (42.9)	4,570 (40.3)	23,023 (37.1)	69,194 (34.2)	94,249 (27.1)	44,285 (10.8)	235,792 (22.8)
	미활용 농가	526 (47.9)	5,828 (51.4)	34,584 (55.8)	117,337 (58.0)	207,466 (59.7)	194,739 (47.4)	560,480 (54.1)
미보유 농가		20 (1.8)	271 (2.4)	1,967 (3.2)	9,383 (4.6)	37,780 (10.9)	168,302 (41.0)	217,723 (21.0)
계		1,098 (100.0)	11,328 (100.0)	61,974 (100.0)	202,331 (100.0)	347,714 (100.0)	410,748 (100.0)	1,035,193 (100.0)

자료: 통계청(2021a). 2020 농림어업총조사.

2. 소득파악 및 신고 의사

2.1. 소득파악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한 인식

2.1.1.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한 농업인 인식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68.1%를 차지하고 있다<표 4-29>.

〈표 4-29〉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계
응답 수	80	90	375	655	509	1709
비율	(4.7)	(5.3)	(21.9)	(38.3)	(29.8)	(100.0)

주: 괄호 안은 연령대별로 경영기록 작성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개인 특성에 따라 소득파악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응답항목을 5점 척도로 변환하여 개인 특성에 따른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³⁸⁾ 개인 특성별 평균 점수에 대해서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고, 요인별로 차이가 없다는 가정을 기각한 경우, 최소 유의차(Least Significance Difference: LSD)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³⁹⁾⁴⁰⁾

38)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를 1~5로 하여 5점 척도를 부여하였다.

39) 분산분석에서는 요인별로 등분산성을 가정한다. 만약, 등분산성 가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분산분석의 결과는 일치 추정량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요인별 분산을 조정하고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

40) LSD 사후검정은 분산분석에서 모든 요인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는 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어떤 요인별로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다중비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요인이 3개가 있을 경우, 분산분석을 통해 각 요인별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1번 요인과 2번 요인, 1번과 3번 요인, 2번과 3번 요인의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다.

분석 결과,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그룹별 평균 점수로 나타냈을 때 전체 평균 점수는 3.83으로서 응답자 전체가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평균 점수가 각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30대가 가장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소득파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¹⁾

〈표 4-30〉 연령대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LSD 사후검정					
				만 30세 미만	만 30~ 39세	만 40~ 49세	만 50~ 59세	만 60~ 69세	만 70세 이상
만 30세 미만	3.97	1.10	6.86 (0.000)						
만 30~39세	4.00	1.07							
만 40~49세	3.91	1.10							
만 50~59세	3.75	1.06		**	***				
만 60~69세	3.74	0.97		***	***	*			
만 70세 이상	3.55	1.08		***	***	***	*	**	
전체	3.83	1.06							

주: *, **, ***는 각각 $p \leq 0.10, 0.05, 0.01$ 을 의미.

자료: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요 영농분야별로는 두류·서류, 화훼, 임산물, 축산, 채소, 과수를 주로 하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벼농사를 주로 하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다.⁴²⁾

41) 연령대별 소득파악의 필요성 인식 점수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7.59, p=0.180$ 으로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42) 영농분야별 소득파악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7.19, p=0.516$ 으로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표 4-31〉 영농분야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LSD 사후검정								
				벼 농사	채소	축산	과수	두류· 서류	임산 물	특용 작물	화훼	기타
벼농사	3.68	1.11	2.01 (0.042)									
채소	3.88	1.05		***								
축산	3.92	1.05		**								
과수	3.87	1.03		**								
두류·서류	4.03	1.03		***								
임산물	3.95	0.86										
특용작물	3.74	1.07					**					
화훼	4.03	1.12		**								
기타	3.71	0.76										
전체	3.83	1.06										

주: *, **, ***는 각 $p \leq 0.10, 0.05, 0.01$ 을 의미.

자료: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경영주 성별로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소득파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³⁾

〈표 4-32〉 경영주 성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LSD 사후검정	
				남성	여성
남성	3.81	1.06	3.48 (0.062)		
여성	3.93	1.05		**	
전체	3.83	1.06			

주: *, **, ***는 각 $p \leq 0.10, 0.05, 0.01$ 을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파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⁴⁾

43) 경영주 성별 소득파악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0.04$, $p=0.841$ 로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 소득파악의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는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i^2 = 0.005$, $p=0.943$ 으로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3〉 사업자등록 여부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LSD 사후검정	
				예	아니오
예	3.93	1.06	6.82 (0.009)		
아니오	3.79	1.06		***	
전체	3.83	1.06			

주: *, **, ***는 각 $p \leq 0.10, 0.05, 0.01$ 임을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반면 연평균 매출액 규모별로는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소득파악의 필요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석된다.⁴⁵⁾

〈표 4-34〉 연평균 매출액 규모별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평균	표준 편차	F	LSD 사후검정				
				2천만 원 미만	2천만 ~ 3천만 원	3천만 ~ 5천만 원	5천만 ~ 1억 원	1억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3.81	1.02	0.77 (0.544)					
2천만 ~ 3천만 원	3.77	1.06						
3천만 ~ 5천만 원	3.84	1.00						
5천만 ~ 1억 원	3.91	1.06						
1억 원 이상	3.86	1.22						
전체	3.83	1.06						

주: *, **, ***는 각 $p \leq 0.10, 0.05, 0.01$ 임을 의미한다.

자료: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5) 연평균 매출액 규모별 소득파악의 필요성 정도에 대해서는 $\chi^2 = 13.38$, $p=0.010$ 으로 등분산성 가정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출액 규모별 분산을 조정하여 검정한 결과, $F=0.77$, $p=0.544$ 로 매출액 규모별로 소득파악의 필요성 정도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다는 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다.

2.1.2. 소득파악 가능성에 대한 농업인 인식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에게 관련 증빙을 바탕으로 매출과 농자재 매입, 임대료, 인건비를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였다. 매출과 비용 모두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대체로 가능하지 않다+전혀 가능하지 않다)은 현지통신원이 15% 미만, 청년창업농은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비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대체로 가능하다+대부분 가능하다)은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모두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매출과 비용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농업인들은 매출과 비용을 일정 수준 이상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출과 비용 관련 증빙으로 농업소득을 파악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로써 대략적인 소득파악이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친다. 정부에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 등 농업인이 경험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농업인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표 4-35〉 연령대별 매출액 및 비용 파악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농산물 매출액 파악							
전혀 가능하지 않다	9 (4.8)	11 (2.3)	5 (3.0)	9 (4.3)	17 (3.5)	8 (4.2)	59 (3.5)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7 (3.7)	34 (7.2)	18 (11.0)	17 (8.1)	52 (10.7)	26 (13.8)	154 (9.0)
보통이다	65 (34.4)	146 (31.1)	51 (31.1)	54 (25.6)	120 (24.7)	45 (23.8)	481 (28.1)
대체로 가능하다	67 (35.4)	168 (35.7)	54 (32.9)	96 (45.5)	231 (47.5)	84 (44.4)	700 (41.0)
대부분 가능하다 (90% 이상)	41 (21.7)	111 (23.6)	36 (22.0)	35 (16.6)	66 (13.6)	26 (13.8)	315 (18.4)
계	189 (100.0)	470 (100.0)	164 (100.0)	211 (100.0)	486 (100.0)	189 (100.0)	1,709 (100.0)

(계속)

구분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농업 생산비용 파악							
전혀 가능하지 않다	6 (3.2)	10 (2.1)	4 (2.4)	7 (3.3)	12 (2.5)	5 (2.6)	44 (2.6)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6 (3.2)	37 (7.9)	12 (7.3)	12 (5.7)	64 (13.2)	21 (11.1)	152 (8.9)
보통이다	65 (34.4)	143 (30.4)	53 (32.3)	57 (27.0)	125 (25.7)	53 (28.0)	496 (29.0)
대체로 가능하다	67 (35.4)	176 (37.4)	61 (37.2)	103 (48.8)	230 (47.3)	92 (48.7)	729 (42.7)
대부분 가능하다 (90% 이상)	45 (23.8)	104 (22.1)	34 (20.7)	32 (15.2)	55 (11.3)	18 (9.5)	288 (16.9)
계	189 (100.0)	470 (100.0)	164 (100.0)	211 (100.0)	486 (100.0)	189 (100.0)	1,709 (100.0)

주: 괄호 안은 연령대별로 매출액 파악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4-36〉 영농분야별 매출액 및 비용 파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논벼	채소	축산	과수	두류 서류	임산물	특용 작물	화훼	기타	계
농산물 매출액 파악										
전혀 가능하지 않다	16 (4.3)	12 (3.3)	5 (2.9)	18 (3.9)	1 (1.3)	1 (2.3)	6 (3.3)	0 (0.0)	0 (0.0)	59 (3.5)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42 (11.3)	19 (5.3)	13 (7.4)	38 (8.2)	9 (12.0)	4 (9.1)	26 (14.4)	3 (8.1)	0 (0.0)	154 (9.0)
보통이다	116 (31.3)	112 (31.2)	53 (30.3)	109 (23.6)	23 (30.7)	10 (22.7)	49 (27.2)	7 (18.9)	2 (28.6)	481 (28.1)
대체로 가능하다	153 (41.2)	146 (40.7)	69 (39.4)	203 (44.0)	26 (34.7)	20 (45.5)	63 (35.0)	16 (43.2)	4 (57.1)	700 (41.0)
대부분 가능하다 (90% 이상)	44 (11.9)	70 (19.5)	35 (20.0)	93 (20.2)	16 (21.3)	9 (20.5)	36 (20.0)	11 (29.7)	1 (14.3)	315 (18.4)
계	371 (100.0)	359 (100.0)	175 (100.0)	461 (100.0)	75 (100.0)	44 (100.0)	180 (100.0)	37 (100.0)	7 (100.0)	1,709 (100.0)
농업 생산비용 파악										
전혀 가능하지 않다	9 (2.4)	11 (3.1)	4 (2.3)	15 (3.3)	0 (0.0)	0 (0.0)	4 (2.2)	1 (2.7)	0 (0.0)	44 (2.6)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43 (11.6)	32 (8.9)	18 (10.3)	28 (6.1)	10 (13.3)	3 (6.8)	15 (8.3)	2 (5.4)	1 (14.3)	152 (8.9)

(계속)

구분	논벼	채소	축산	과수	두류 서류	임산물	특용 작물	화훼	기타	계
보통이다	108 (29.1)	104 (29.0)	59 (33.7)	123 (26.7)	20 (26.7)	13 (29.5)	59 (32.8)	8 (21.6)	2 (28.6)	496 (29.0)
대체로 가능하다	161 (43.4)	151 (42.1)	61 (34.9)	211 (45.8)	26 (34.7)	23 (52.3)	75 (41.7)	17 (45.9)	4 (57.1)	729 (42.7)
대부분 가능하다 (90% 이상)	50 (13.5)	61 (17.0)	33 (18.9)	84 (18.2)	19 (25.3)	5 (11.4)	27 (15.0)	9 (24.3)	0 (0.0)	288 (16.9)
계	371 (100.0)	359 (100.0)	175 (100.0)	461 (100.0)	75 (100.0)	44 (100.0)	180 (100.0)	37 (100.0)	7 (100.0)	1,709 (100.0)

주: 괄호 안은 영농분야별로 매출액 파악 가능성에 대한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소득신고 의향

2.2.1. 소득신고 의향과 장애요인

앞서 제시된 설문 결과는 소득파악의 여건 측면에서 소득신고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 외에도 농업인 스스로 소득신고를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느냐가 소득신고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이에 이 장에서는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과세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국세청 소득신고 의사를 설문하였으며 소득신고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농업인의 소득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면 이를 이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문하였다. 현지통신원은 긍정적 의견(매우 그렇다+그렇다)과 부정적 의견(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이 각각 29.9%와 38.0%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던 반면 청년창업농은 각 34.7%, 23.5%로 긍정 의견이 부정 의견을 앞질렀다.

〈표 4-37〉 국세청 농업소득신고 의향(세부담 미발생 가정)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112	11.1	94	13.4
그렇지 않다	270	26.9	71	10.1
보통이다	323	32.1	295	41.9
그렇다	270	26.9	190	27.0
매우 그렇다	30	3.0	54	7.7
계	1,005	100.0	70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일부 대농가는 세부담을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위해서 소득을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를 설문하였다. 그 결과, 긍정 의견이 현지통신원은 50.9%, 청년창업농은 45.1%로 증가하였다. 앞선 문항에서는 정부 지원이 강조되지 않았으나 이번 문항에서는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을 때 긍정 의견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농업인이 소득신고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늘어난다면 소득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4-38〉 국세청 농업소득신고 의향(세부담 발생 가정)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지 않다	6	1.0	11	2.0
그렇지 않다	35	5.6	25	4.6
보통이다	265	42.5	260	48.2
그렇다	282	45.3	181	33.6
매우 그렇다	35	5.6	62	11.5
계	623	100.0	539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위 설문에서 부정적 의사를 보인 주된 이유는 현지통신원의 경우, 소득신고 절차와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나 청년창업농은 세부담이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의 연령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현지통신원은 소득신고 절차와 방법을 숙지하기가 어렵
려운 반면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아 안정기에 들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로 두 집단 모두 소득신고를 해도 정부
지원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는데 이는 소득신고의 기대 편
익이 소득신고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39〉 소득신고 장애요인

구분	현지통신원(명)				청년창업농(명)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소득신고 절차와 방법이 어려워서	16	2	5	57	1	3	10	19
세부담이 걱정되어서	8	7	3	41	19	8	2	75
소득을 신고해도 정부 지원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9	9	3	48	15	11	2	69
내 소득파악이 쉽지 않아서	5	6	1	28	0	1	5	7
정부에 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싫어서	2	1	10	18	1	3	4	13
기타	1	0	0	3	0	0	0	0

주 1) 응답자 수는 현지통신원 41명, 청년창업농 36명임.

2) 계는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2. 소득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세부담에 대한 우려는 소득신고 의향을 낮출 수 있으나 과세가 전제되지 않는
다면 신고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소득파악 및 신고에 따르는 절차의 편의성
이 낮다면 신고 의향이 낮아지고 신고가 간편할수록 신고 의향이 높아질 수 있
다.⁴⁶⁾ 이러한 요소들은 소득신고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개인 특성, 소
득파악에 대한 인식, 경영 규모, 기초자료 수집 환경, 국세청 신고 업무 노출 정도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요소들이 소득신고 의사에 실제로

46) 이 연구의 [부록 1] 농업인 소득신고 유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소득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이 줄
어질수록 소득신고 유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분석 모형

모형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국세청 소득신고로 인해 납세를 해야 할 수도 있음에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겠는가’에 대한 응답이다. 이들 문항에 대한 선택지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하여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 긍정적인 답변으로 구성하고,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를 한 그룹으로 묶어 부정적인 답변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응답자에 따라 대답을 유보하는 경우에 이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통이다’라는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이 절에서는 종속변수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재구성하여 로짓 모형(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에 대한 요인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식 (1)의 로짓 모형을 설정한다.

$$(1) y_i^* = x_i\beta + u_i$$

여기에서 y_i^* 는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 x_i 는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 벡터를 의미한다. u_i 는 앞선 설명변수 벡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error term)을 나타낸다.

종속변수, 즉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부정적인 답변은 잠재변수를 활용하여 식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2) y_i = 1 \text{ if } y_i^* > 0$$

$$y_i = 0 \text{ if } y_i^* \leq 0$$

즉,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가 0보다 크면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관측 가능한 더미변수는 1, 잠재변수가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의미하는 관측 가능한 더미변수는 0이 된다.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설명변수하에서, 농업소득 파악 및 신고 의향을 나타내는 관측 불가능한 잠재변수를 나타내면 다음의 식 (3)과 같다.

$$(3) P(y_i = 1|x_i) = P(y_i^* > 0|x_i) = P(u_i > -x_i\beta) = F(x_i\beta)$$

여기서 오차항인 u_i 는 누적 분포(cumulative distribution)의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Maddala G.S., 1983, p.22). 이런 경우, $F(x_i\beta)$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4) F(x_i\beta) = \frac{1}{1 + \exp(-x_i\beta)}$$

로짓 모형의 추정을 위한 로그 우도(log-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다.

$$(5) \ln L = \sum_{i=1}^n [y_i \ln F(x_i\beta) + (1 - y_i) \ln (1 - F(x_i\beta))]$$

로그 우도 함수를 극대화시키는 계수를 추정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활용하여 로짓 모형을 추정한다.

나. 분석 자료

본 절에서는 로짓 분석을 위해 현지통신원 1,005명과 청년창업농 704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당초에는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설문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총 1,709명의 표본이 있었으나 종속변수인 국세청 소득 신고 의향을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는 1,184명이다.⁴⁷⁾

종속변수인 ‘국세청 소득신고로 인해 납세를 해야 할 수도 있음에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겠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약 47.0%가 국세청을 통한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4-40>.

설명변수로는 농가의 기본 사항과 경영 기록 및 소득파악 관련 의견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분석 표본의 연령대는 평균 3.66으로 평균적으로 만 40~49세 집단에 속한다. 남성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1%로 나타났고,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10%였다. 매출액 변수는 평균 2.55로 평균적으로 연 2천만 ~3천만 원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경영 규모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8%, 가구원이 농업 외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34%, 사업자등록을 한 응답자의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경영기록 및 소득파악 문항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89%가 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3.87점으로 ‘그렇다’에 가까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농업소득과 관련해 세무 신고서 작성, 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14%였다.

다. 분석 결과

로짓 모형 계수의 추정치는 설명변수의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를 직접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각 변수의 영향에 대한 정략적 크기를 해석하기 위해 각 추정치에 대한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제시하였다. 한계효과는 각 설명변수의 값을 평균으로 가정하고, 각 설명변수의 단위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특정한 값을 가질 확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한계효과를 통해 특정 설명변수가 한 단위 변화함에 따라 농업인의 국세청 소득신고 의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47) 분석을 위하여 표본을 분리하여 각각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통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0〉 순위 로짓 모형의 변수 기초 통계량

변수	변수 설명	평균	표준편차
국세청 소득신고	국세청 소득신고 의향(신고 의향 있음 = 1)	0.47	0.50
연령	만 30세 미만=1, 만 30~39세=2, 만 40~49세=3, 만 50~59세=4, 만 60~69세=5, 만 70세 이상=6	3.66	1.62
성별	남성 여부(남성=1)	0.81	0.39
품목	축산 종사 여부(종사 시=1)	0.10	0.30
매출액	2천만 원 미만=1, 2천만~3천만 원=2, 3천만~5천만 원=3, 5천만~1억 원=4, 1억 원 이상=5	2.55	1.49
농업경영 규모 확대	농업경영 규모 확대 의향(있으면=1)	0.48	0.50
농업 외 다른 일 종사	농업 외 다른 일 종사 여부(다른 일 종사하면=1)	0.34	0.47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여부(사업자등록 시=1)	0.33	0.47
경영장부 작성	경영장부 작성 여부(작성 시=1)	0.89	0.31
소득파악 필요성	매우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3.87	1.10
회계/세무 서비스 활용	회계/세무 서비스 활용 경험 (있으면=1)	0.14	0.34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모형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매출액, 경영 규모 확대 계획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한 인식, 회계 및 세무 서비스 활용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추정되었다.

매출액이 높을수록 소득신고에 대해 농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확률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농산물 매출액이 3천만~5천만 원인 농가는 2천만 원 미만의 농가에 비해 국세청을 통해 농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3.8% 낮다. 매출액이 5천만~1억 원인 농가는 2천만 원 미만인 농가에 비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9.5%가 낮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는 2천만 원 미만 농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확률이 16.6%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증가하는 세부담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경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7.8% 높게 추정되었다. 경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경영상태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소득신고 의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소득신고 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신고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8.5% 높게 나타났다.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은 이미 국세청에 사업자 현황 신고 또는 소득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신고에 대하여 거부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경영장부 작성 경험은 국세청을 통한 소득신고 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장부 작성 경험이 있는 농가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9.9% 높다. 경영장부를 작성하는 농업인은 소득신고를 위한 사전 작업을 쉽게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파악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농가는 매우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농가에 비해 국세청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26.1% 높게 나타났다. 소득파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농가는 매우 필요하지 않다는 농가에 비해 소득신고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19.3%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회계사나 세무사로부터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세무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은 소득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을 15.4%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및 세무 서비스 활용 경험을 통해 국세청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심리적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4-41〉 소득신고 의향에 관한 분석 결과

변수	추정치	한계효과
연령: 만 30~39세	0.151 (0.2416)	0.037 (0.0600)
연령: 만 40~49세	-0.067 (0.2961)	-0.017 (0.0736)
연령: 만 50~59세	0.146 (0.2920)	0.036 (0.0725)
연령: 만 60~69세	0.115 (0.2700)	0.028 (0.0671)
연령: 만 70세 이상	0.124 (0.3153)	0.031 (0.0783)
성별: 남성	-0.071 (0.1669)	-0.018 (0.0415)
품목: 축산	-0.323 (0.2232)	-0.080 (0.0554)
매출액: 2천만~3천만 원	-0.153 (0.1948)	-0.038 (0.0484)

(계속)

변수	추정치	한계효과
매출액: 3천만~5천만 원	-0.554*** (0.1911)	-0.138*** (0.0475)
매출액: 5천만 원~1억 원	-0.785*** (0.1960)	-0.195*** (0.0487)
매출액: 1억 원 이상	-0.666*** (0.2164)	-0.166*** (0.0538)
농업경영 규모 확대	0.316* (0.1690)	0.078* (0.0420)
농업 외 다른 일 종사	0.065 (0.1399)	0.016 (0.0347)
사업자등록	0.341** (0.1415)	0.085** (0.0352)
경영장부 작성	0.397* (0.2115)	0.099* (0.0525)
소득파악 필요성: 그렇지 않다	-0.933** (0.4222)	-0.232** (0.1048)
소득파악 필요성: 보통이다	-0.751** (0.3200)	-0.186** (0.0795)
소득파악 필요성: 그렇다	0.779*** (0.2859)	0.193*** (0.0710)
소득파악 필요성: 매우 그렇다	1.051*** (0.2895)	0.261*** (0.0719)
회계/세무 서비스 활용	0.621*** (0.2029)	0.154*** (0.0504)

주 1) '***'은 $p < 0.01$, '**' $p < 0.05$, '*'은 $p < 0.1$ 의 통계적 유의수준을 의미한다.

2) 괄호 안은 표준오차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소득신고 시 필요한 지원 영역

소득파악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 기록이 필요한데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 중 영농 관련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142명(<표 4-20> 참조)에게 경영장부 작성 관련 지원 시 장부작성 의사를 설문한 결과, 현지통신원의 67.7%, 청년창업농의 91.9%가 외부 지원이 있을 경우 장부작성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소득파악에 있어서 외부 지원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농업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다음과 같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은 공통적으로 농산물 매출 및 비용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고, 다음으로 경영장부 작성, 신고서식 작성, 신고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청년창업농은 농산물 매출 및 비용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많이 하

였고, 현지통신원 사이에서는 신고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4-42〉 소득파악/신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 영역

구분	현지통신원		청년창업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농산물 매출 및 비용 관련 정보 수집	378	37.6	314	44.6
경영장부 작성	265	26.4	182	25.9
신고서식 작성	173	17.2	109	15.5
신고서 제출 및 확인	171	17.0	89	12.6
필요없음	10	1.0	7	1.0
모름/무응답	3	0.3	1	0.1
기타	5	0.5	2	0.3
계	1,005	100.0	704	100.0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각 영역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써 현지통신원은 농민 단체나 농협 등을 통해 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기록 및 인력 지원, 세무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비용 지원, 회계 실무 및 이론 교육이 뒤를 이었다.

청년창업농은 현지통신원과 달리 기록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농민 단체, 농협 등을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세무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비용 지원 순이다. 청년창업농은 현지통신원에 비해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보다는 소득에 관한 기록 및 지원 그 자체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통신원과 청년창업농 간에 지원 수요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현지통신원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비해 연령이 높고 관련 교육 경험, 서비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년창업농 사이에서 세무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비용 지원과 세무사 및 회계사 등을 통한 자문 및 상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은 세무사 및 회계사 등 대리인을 통해 소득신고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4-43〉 소득파악/신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의 종류

구분	현지통신원(명)				청년창업농(명)			
	1순위	2순위	3순위	계	1순위	2순위	3순위	계
기록/인력 지원	227	119	73	992	200	47	56	750
회계 실무/이론 교육	124	104	63	643	99	71	42	481
회계 프로그램 교육	65	106	60	467	69	90	58	445
세무 관련 상담 및 서비스 비용 지원	109	130	139	726	118	119	97	689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한 자문 및 상담 제공	39	88	82	375	73	119	86	543
농민 단체, 농협 등을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419	110	130	1607	135	92	124	713
필요없음	6	0	0	18	4	0	0	12
모름/무응답	3	0	0	9	3	0	0	9
기타	13	0	0	39	3	0	1	10

주 1) 계는 1순위에 3.0, 2순위에 2.0, 3순위에 1.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합한 값임.

2) 총 응답자 수는 현지통신원 1,005명, 청년창업농 704명임.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4. 시사점

이 연구는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어렵게 했던 환경요인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소득파악의 가능성을 가늠코자 하였다. 농업인과 농식품 관계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등 비용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장부기장을 통해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농산물 판매와 농약 등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농업인이 증빙자료를 발급받거나 사후 요청 시 확인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상품 거래 시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거래 내역이 전산화되면서 농업분야에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거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⁴⁸⁾ 또한

48) 정부는 세원양성화를 위하여 1999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2005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발급액은 2004년 368조 원에서 2021년 886.2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3), ‘신용카드 이용실적’ 검색일: 2022. 7. 20.)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2006년 18.6조 원에서 2020년 123조로 증가하였다(국세청, 2007; 국세청, 2021a).

농지 임대차의 경우, 여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하는 사례가 있으나 과거에 비해 서면 계약이 확대되었고 2022년 시행되는 농지 임대차 신고제하에서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차 계약의 서면계약이 완전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 거래 및 농지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즉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은 주로 임시 노동력을 고용하는데, 이때 직접 고용보다는 인력지원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농작업을 외부에 위탁하는 농업인도 일부 있었는데 이들도 관련 증빙 서류 발급이 미미하고 대금 결제도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농산물 판매와 농자재 구입, 농지 임대차 관련 금액 및 수량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하지만 외부 인건비에 대한 비용 파악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면 인건비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 확보 여건을 살펴본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면 현 상황에서도 대략적인 소득파악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국세청 소득신고 시, 소득추계는 매출자료만 확보된다면 비용은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처럼 매출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볼 때 현재의 매출파악 여건은 소득추계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생산비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판매기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다 정확한 소득 계산은 쉽지 않다. 특히 인건비의 증빙을 위한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아 고용 규모가 큰 농가는 소득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생산비 증빙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소득파악에는 증빙자료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장부의 작성 여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장부작성이 농업인에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으며 높은 연령일수록 장부작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회계 프로그램의 이해를 높이고 작성법을 익히는 등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인력 및 서비스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농업인이 농업소득을 신고할 유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농업소득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농업인도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면접조사에 응했던 농업인 중 일부는 소득파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소득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소득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⁴⁹⁾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는 여전히 상당수의 농업인이 소득신고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부정적인 의사를 가진 사람만큼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 농업인도 존재한다. 소득신고로 얻을 수 있는 기대편익이 높은 농업인은 소득신고에 긍정적이지만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하는 농업인은 소득신고에 부정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소득신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높을수록 소득신고 의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그 예시이다.

다만 소득신고가 아닌 소득파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있다면 수행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소득파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종합하면, 농업계 내에서도 소득신고에 대해서 입장과 상황에 따라 의견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신고와 관련된 내부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소득신고를 통해 농업인이 누릴 수 있는 편익과 장애요인, 이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제도 변화에 대응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9)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사무국에서 농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특위 활동자문을 위한 간담회(2022년 6월 13일~7월 1일)에서는 농업분야 소득신고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부자료).

또한 설문 결과는 소득신고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소득신고의 도입 및 확대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한 정신적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 농업인이 더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면 농업소득 신고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신고 절차에 따른 부담 뿐만 아니라 신고로 나타날 수 있는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제5장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외국의 농업소득신고 현황

국내에서는 농업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외국에서는 농업분야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업인이 장부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프랑스, 일본, 영국 사례를 통해 농업인이 소득신고를 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프랑스 농업소득신고

1.1. 농업소득 과세체계

프랑스의 농업소득은 급여소득, 연금소득, 자산소득,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구간과 세율은 <표 5-1>과 같다. 제시된 과세구간과 세율에 따라 농업인은 농산물 생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지는데, 이때 농업수입금액 및 비용은 현금주의(cash basis)에 입각해 계상된다.

〈표 5-1〉 프랑스 소득세율(2022년 기준)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1만 84유로 이하	0%
1만 84~2만 5,710유로 이하	11%
2만 5,711~7만 3,516유로 이하	30%
7만 3,517~15만 8,122유로 이하	41%
15만 8,122 유로 초과	45%

자료: République Française(2021, p.17). Évaluations de Voies et moyens(방법과 수단의 평가).

농산물 생산자는 세무 당국이 요구할 때 농업소득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영수증, 농업생산활동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활동 일지가 복식부기에 의해 작성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출고 내역을 기입하면 된다. 세무조사의 목적이 아니라면 국세청이 증빙 서류 혹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서면문화가 정착되어 증빙 서류, 영수증 등 서류를 일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1.2. 농업소득신고 방법의 변천

1.2.1. 농업소득 과세 방법(2015년 이전)

프랑스는 1914년 소득세법을 제정하면서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토지의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1948년에는 농업활동별 특징을 고려하여 카테고리를 정하고 경지 규모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였다. 이후 1968년에 농업분야 부가가치세가 신설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정착되자 1971년부터는 실제소득에 기반하여 과세하였다.

이후부터 2014년까지 프랑스 정부는 농업소득에 대해 정액과세(le forfait), 간소화한 실제기준과세(le réel simplifié), 일반 실제기준과세(le réel normal)의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를 부과했다. 농업소득의 정액과세에 대한 근거는 조세일반법

제64조이며 농업소득 정액은 농업직업 대표인과 과세행정 대표인으로 구성된 도 위원회(la commission départementale)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실제기준세제(le régime réel)하에서는, 농업소득이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업 및 산업 소득(les bénéfices industrielles et commerciaux: BIC)으로 간주되어 일반 상업 및 산업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된다.

농업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연도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이 7만 6,300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과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 과세 방식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다. 과세표준을 납세자 개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 담당자도 참여하는 도 지역 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액과세 방식하의 과세표준 결정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첫 번째 과정은 공동단계로서, 도 혹은 지역회의에서 평균계산표와 각 농업활동의 고유 성격 및 경작 재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액농업소득을 계산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결정한다. 두 번째 과정은 개인 단계인데 농업인 자신이 과세가 부과될 표준(base d'imposition)을 정하는 것이다.

정액농업소득은 실제 농업활동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업활동 카테고리⁵⁰⁾로 계산한 소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농업활동을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하고, 한 해 동안 발생한 농산물 가치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차감하여 정액농업소득을 구한다. 프랑스 과세당국은 이러한 계산을 근거로 농업활동별 평균 소득을 정하는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하여 가축이나 수확물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정된 소득을 적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과세연도 이전 두 해 동안의 평균 농업소득이 7만 6,3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기준과세(le régime réel)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과세 방식은 또 평균 농업소득 35만 유로를 기준으로 간소화세제(le régime réel simplifié)와 일반세제(le

50) 위의 농업활동소득의 정의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régime réel normal)로 나뉜다. 재고평가기준을 제외한 두 방식에서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은 같다. 다만, 간소화세제의 경우 회계의무규정과 신고의무규정(les obligations déclaratives et comptables)이 일반세제보다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5-2〉 프랑스의 과세 카테고리

과세제도		과세방식별 적용 기준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 소득)
정액과세		7만 6,300유로 이하
실제소득과세	간편과세	7만 6,300~35만 유로 이하
	정상과세	35만 유로 초과

자료: 임소영 외(2016, p.62).

1.2.2. 농업소득 과세 방법(2015년 이후)-소규모 농업소득과세 도입

프랑스는 2015년 ‘재정법’을 개정하여 1949년부터 65년 이상 실시되어온 단위 면적(ha)당 생산량과 생산 품목 분류에 기반하여 과세하던 추계과세를 폐지하고,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제도를 신설하였다.⁵¹⁾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는 농업생산자의 과거 3개년 평균 매출(세금 제외)이 8만 5,800유로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하다(2021년 기준). 농업인의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매출액에서 매출액의 87%를 비용으로 간주하고 이를 공제하여 산출하며 최소 공제 금액은 305유로이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 매출 소득은 3년마다 재평가된다.

소규모 농업소득과세 도입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소득추계에 소요되는 국가 지출 및 개인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7만 6,300유로 이하인 농업소득에는 추계과세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규모가 작은 농업소득의 경우에는 추계과세 기준 금액이 8만 2,200유로(2016년 기준)로 상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더 많은 농산물 생산자가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를 새롭게 적용 받게 되었다.

51) 소규모 농업소득과세가 실시되기는 하나 그 시행이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소득 계산 방법 변화로 인해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투명성은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소규모 농업소득공제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액과세하에서는 회계장부 작성 등의 의무가 없었으나, 농업소득이 소규모인 경우 회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지는 않더라도, 간소화된 회계장부의 작성은 의무화되었다. 회계장부를 기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므로 회계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 농업인의 불만은 크지 않다. 이에 프랑스 농업노동조합(les syndicats agricoles: FNSEA, JA, confédération paysanne, Modef, Coordination rurale)도 정부의 세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으나 전제인 소규모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다.

〈표 5-3〉 프랑스의 정액소득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비교

구분	소규모 소득과세	정액과세
주요사항	• 생산수익 계산 후 정해진 비율(87%)을 기준으로 비용공제	• 생산수익(bénéfices) 계산이 필요 없음 • 정액제 사용
세제적용 기준	• 소득평균 3년 동안 82,200유로 이하(세금 제외) * GAEC: 82,200유로 이하 소득×조합원 수	• 소득 평균이 세금을 포함한 76,300유로 이하 * GAEC: 76,300유로 이하×조합원 수 • 수익활동의 전체가 다 추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시에만 적용 가능
농업소득(BA) 계산	• 농업소득=전체소득(les recettes)×13%	• 농업소득=정액(le forfait)×헥타르당 단위
세제적용 신청시기	• 농업활동 개시 초반	• 농업활동 개시 초반
장점	• 실제 현금화한 소득 대비 낮은 과세 금액 • EARL 공동 사업자도 수혜 가능 • 공인 회계사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음 (그러나 회계장부는 기입하여야 함)	• 회계의 의무 없음 • 실제 현금화한 소득에 비교했을 때 유리
단점	• 간소화된 회계장부 기록 •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 • 소득이 많을 경우 불리(소득 7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회분담금 500~600유로 상승)	•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 • 소득금액이 아주 적을 경우 불리함.

자료: 임소영 외(2016, p.71).

2. 일본 농업소득신고

2.1. 농업소득 신고방식

일본에서는 소득세를 1887년에 도입하였으며 이때부터 농업소득을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등과 합쳐서 종합과세하고 있다. 일본 농업인은 원칙적으로 농업소득을 신고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농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에는 아래 <표 5-4>의 세율이 적용된다.

<표 5-4> 일본 소득세율

과세표준(a)	세율(b)	공제액(c)
195만 엔 이하	5%	0엔
330만 엔 이하	10%	97,500엔
695만 엔 이하	20%	427,500엔
900만 엔 이하	23%	636,000엔
1,800만 엔 이하	33%	1,536,000엔
4,000만 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 엔 초과	45%	4,796,000엔

주: 소득세액=과세표준(a)×세율(b)-공제액(c).

자료: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pdf/incometax_2021/01.pdf/). 검색일: 2022. 8. 1.

농업소득의 신고는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하여 이루어지며 수입은 판매금액, 가사소비·사업소비, 잡수입을 포함한다. 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합계이며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일본의 농업소득신고 시 인정 경비

항목	내용
고용비	자가노입(가족이 노동한 분) 이외의 상시 또는 임시 노임
임차료	농지 임차료, 농지 이외의 토지·건물, 농기구 임차료, 농협에 지불하는 시설 임차료 등 시설이나 기구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감가상각비	자산으로 포함되는 농기구나 젖소 등의 가액 중에서 당해 상각분
이자할인료	농기구 구입자금 등 농업용 차입금의 이자
조세공과	농지 등의 고정자산세, 농업용 기구의 경자동차세, 농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수리비, 농협부과금 등
종묘비	종자나 묘목 구입비용
소축비(素畜費)	송아지, 자돈 등의 구입비용, 교배비용
비료비·사료비	비료 및 사료 구입비용
농구비	구입가격이 10만 엔 미만 또는 사용가능기간이 1년 미만의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농기구 구입비용
농약위생비	농약대, 가축약대, 공동방제비 등
제재료비	비닐, 노끈 등 재료 관련 비용
동력광열비	하우스 온도관리, 농기구 연료로 사용한 수도광열비나 등유대 등
직업용의료비	작업복이나 장화 등의 구입비용
농작물보험 보험료	해충이나 조수 방제대 등, 농작물보험 보험료
포장운임수수료	출하 시의 포장비용, 운임 등
토양개량비	토양개량사업 비용
위탁비용	작업 위탁비용, 방제 위탁비용 등

자료: 일본 MoneyForward 홈페이지(https://biz.moneyforward.com/tax_return). 검색일: 2022.8. 23.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의 하나로서 청색신고로 확정신고가 가능하다. 청색신고를 위해서는 ‘소득세 청색신고 승인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청색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기한은 신고 연도의 3월 15일까지며,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적으로 백색신고 대상이 된다.

농업소득으로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정규 부기’(복식부기) 원칙에 따르고,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장부 기재가 필요하다. 또한 기장은 복식부기 기장이 요건이다.

10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는 경우는 간이기장의 기입이 인정된다. 농업소득자의 간이기장에 필요한 장부는 현금출납장, 매도장·매입장, 고정자산대

장, 농산물수불장이다. 현금출납장이나 매도장 등은 다른 소득에도 있지만, 농산물수불장은 농업소득의 경우 특별한 장부다. 기재 시에는 일부 간략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5-6〉 일본 청색신고의 간이기장 장부

장부	기재 내용
현금출납장	• 현금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것
매도장·매입장	• 매도나 구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경비장	• 경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고정자산대장	•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차량 등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
농산물수불장	• 농산물을 수확한 때의 정보에 관한 내용이나 판매, 자가소비가 있었던 경우의 내용을 기재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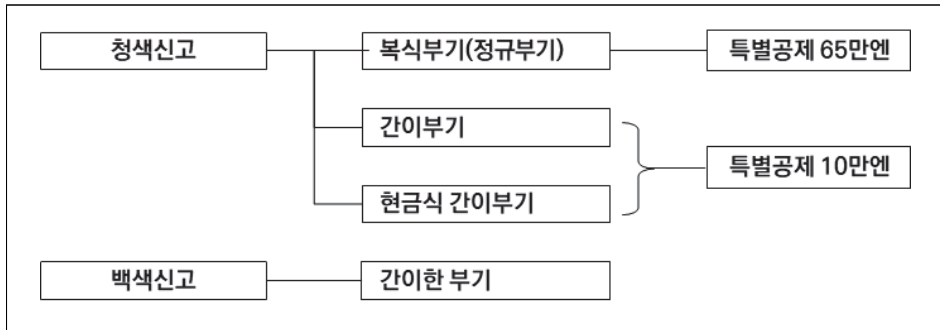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세청(2022b).

간이기장 시, 곡류 이외에는 수확과 관련된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곡류도 수량만의 기록이 인정된다. 또한 곡류 이외의 판매는 수량이나 단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금액만의 기록이 가능하다. 또한 가정 등에서 소비한 경우는 연말에 일괄해서 기록할 수 있다.

청색신고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고, 백색신고는 수익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에는 통상의 확정신고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는 수익내역서는 ‘농업소득용’으로 특화한 것이 있다.

농업소득은 다른 사업소득과 기재 수순이 대부분 유사하다. 단지 수확 시기나 발육, 성숙기까지의 누적기간 등 농업소득 고유의 특징이 있다. 그리하여 수확이나 판매 등에 변화가 있을 때는 자료를 보존하거나 금액이나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일본 국세청, 2022a).

〈그림 5-1〉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의 기장방법 차이



자료: 저자 작성.

〈표 5-7〉 일본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방식 비교

구분	청색신고			백색신고
	① 복식부기	② 간이부기	③ 현금식 간이부기	④ 간이한 부기
기장방법	발생주의		현금주의	간이한 발생주의
	매일, 거래별로 소정의 장부에 기장			매일, 소정의 장부에 기장 (거래를 통합한 기장 가능)
소득조건	없음		전전년도 소득이 300만엔 이하	없음
특별공제	65만엔*	10만엔		-

주: *2020년부터 65만 엔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e-Tax(인터넷상에서 국세에 관한 신고 등의 절차를 행하는 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 또는 전자장부보존(장부를 전자데이터로 보존하는 제도)을 행할 필요가 있다.

자료: 일본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2021),

2.2. 소득계산 방법의 변천

일본에서 농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 수입과 필요경비 모두 추계하는 것에서, 필요경비만 추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가, 수입과 필요경비 모두 추계하는 것으로 변화해 왔다.

일본은 농업인의 기장 능력 부족을 고려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 표준에 의한 과세를 실시하였다. 세무 당국은 매년 조사를 하여 경지, 가축의 단위당 표준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단위당 표준소득금액에 납세자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를 적용

하여, 표준에 의한 과세금액을 결정한다.

기준경비율과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병행하는 것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회계장부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업자를 고려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다. 청색신고자의 과거 3년 치 소득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4개 업종(논농업, 밭농업, 과수, 시설작물)별 기준경비율이 결정된다.

일본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 수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다가 2006년부터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의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보다 실제소득에 가깝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과 지출에 기반한 소득 신고는 수입의 규모에 기반하여 점차 확대되었다. 연 총수입이 400만 엔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수입 규모가 큰 신고자는 2002년부터 수지계산 방식으로 신고를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수입이 작은 농업인은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방식을 2006년도부터 적용하여 소득신고를 하였다.

〈표 5-8〉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총수입금액 \ 각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400만 엔 이상	기준 경비율	수지계산				
300만 엔 이상						
400만 엔 이하						
2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하						
200만 엔 미만						

자료: 안종석 외(2010, p.35).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임소영 외(재인용)(2016, p.82).

3. 영국 농업소득신고⁵²⁾

3.1. 농업부문에 대한 과세의 특징⁵³⁾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해 과세를 하고, 지방세 측면에서는 거의 비과세되고 있다.

과세 목적상 농업소득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소득과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농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⁵⁴⁾은 농장 이윤에 대해 정상적인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농업부문에만 적용되는 특례제도(concessions specific to agriculture)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 간 농업 사업의 이전과 지속을 장려하기 위해 상속 자본 과세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준다. 또한 부가가치세 정률과세체제도 농업 부문에 대한 특혜이다.

한편 농업부문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부문에서 대부분의 혜택을 가져가는 ‘소득균분제(income averaging scheme)’도 있다. 또한 집약적으로 원예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유리 온실을 난방하는 데 사용되는 증유에 대한 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 모든 농업인은 농장 내 사용을 위한 디젤 연료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감면받는다.

52) 해당 절은 홍익대학교 박명호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53) OECD. (2020). Taxation in Agriculture.

54)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농업법인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농업경영자를 의미함. 한편 대부분의 농장은 소유자-운영자 사업체로 운영되지만 일반적으로 세금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회사로 운영되는 다수의 농장 사업체가 있다(“While the majority of farms are run as owner-operator businesses, there are a number of farm businesses arranged as companies, usually with tax minimization in mind.”, OECD(2020).

3.2. 영국 소득과세(income taxation)의 기본체계⁵⁵⁾⁵⁶⁾

농업인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보여주는 일련의 계정(a set of accounts)을 생성해야 한다. 농장을 통해 번 이윤은 농장의 세법상 사업체 유형에 의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농장을 경영할 때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세법상 사업체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다른 가구원과의 파트너십 체결(파트너), 농장을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영농형태는 개인사업자로서의 농업인(the sole-trade farmer)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한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 있어서 기본적인 농업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다.

당해연도 4월 6일부터 다음 연도 4월 5일까지가 하나의 과세연도로 구성된다. 신고 시 매년 10월 31일까지 직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온라인 신고 시 매년 1월 31일까지 직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세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세액은 벌어들인 이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영국에서 소득세는 조정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조정순소득이란 기본공제액(personal allowances) 차감 전 총과세 대상 소득에서 특정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정 소득공제 항목이란 사업손실 공제, 기부금 공제, 연금기여금 공제 등을 의미한다.

영국의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체제로, 지역에 따라 과세구간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본공제액에 대해서는 0%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세

55) Butler(2013)을 기반으로 하되 최신 세율 정보 등을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56) The Accountancy 홈페이지(<https://www.theaccountancy.co.uk/tax>). 검색일: 2022. 7. 25.

를 부과하며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를 들면, 웨일스 농업인이 20만 파운드의 소득을 얻었다면, 기본공제액을 제외한 첫 3만 7,700파운드에 대하여 기본세율인 20% 부과, 다음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9만 9,730파운드에 대해서는 고세율인 40% 부과, 나머지 소득인 5만 파운드에 대하여 초과세율인 45%가 부과되어, 총 6만 9,932파운드를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표 5-9〉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소득세율 체계

세율	2022/23 과세구간	2021/22 과세구간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0%	1만 2,570파운드 이하	1만 2,570파운드 이하
기본세율(basic rate): 20%	1만 2,571~5만 270파운드 이하	1만 2,571~5만 270파운드 이하
고세율(higher rate): 40%	5만 271~15만 파운드 이하	5만 271~15만 파운드 이하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	15만 파운드 초과	15만 파운드 초과

주: 조정순소득이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매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기본공제가 감소하여 조정순소득이 12만 5,140파운드 이상이면 기본공제액은 0이 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 2022. 10. 6.

〈표 5-10〉 스코틀랜드 소득세율 체계

세율	2022/23 과세구간	2021/22 과세구간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0%	1만 2,570파운드 이하	1만 2,570파운드 이하
시초세율(starter rate): 19%	1만 2,571~1만 4,732파운드 이하	1만 2,571~1만 4,667파운드 이하
기본세율(basic rate): 20%	1만 4,733~2만 5,688파운드 이하	1만 4,668~2만 5,296파운드 이하
중간세율(intermediate rate): 21%	2만 5,689~4만 3,662파운드 이하	2만 5,297~4만 3,662파운드 이하
고세율(higher rate): 41%	4만 3,663~15만 파운드 이하	4만 3,663~15만 파운드 이하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6%	15만 파운드 초과	15만 파운드 초과

주: 조정순소득이 1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경우 매 2파운드당 1파운드씩 기본공제가 감소하여 조정순소득이 12만 5,140파운드 이상이면 기본공제액은 0이 됨.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 2022. 10. 6.

3.3. 자영업자의 소득신고

3.3.1. 자영업자의 신고 관련 의무⁵⁷⁾

영국은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비즈니스 파트너십 하의 파트너(a partner in a business partnership)로 등록한 자영업자라면 세금 신고(tax return)를 위해서 사업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기록 의무가 있다. 영국은 소득원천별로 비과세 항목 및 필요경비를 제한 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 소득세를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체계를 운영하므로 사업소득을 제외한 다른 개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록 의무도 있다.

자영업자 중 첫째, 해당 과세기간(당해연도 4월 6일 ~ 다음 연도 4월 5일) 동안에 자영업(self-employment)으로부터 1,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둘째, 비과세 아동 수당(tax-free childcare) 등과 같은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자영업자(self-employed)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거나, 셋째,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납부 시 Class 2 지위⁵⁸⁾를 가지려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를 위해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등록해야 한다.⁵⁹⁾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 장부기입 의무: 판매 및 수입, VAT 기록(VAT 납부 대상자에 한함),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 기록(고용주에 한함), 개인소득, 보조금(자영업 소득 지원제도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⁶⁰⁾ 2) 소득세 자진신고(self assessment tax return) 의무, 3) 소득세 및 국가보

57)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58) 영국의 국가보험(national insurance) 납부 체계는 고용상태와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데, 근로소득자 및 고용주는 Class 1의 지위가 부여되며, 자영업자는 수익(profits)에 따라서 Class 2(£6,725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 Class 3(voluntary contributions, £6,725 미만의 수익을 가졌어도 원하는 경우 Class 3의 지위를 선택할 수 있음), 또는 Class 4(£11,909 이상의 수익이 있는 경우)의 지위가 부여되었다(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national-insurance-classes>)). 검색일: 2022. 8. 24.).

5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t-up-sole-trader>). 검색일: 2022. 8. 24.

60)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what-records-to-keep>). 검색일: 2022. 8. 29.

협료 납부(tax on your profits and Class 2 and Class 4 National Insurance) 의무, 4) 매출(turnover)이 8만 5,000파운드 이상인 경우 부가가치세(VAT) 납부 의무 등을 가진다.

원칙상 1,000파운드 이하의 사업소득자에 한해서는 세금 자진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점⁶¹⁾과 세금 신고 시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장부 작성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⁶²⁾을 감안해 볼 때, 과세 의무가 없는 경우(면세점 이하, 즉 1,000파운드 이하의 사업소득)에는 장부작성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득이 1,000파운드 이하라고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5-11〉 개인사업자의 과세 여부 및 장부기입 의무

구분	과세 여부	장부기입	회계 방법
사업소득 1,000파운드 초과	과세	의무 있음	선택권 있음
사업소득 1,000파운드 이하	비과세	의무 없음	-

자료: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 <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파트너십하에서 세금 신고(tax return)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지명된(nominated) 파트너라면, 개인소득신고뿐만 아니라 파트너십에 대한 장부 기록 의무도 가진다. 참고로, 유한회사(limited company)의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장부 기록에 있어서 개인사업자(sole trader)나 비즈니스 파트너십하의 파트너(a partner in a business partnership)와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⁶³⁾

61)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 검색일: 2022. 8. 29.

62)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63) 영국의 세금 당국(HM Revenue and Customs: HMRC)은 유한회사(limited company)를 세금 부과 시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하지 않음(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working-for-yourself?step-by-step-nav=01ff8dbd-886a-4dbb-872c-d2092b31b2cf>). 검색일: 2022. 8. 29.).

3.3.2. 회계 방법⁶⁴⁾

영국의 경우 자영업자는 발생주의 회계(traditional accounting)와 현금주의 회계(cash basis accounting) 중 하나의 회계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보통의 사업체는 발생주의 회계를 사용하지만, 소득이 15만 파운드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는 대부분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한다.

발생주의 회계(traditional accounting)란 실제의 현금 흐름과 관계없이 송장을 청구했거나 청구된 날짜를 기준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데⁶⁵⁾ 반해 현금주의 회계(cash basis accounting)하에서는 실제 현금을 수령했거나 지불했을 때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그 일자를 기준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것을 말한다.

3.3.3. 장부 작성 및 보관⁶⁶⁾⁶⁷⁾

자영업자는 장부를 기록할 때 반드시 1) 전체 판매액 및 수입액(all sales and income), 2) 발생한 사업 비용(all business expenses), 3) VAT 기록(VAT 납부 대상자에 한함), 4)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pay as your earn: PAYE) 기록(고용주에 한함), 5)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여타의 개인소득, 6) 보조금(자영업 소득 지원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를 청구한 경우에 한함) 등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한 장부는 세금 신고(tax return)를 할 때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1) 세금 신고(tax return)를 위해 사업 수익과 손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2) 세금 당국

64)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65) 예를 들어, 사업자가 2021년 3월 28일에 송장을 청구한 경우, 다음연도 과세기간(2021. 4. 6.~2022. 4. 5.)까지 매출에 대한 현금을 받지 못했어도, 2020~2021 과세연도(2020. 4. 6.~2021. 4. 5.) 세금 신고를 위해서 해당 거래가 기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66)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what-records-to-keep>). 검색일: 2022. 8. 29.

67)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how-long-to-keep-your-records>). 검색일: 2022. 8. 29.

(HM Revenue and Customs: HMRC)으로부터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입한 장부를 보관해야 한다.

장부뿐만 아니라 상품 및 재고와 관련된 영수증(all receipts for goods and stock), 은행 거래명세서(bank statement), 수표 영수증(chèquebook stubs), 판매 송장(sales invoices), 현금 거래 증빙(till rolls)과 은행 전표(bank slips) 등과 같은 증빙 또한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발생주의 회계(traditional accounting)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세금 신고(tax return)를 위해 상기의 증빙과 함께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what you're owed but have not received yet), 외상매입금 및 지급 어음 등의 미지급된 채무(what you've committed to spend but have not paid out yet), 기말 재고자산 가치(the value of stock and work in progress at the end of your accounting period), 연말 은행 잔고(your year end bank balances), 투자 내역(how much you've invested in the business in the year), 현금 사용 내역(how much money you've taken out for your own use)의 항목도 추가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적정 세금 신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금당국인 HMRC(Her Majesty's Revenue and Customs)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는 해당 과세연도(당해 연도 4월 6일 ~ 다음 연도 4월 5일)의 마감일인 1월 31일 이후로 최소 5년 동안 장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0/21 세금 신고를 2022년 1월 31일까지 제출했다면, 적어도 2027년 1월 말까지 장부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신고 마감일보다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세금 신고를 한 경우에는, 세금을 신고한 후부터 15개월 동안만 장부를 보관하면 된다.

장부 기록이 분실·도난·파손된 경우에는 가능한 실제 수치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실제 수치(actual figures)를 복구하기 어려워 추정된 금액(estimated figures)을 사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경우나 실제 수치(actual figures)에 대한 정보 수집을 기다리던 중에 임시로 금액을 추정한 잠정적인 금액(provisional figures)을 사용한 경우(실제 증빙 제시가 가능할 때,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함)에는 세금을 신고할 때 세금 당국에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시사점

농업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외국에서는 농업소득을 여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또한 소득신고 시 장부기장과 추계방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간편하게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에서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옮겨가도록 하는 것이 각국의 소득신고 정책이다. 장부를 작성하고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추가하거나 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매우 단순한 형태의 소득추계를 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단계적으로 복식부기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단순한 형태의 기장 또는 추계방식을 적용하여 신고에 따르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농업인의 소득파악 방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 이는 국내 농업소득 파악에 있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경지면적이나 재배품목 등 기초자료를 가지고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장부기장 방식을 확산해 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대규모 농업경영체나 청년농, 법인의 경우 이미 장부에 의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같은 농업인이라도 소득정보의 획득과 보관, 기록 분석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반 농업인을 기준으로 추계방식의 소득파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게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아동 수당(tax-free childcare) 등과 같은 정부로부터의 시혜적 성격의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농업소득세 부과를 도입할 때, 소득세 신고를 기반으로 보조금 등의 지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6장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정책과제

1. 농업분야 세제 개편

소득파악의 목적은 2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소득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국세청 소득신고와 신고자료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납세 의무가 부여되어야 하므로 과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과세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납세 의무가 없다면 농업인이 소득신고에 드는 불편함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부족하고, 과세당국의 관점에서는 세금 징수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과도한 행정부담이 될 수 있다. 납세는 소득신고의 목적인 동시에 소득신고의 동기이기도 하다.

농업분야 과세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사업자 등록과 그에 따른 매출 및 비용 관련 증빙 서류의 발급과도 연관이 있다.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증빙자료가 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 지급 관련 증빙 서류를 발급하고 기록할 근거가 생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과세가 없이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는 있으나 납세의무 없이 사업자 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셋째, 농업인이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과세가 없다면 신고자료의 신뢰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현 세제하에서 농업인도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을 신고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현황 신고를 매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 현황 신고서에는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와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에 입력된 매출 및 매입 기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의 매출 및 매입 자료는 실제 지출 및 수입에 맞게 작성되며 규모가 큰 사업자는 세무사 등 제3자에게 신고를 대행하도록 한다. 그러나 축산을 제외한 농업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농업인이 제출한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되거나 검증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농업소득에 과세가 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농업인의 사업장 현황 신고자료를 이용한 수입파악도 쉽지 않다.⁶⁸⁾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인 미가공 농·축·임산물을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거나 작물재배업 소득의 소득세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미가공 농·축·임산물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면 농업인은 농산물 가치사슬의 한 단계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매출액-매입액)를 신고하게 된다. 이에 농업인의 소득파악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조세특례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율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서 물가와 농산물 수요·공급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수 있다.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은 농업인의 소득파악을 가능케 한다는 점 외에도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 관련 세제 간소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세제 개편의 파급효과

68) 사업장 현황 등록 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주택임대사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이다(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lid=7699>)).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검색일: 2022. 10. 24.).

가 소득 세제 개편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⁶⁹⁾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농업인은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농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소득파악을 위한 빠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작물재배업 소득의 소득세 과세 방법에는 과거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 지방세로 부과하거나 종합소득에 편입하여 국세로 부과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자체의 징수능력과 소득세 납세 이원화로 인한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국세인 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작물재배업 소득 중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만 납세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예: 수입금액 2억 원 초과).

농업인 설문조사에서 세부담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꺼린다는 응답이 나왔듯이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축소되면 일부 농업인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금액 2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을 조정한다면 전체 농업인의 약 2.2%가 과세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⁷⁰⁾ 따라서 농업인의 영세성이나 높은 소득 변동성을 고려하여 과세로 인한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제상 몇 가지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에 대한 별도 공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소득에서 자가노력을 비용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소득 계산 시 누락된 자가노력에 대해 농업소득공제(가칭)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분야는 소득변동성이 높고 투자 후 수익 실현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평준화하는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소

69)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재화를 생산하는 농업인은 일반 사업자로써 매출세액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그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특례제도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므로 조세특례제도의 간소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70) 통계청(각 연도)의 농가경제조사 2019~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의 합계를 계산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비율을 계산하였다.

득 평준화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누진세제하에서 특정 기간에 소득이 갑자기 증가하면 납세액이 과도하게 증가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예컨대, 특정 연도의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이전 연도로 소급하고 당해연도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2. 소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2.1. 소득신고 지원체계 구축

농업인들은 매출 및 비용 관련 정보 수집, 경영장부 작성, 신고서식 작성, 신고서 제출 및 확인 등 소득신고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표 4-42>, <표 4-43>. 소득파악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신고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원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농협 등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한데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의 청색신고지원 업무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 농협은 농가의 농업경영관리의 일환으로서 청색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 지원 내용은 세무연수·설명회, 확정신고 상담, 부기·기장지도, 기장대행 등이다. 청색신고 지원 업무는 납세 신고뿐만 아니라 해당 농가의 경영관리와 연계되어 추진된다. 일본 농협은 파악된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컨설팅을 수행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에 대한 제안을 한다.

〈참고〉 일본 JA의 소득신고 업무 지원

지역농협은 지자체 단계의 농업개량보급센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면서, 농협의 현 연합회·전국 조직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되, 농협의 다른 사업, 즉 경제사업(구매, 판매), 신용사업, 보험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자세하게 청색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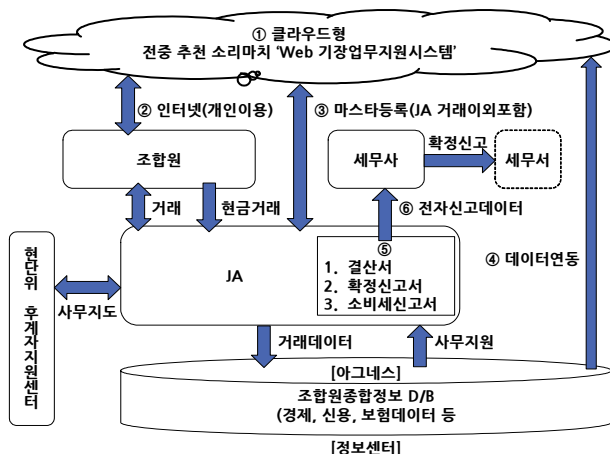
〈사가현(佐賀県)의 청색신고회 사례〉

사가현(佐賀県)에서는 농협, 시정촌 등 다양한 단위로 20개의 청색신고회가 조직되어 있다. 청색신고회의 목적은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청색신고의 보급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회원의 세무경리 기술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기장지도, 연수회, 기장대행,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계산서 접수, 결산·확정신고 접수, 경영개선·세무에 관한 정보제공이다.

청색신고회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임의조직’으로서 회원제로 운영된다. 회장은 농업인 중에서 선정하고 회원은 농업인이 되며, 농협 직원이 사무국을 담당한다. 청색신고회는 회원의 규모에 따라 1~3명의 세무사를 두고 있다. 사무국은 조합원의 소득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세무사는 최종적으로 확정신고를 실시한다.

일본 JA가 농가에 대한 경영진단과 소득신고 지원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근거가 되는 것은 각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센터(아그네스)이다. 아그네스는 조합원의 경제사업 활용 내역, 신용사업 관련 자료, 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합한 데이터베이스이다. JA는 아그네스에 저장된 조합원의 정보와 기장업무지원시스템에서 전송된 자료, 조합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하고 신고서류를 작성한다. 작성된 자료는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서에 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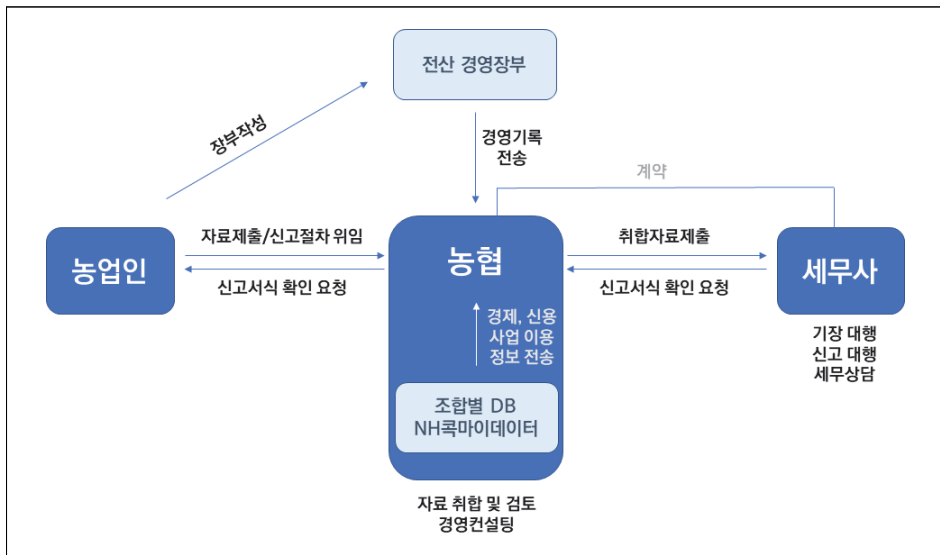
〈JA 사가의 농업부기시스템 개념도〉



자료: JA 사가(2022).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설계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농협이 사무국과 같은 역할을 맡아 농업인의 자료를 취합하고 세무사와 계약을 맺어 세무사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조합원의 면세유 및 농기자재 구매 실적을 비롯한 경제사업 활용 실적을 전산자료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 보험, 정책금융 등 농업인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자료와 농업인이 직접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하면 세무사는 조합원의 장부기장과 신고서식 작성, 확정신고를 수행할 수 있다(일본 청색신고회 사례 참고).

〈그림 6-1〉 소득신고 지원체계 구축 예시



자료: 저자 작성.

위와 같은 방식은 농협의 역할을 단순히 세무사와 조합원 사이를 중개하고 자료를 취합하는 것으로 한정된 것인데, 보다 적극적으로는 농협이 직접 세무사를 고용하여 내부적으로 신고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 있다.

농협의 세무지원 활동은 지역농협, 계열사별로 산재해 있는 조합원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이농가 서비스

와 같이 농업인의 경제활동 관련 정보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농협을 활용하는 방법 외에도 농업인 단체가 개인의 세무서비스 활용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고 지역적 특징으로 인해 상담이나 자료제출이 어려운 농업인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가 중간 역할을 한다면 농업인의 소득신고가 수월해질 수 있다. 세무사와 농업인 단체 간 단체계약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낮추고 자료의 수집과 제출 과정을 농업인 단체가 지원한다면 농업인이 소득신고에 드는 비용은 낮추고 생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2.2. 농업경영체등록제의 활용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내역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유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소득파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소득파악 범위를 확대하고자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시켰으나 현재까지는 특고, 임시일용종사자의 소득파악에 주력하고 있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장기 과제로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에 농업인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행정력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의 행정력 부족은 차치하고라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가공 농·축·임산물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더라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농업인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와 연관된 제 증명의 발급이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농가경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농가 중 85.5%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⁷¹⁾

71) 통계청(각 연도)의 농가경제조사 2019~2021년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업잡수입을 제외한 농업총수입 3년 평균치를 계산하였다. 전체 농가 중 4,800만 원 이상의 농축산물 수입이 있어 농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생기는 농가는 1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세를 하더라도 농가의 소득파악에는 여전히 큰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등록제로서 국세청 소득신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농업경영체등록의 소득정보가 범부처 차원에서 국세청 소득자료와 동일하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농업 관련 지원정책에 한해서는 활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세청 소득신고를 위한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신고 경험이 전혀 없는 농업인들로서는 경영체등록을 활용한 소득신고가 일정 기간 이루어지면 소득신고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국세청 소득신고로 전환하기 수월해진다. 뿐만 아니라 경영체등록의 소득정보를 국세청 소득신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경영체등록에 소득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국세청 소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세청에 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서가 더 많아, 현장 접근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표 6-1>. 또한 농업인에게 인지도가 높고 정책사업 수혜 현황과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모든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규모가 매우 영세하여 국세청 소득신고 절차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로 농업경영체등록제 활용을 한정하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등록 상 소득정보는 추산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경영체가 농산물 판매전표 등 판매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까운 매출자료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업인이 직전연도에 재배한 품목과 수확량을 등록하면 사전에 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자동적으로 매출액이 산출되고 여기에 소득률을 적용하여 경영체별 소득이 자동 산출되도록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과거의 기록이나 비슷한 집단과 대조하여 지나치게 매출이 변동하였다면 실사 등의 검증과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에 입력된 개별 경영체의 소득정보는 각 경영체로 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토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체등록정보는 매년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 자료의 유효기간(3년) 내에 변경사항이 있어도 이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자료의 현행화가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자료는 연 단위로 기록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소득정보에 대해서는 자료 갱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표 6-1〉 지역별 국세청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관서 수

단위: 개소

구분		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 국세청	세무서	지서	세무서 + 지서	지원	사무소	분소	사무소 + 분소
특별시	서울	1	28	0	28	0	1	1	2
광역시	인천	1	5	0	5	0	1	0	1
	대전	1	3	0	3	1	0	0	0
	광주	1	4	0	4	1	0	0	0
	대구	1	5	0	5	1	0	0	0
	부산	1	7	0	7	0	1	0	1
	울산	0	2	1	3	0	1	0	1
	평균	0.86	7.71	0.14	7.86	0.43	0.57	0.14	0.71
도	경기	1	26	2	28	1	16	0	16
	강원	0	7	1	8	1	13	2	15
	충북	0	5	1	6	1	8	1	9
	충남	0	8	1	9	0	13	1	14
	전북	0	6	2	8	1	12	0	12
	전남	0	5	3	8	0	19	2	21
	경북	0	9	4	13	0	19	3	22
	경남	0	7	4	11	1	15	0	15
	제주	0	1	1	2	1	1	0	1
	세종	0	1	0	1	0	1	0	1
	평균	0.10	7.50	1.90	9.40	0.60	11.70	0.90	12.60

주 1) 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 지역 분소에는 양양연락사무소를 포함하며 주소지 기준으로 계수됨.

2) 국세청 관서 수는 세무서와 지서, 사무소와 분소를 포함하며 주소지 기준으로 계수됨.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main.do>). 검색일: 2022. 7. 1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main/main.do>). 검색일: 2022. 7. 14.

2.3. 전산정보 시스템 활용 확대

농업인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전산자료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행정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데, 소득신고 시에도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⁷²⁾ 농업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소득신고 대상 기관에 제공하도록 동의함으로써 소득이 신고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농협에 전산으로 저장된 농산물 출하내역이나 농자재 구입내역을 농업ON 경영장부에서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력의 번거로움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예컨대, 농협에서 발행되는 판매 증빙이나 농자재 구입 증빙자료를 하나의 플랫폼(전산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 영농장부를 농업경영체등록과 연계하여 경영체별 소득정보가 경영체등록을 통해서 확인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농협에서는 농·축협 조합원을 대상으로 NH콕마이데이터 마이농가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농가에서는 수입/지출내역 조회가 가능한데 이 자료를 농업인이 농업경영체등록에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영체등록에 제공하도록 동의한 농업인의 매출 및 비용 정보를 농협이 대신 전산으로 제공하면 농업인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이 작성한 농업ON의 농업경영장부 자료를 AgriX와 연결하여 경영체별 소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청년창업농에게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설문한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 현장에서의 수용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부를 작성하여 농업경영체등록에 소득을 신고한 농업인은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국세청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농업ON을 비롯한 전산화된 경영장부상 수입 및 지출 총액을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제공하도록 한다

72) 국내 마이데이터 추진 동향에 관해서는 [부록 3]에 수록되어 있다.

면 농업인의 소득신고가 보다 간편해질 수 있다.

전산정보의 활용 확대는 농업인이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민감정보를 직접 취급함으로써 보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단점이 있지만, 자료 수집 및 기록 등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어려움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4. 장부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확한 소득정보의 파악을 위해서는 장부 작성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장부 작성 비율은 높지 않다<표 4-20> ~ <표 4-24>.

장부작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영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정책금리 추가 인하, 용자 한도 확대 등 자금조달에 있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일본 청색신고 사례 참고).

〈참고〉 일본의 청색신고 우대조치⁷³⁾

- (1) 청색신고 특별공제(소득금액 65만 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소득금액 최대 65만 엔의 청색신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⁷⁴⁾
- (2) 가족 급여의 필요경비 처리
가족이 농작업 등을 도와주는 경우, 청색신고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15세 이상의 배우자나 친족이 청색신고자의 사업에 종사하고, 그 사람에게 급여가 지불되면 그 급여를 필요경비로서 인정한다.
- (3) 순손실 적자의 3년간 이월
개인사업에 손실이 있는 경우, 먼저 동일 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그래도 공제할 수 없는 금액을 차년 이후 3년간 이월하여 각 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전년도 청색신고를 한 경우는 손실액을 전년분의 소득공제에 소급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73) 자세한 내용은 [부록 2]에 수록되어 있다.

(4) 감가상각 특례

백색신고의 경우, 10만 엔 이상의 고정자산은 사용 가능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나 청색신고의 경우는 30만 엔 미만의 물건이라면 일괄 전액 경비로 처리된다(야요이 홈페이지(<https://www.yayoi-kk.co.jp/>). 검색일: 2022. 7. 2.).

(5) 수입보험제도 가입자격

수입보험제도는 농업소득자가 1년 이상의 청색신고를 실시한 경우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다. 수입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료와 적립금이 지급되는데 보험료의 50%, 적립금의 75%를 정부가 부담한다.

(6) 농업인연금 보험료 보조⁷⁵⁾

인정농업자 또는 인정신규취농자이면서 청색신고를 한 사람은 농업인연금의 보험료의 국고보조를 받는다.

(7)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의 필요경비 인정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인정농업자는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위하여 지출한 적립금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3. 소득정보 기반 정책 확대

농업소득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소득파악의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소득파악을 가능케 한다. 소득정보를 활용한 정책이 생기거나 많아지고 농업 관련 금융기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소득신고 내역을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농업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기 때문이다.⁷⁶⁾ 소득자료의 활용은 공적부조와 같은 복지지원뿐만 아니라 농가경영안정,

74) 연간 소득이 600만 엔의 개인사업주가 청색신고를 한 경우, 백색신고에 비해 소득세액이 약 13만 엔 줄어든다(일본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2021).

75) 임소영, 김수린(2022, p100)을 참조하였다.

76) 국세청 소득자료가 금융기관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과세와 자본 조달 간의 균형으로 인해 신고자의 소득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과소신고가 있을 경우 신고자가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불리할 수 있는 반면 과대신고를 했을 때는 세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진정한 소득에 맞춰 신고하게 된다. 다만 이는 매우 이론적인 논의로서 현실에서는 자금조달의 규모, 예상되는 세부담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위의 균형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부록 1] 참고).

농업인 자격 확인 등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한 농가경영안정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수량보험으로서 시장 상황에 따른 경영위험까지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지금까지 67개 품목으로 보장대상을 확대하여 왔는데 품목 확대가 점차 한계에 도달해가는 것도 현재의 정책보험만으로는 경영위험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품목 단위가 아닌 농가 단위의 경영위험관리 수단으로서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농업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입보장보험의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국세청이나 농업경영체등록을 통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면 이를 이용하여 수입보장보험의 추진이 가능하다.

소득 기반 경영안정정책은 보험 방식 외에도 적립 후 인출 방식이나 직불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캐나다의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사례와 같이 농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예치금 적립 후 필요할 때에 인출하게 하거나 과거 쌀 변동직불금과 같이 정부가 직접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참고〉 외국의 소득정보 기반 경영안정정책 사례

1. 캐나다⁷⁷⁾

(1) 소득안정계정(AgriStability)

소득안정계정은 생산비 증가나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농업 마진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득안정계정에 가입한 농업인에게는 당해연도 농업 마진이 과거 5년간의 기준 마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소득안정계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6개월 이상, 캐나다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2) 캐나다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농업투자계정은 소규모 경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농업투자계정에 가입하면 농가의 예치금 계좌가 생성되는데 이 계좌에 농가가 예치금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 자금을 예치한다. 농가가 적립할 수 있는 예치금은 전년도 소득 범위 내이며 정부의 매칭 자금은 농가가 적립한 금액의 1% 이내이다. 농업투자계정에는 가입자의 적립금과 정부의 매칭 자금, 이자가 적립되며 가입자가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다. 농업투자계정 적립금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한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2. 일본⁷⁸⁾

일본에서는 농업공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19년 1월부터 수입보험을 실시 하였다. 수입보험은 손해 발생의 원인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자의 수입 전체를 보장 의 대상으로 보고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따라서 수입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농업인 가입자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수입보험의 가입은 청색신고를 한 사람만 가능하다. 청색 신고자는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신고하며 장부 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농업인이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기록한 가입신청서와 청색신고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 실시주체(전국연합회)가 서류를 검토 하는 방식으로 농업인의 수입을 파악할 수 있다.

소득자료의 활용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한정되지 않는다. 확보된 소득자료는 농업인 자격 또는 농림사업 대상자 자격 요건 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제 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는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워 농외소득이나 재산 등 여타 파악 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간접적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소농직불금의 경우에는 농가 내 기본직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이 2,000 만 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농가 내 기본 직불 대상자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 원 미만, 농가 내 기본직불 대상자의 시설재 배업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 상 작물재배업 등의 농업소득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외소득이 기준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특례 적 용 시에도 농업소득 파악이 어려워 농외소득이 사용되고 있다.

77) 캐나다 농업금융서비스회사(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홈페이지(<https://afsc.ca/income-stabilization/agristability>). 검색일: 2022. 9. 15.를 참고하였다.

78) 최경환(2019, pp.4-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겸업 농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농외소득을 통한 간접적 방식이 실제 농업인의 영농 활동 정도(진성 농업인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이루어진다면 농업소득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수혜 자격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정책보험료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업인 지원정책 추진 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화된 지원을 함으로써 소득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국고 지원율이 5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농업인의 소득이 파악되면 저소득층에는 지원율을 확대하여 저소득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또한 연금 가입 시 기준소득에 근거하고 있어 실제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인과 같은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실제소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금 보험료 지원 비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 농업인의 연금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농업소득 파악의 필요성과 가능성, 소득파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국민개세주의에 의하면 농업소득 또한 과세 대상이지만 징수 여건이 좋지 않아 비과세로 분류되면서 농업인의 소득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그 결과 농업소득 파악을 위한 자료는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소득이 파악됨으로써 농업정책의 발전과 농업인 지원 근거 확보, 농가 경영 개선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소득파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농가 경영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이 전문 경영인으로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가의 소득, 특히 농업소득이 농업인뿐만 아니라 기관에 의해 파악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농가 거래 형태의 변화 등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관련 여건이 변화하고 있고 소득 기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분야의 소득파악 가능성과 이를 가능케 할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는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보관, 장부기장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소득파악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의 농업인이 매출 관련 증빙자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인의 매출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신고를 할 때 필요한 정보의 범위는 매출만 파악, 매출과 주요 비용 파악, 매출과 상세 비용 파악 순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정보의 범위가 작으면 추계방식, 확보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넓으면 장부기장을 비롯한 소득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수집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어도 매출자료를 가지고 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건비 등 지출자료를 농업인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없고 고령화로 인해 장부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이 많다는 점은 정확한 소득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득파악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으나 소득신고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이 각각 전체 응답자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신고 도입 시 찬반이 매우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신고에 부정적인 이유는 세부담과 소득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장부작성, 신고절차 이행 등에 따른 번거로움이다. 주로 매출 규모가 큰 농업경영체가 세부담으로 인해 소득신고를 꺼리며, 고령농이 소득파악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소득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부담과 소득파악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는 소득추계만으로 대략적인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경영손실 증명이나 정확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장부작성 방식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는 매우 단순한 추계방식에서 장부기장으로 점진적으로 신고제도가 변화하였다는 점도 신고방식의 점진적 이행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득파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제도개선 과제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미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과세이다. 국가 지원과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경영개선 등 소득파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소득파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공신력을 갖춘 소득자료는 국세청 신고자료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을 통한 과세가 불가피하다. 또한 인건비 지출자료, 판매자료를 농업인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므로 국세청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다. 농업분야는 여전히 영세성이 높기 때문에 징수비용이 세수에 비해 클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납세 환경이 개선되었고 농업소득의 신고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므로 농업분야의 과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국세청 소득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소득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첫 번째는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을 도울 수 있는 인력 지원이다. 설문조사 결과, 농업인이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판매 및 지출 증빙자료의 수집과 기록이며 이를 돕기 위한 인력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을 비롯한 생산자 단체가 세무사와의 계약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농업인에게 지원함으로써 소득신고의 어려움을 줄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농업경영체등록의 활용이다. 세제개편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전체 농업인이 소득신고 의무를 가지더라도 일부 영세농은 여전히 신고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고 국세청의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등록제도가 보조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전산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발전하고 있는 정보 공유 체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인이 직접 기초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수집에 드는 노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장부를 작성하는 소득신고자에게 정책금리 추가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소득파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세제를 개편하고 농업인의 소득신고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소득자료를 이용한 농정 고도화이다. 소득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소득자료를 활용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므로 소득자료의 활용 확대는 소득신고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된다. 역으로 소득 기반 농정을 추진하는 것은 소득신고 활성화의 목적이기도 하다. 소득 기반 농정은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한 경영안정정책의 확대, 정책수혜 자격 확인에 소득정보 활용, 소득수준별 차

등화 지원, 정책금융지원 시 근거자료 활용 등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신고의 확대는 2장에서 언급하였던 편의 외에도 농업인이 납세를 함으로써 정부 지원에 대한 국민적 설득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신고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가져올 국가경제적 영향과 지원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농업계 내부적으로도 소득파악 및 신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필요가 있다. 앞선 장에서 제시된 소득신고 의향에 관해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각자 처한 경제적 상황과 소득파악에 대한 인식 등에 따라서 농업인의 소득신고 의사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소득파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면, 소득파악을 위한 장부작성 시 필수적인 자산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의 신고지원체계에 대해서도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신고지원체계 유무나 방식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본의 경영장부 작성 시스템을 포함하여 세세한 운영방식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위의 주제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져 있으며 추후에는 세제 개편에 따른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함께 고려하여 소득파악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농업인 소득신고 유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개요

농업인 소득신고의 편익과 비용이 존재한다고 할 때 농업인의 소득신고 여부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와 금융 중개비용(cost of financial intermediation)의 관계를 탈세(tax evasion) 모형에서 이론적으로 살펴본 Blackburn et al.(2012)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Blackburn et al.(2012)의 연구는 개인이 탈세 목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자산 수준을 은닉하는지 이론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밀수, 도박, 매춘 등의 불법 행위보다는 개인이 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misreporting income)하는 등의 행위에 주목하여 소득신고의 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았다.

2. 모형 가정

농가에는 두 가지 유형의 소득원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소득원은 초기 소득(A)으로, 이에 대한 수익률은 $\alpha(\alpha > 1)$ 라고 가정한다. 두 번째 소득원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1)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costless) 불확실성이 없는(riskless) 확실한 투자와 2) 더 큰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만 비용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K 수준의 자본이 필요하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농가의 기술(skills)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⁷⁹⁾ 불확실성이 없는 투자는 S_i 의 수

익을, 리스크가 있는 투자는 q_i 의 확률로 k 의 수익률이 예상된다.

리스크가 있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수익은 확실한 투자에 비해 크며 ($q_i k > S_i$), 고숙련 농가는 저숙련 농가에 비해 확실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크고 ($S_H > S_L$), 리스크가 있는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할 확률이 크다고 가정한다($q_H > q_L$)⁸⁰.

3. 모형 구축

먼저 투자하기를 원하는 농가가 있다고 가정한다. 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소득이나 자산 규모보다 크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농가는 소득 신고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소득신고 수준(γ , 여기서 $0 < \gamma < 1$)을 결정하게 된다.

소득신고로 인해 예상되는 편익으로 우선 개인 소득이 높게 추정되어 대출 한도 또한 상향조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원 사업 신청, 추가적인 정부 지원, 수입보장보험을 통한 소득 안정, 소득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으로 인한 농가 경영효율화 등의 편익이 발생하고, 이를 편익상 이를 $\beta \ln(\gamma)$ 라고 한다. 여기서 β 는 편익 증대 정도로 정의한다.

반면, 소득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를 고려할 수 있다. 소득을 신고하면 t 의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한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ρ 의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위해 필요한 금전과 시간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편익상 이를 $\epsilon \gamma^2/2$ 라고 한다. 여기서 ϵ 은 추가적인 소득신고로 인한 금전과 시간 등의 단위 비용으로 정의한다.

79) 고숙련(High-skilled: H) 농가, 저숙련(Low-skilled: L) 농가로, 각각 p 와 $(1-p)$ 의 확률로 설정됨을 가정하였다.

80) 분석의 편의를 위해, Blackburn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S_L=0$, $q_H=1$ 을 가정하였다.

최적의 이자율 R_i 과 농가에게 대출이 승인될 확률 Π_i 이 은행으로부터 결정이 된다⁸¹⁾. 은행으로부터 Π_i 의 확률로 대출이 승인되어, 농가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곳에 투자를 했다고 하자.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로부터 q_i 의 확률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로부터 $(1-t)(k-R_i)K$, 신고한 소득으로부터 $(1-t)\gamma\alpha A$,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부터 $(1-\gamma)\rho A$ 소득이 발생한다. 그러나 $1-q_i$ 의 확률로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부터 $(1-\gamma)\rho A$ 의 소득만이 발생한다.

$1-\Pi_i$ 의 확률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하자. 이런 경우, 확실한 투자로부터 $(1-t)S_i$, 신고한 소득으로부터 $(1-t)\gamma\alpha A$, 신고하지 않은 소득으로부터 $(1-\gamma)\rho A$ 소득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와는 별개로 소득신고를 통해 $\beta \ln(\gamma)$ 의 편익이 발생하고, $\epsilon\gamma^2/2$ 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농가의 기대 효용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egin{aligned} E(U_H) &= (1-t)[\Pi_H(k-R_H)K + (1-\Pi_H)S_H + \gamma\alpha A] + \beta \ln(\gamma) + (1-\gamma)\rho A - \epsilon\gamma^2/2 \\ E(U_L) &= (1-t)[q_L(k-R_L)K + \gamma\alpha A] + \beta \ln(\gamma) + (1-\gamma)\rho A - \epsilon\gamma^2/2. \end{aligned}$$

농가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신고 수준, γ ,를 선택한다. p 와 $(1-p)$ 의 확률로 고숙련(High-skilled: H) 농가, 저숙련(Low-skilled: L) 농가로 결정된다고 할 때의 효용극대화 문제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underset{\gamma}{Max} U = pE(U_H) + (1-p)E(U_L)$$

81) 은행은 자금을 중개하는 데 있어 영이윤조건(zero profit condition) 제약하에서 농가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이자율과 R_i 과 농가에게 대출이 승인될 확률 Π_i 을 결정한다. 다시 말해, i 유형의 농가는 Π_i 의 확률로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를 위한 대출을 승인받게 된다. Blackburn et al.(2012)에는 금융 거래(Financial contracts)와 관련된 이론을 통해 최적 이자율과 대출이 승인될 확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Blackburn et al.(2012)은 특정 임계 수준까지는 소득신고 수준에 따라서 기대효용은 선형적으로(linearly) 단조 증가하기 때문에, 특정 제약 조건($\alpha A < rK + \delta$) 하에서 $F(\cdot) > G(\cdot)$ 이면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반대로 $F(\cdot) < G(\cdot)$ 이면 모든 소득을 신고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다시 말해, 소득신고로 인한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면, 농가는 모든 소득을 신고하고,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크다면 농가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4. 모형 분석

Corollary 1. 대출 한도가 증가할수록, 리스크가 있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소득신고로 인한 한계 편익은 증가하므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도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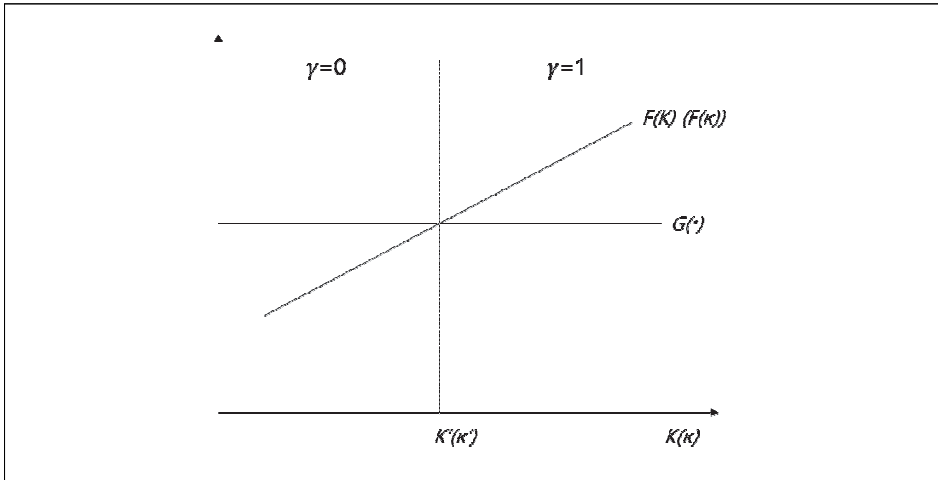
$$\text{Proof. } \frac{\partial F}{\partial K} = (1-t)p(k-r)\frac{\partial \Pi_H}{\partial \gamma} > 0, \quad \frac{\partial F}{\partial k} = (1-t)pK\frac{\partial \Pi_H}{\partial \gamma} > 0$$

투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보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때, 더 큰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더 크다면 농가는 소득을 신고하여 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대출 한도 수준 혹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의 수익률이 K' 혹은 k' 보다 낮은 수준이라 하자. 이런 경우, 소득신고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낮아 ($F(\cdot) < G(\cdot)$) 농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즉, 농가는 대출 한도가 충분히 높지 않거나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했을 경우 기대되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추가적인 대출을 받았을 때 기대되는 편익이 이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 비용과 소득을 감춤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의 합보다 크지 않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gamma = 0$).

대출 한도와 리스크가 있는 투자의 수익률이 임계점인 K' 혹은 k'' 보다 높은 수준에서는 소득을 신고함으로써 가능한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이 추가적인 세 부담 비용과 소득을 감춤으로써 기대되는 편익을 상쇄하고 남은 만큼 높아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gamma = 1$).

〈부도 1-1〉 대출 한도 및 리스크가 있는 투자의 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자료: 저자 작성.

Corollary 2. 확실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감소할수록 소득신고로 인한 한계 편익이 증가하므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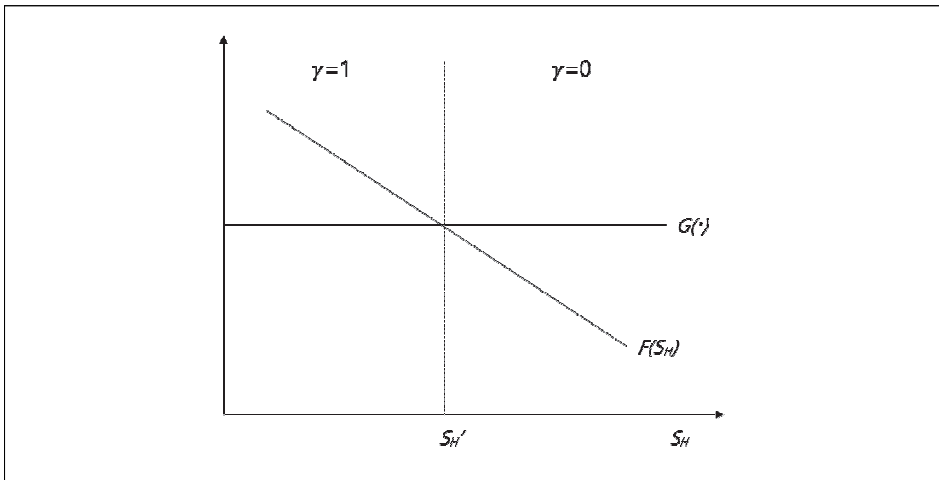
$$\text{Proof. } \frac{\partial F}{\partial S_H} = -(1-t)p \frac{\partial \Pi_H}{\partial \gamma} < 0$$

농가는 두 가지 유형의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실한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더 큰 수익이 예상되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투자이다. 확실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감소한다면, 소득을 신고하여 외부로부터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받아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를 늘릴 유인이 커지게 된다.

확실한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률이 높은 경우 ($S_H' < S_H$), 소득신고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낮아 ($F(\cdot) < G(\cdot)$)능가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다 ($\gamma=0$). 이런 경우, 확실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충분하여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불확실한 투자할 유인이 크지 않게 된다.

확실한 투자를 통해 기대되는 수익률이 임계점에 비해 낮은 경우 ($S_H < S_H'$)에는 소득신고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낮아 ($F(\cdot) > G(\cdot)$)능가는 소득을 신고한다($\gamma=1$). 이런 경우, 확실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리스크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

〈부도 1-2〉 확실한 투자의 수익률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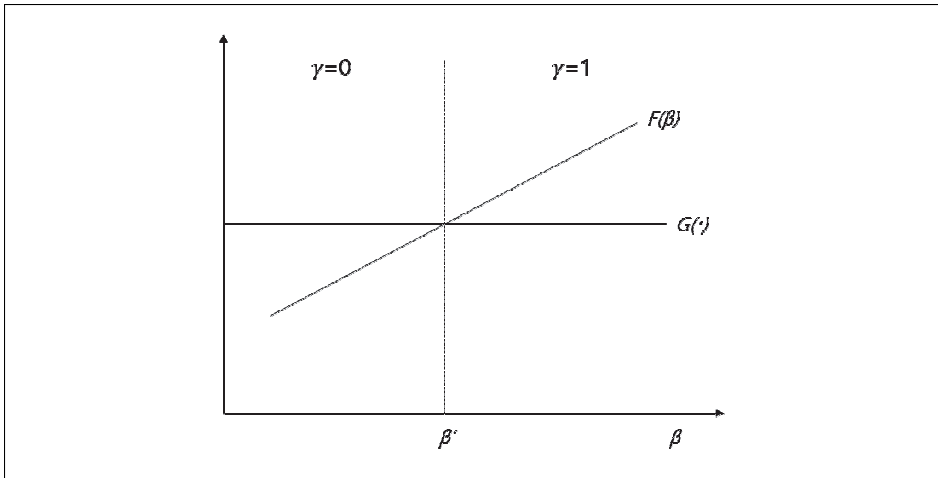
Corollary 3. 소득신고를 통해 편익 수준 등이 증가할수록, 소득신고 준비에 필요한 금전과 시간 등의 단위 비용이 감소할수록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text{Proof. } \frac{\partial F}{\partial \beta} = \frac{1}{\gamma} > 0, \frac{\partial G}{\partial \epsilon} = \gamma > 0$$

추가적인 소득신고를 통한 편익 증대 수준이 클수록, 단위 비용이 작을수록, 소득신고로 인한 한계 편익이 비용보다 클 확률이 높아져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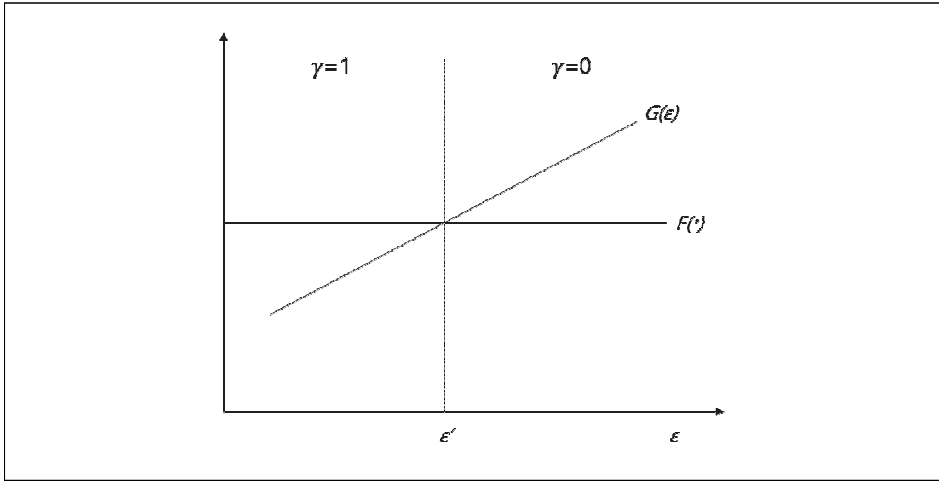
한계 편익이 임계점에 비해 낮은 경우 ($\beta < \beta'$) 혹은 한계 비용이 임계점에 비해 높은 경우 ($\epsilon' < \epsilon$)에는 소득신고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낮아 ($F(\cdot) < G(\cdot)$) 농가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 ($\gamma = 0$). 그러나 한계 편익이 충분히 높거나 한계 비용이 충분히 낮아지면 ($\beta' < \beta$ 혹은 $\epsilon < \epsilon'$), 소득신고의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높아져 ($G(\cdot) < F(\cdot)$) 농가는 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gamma = 1$).

〈부도 1-3〉 정부 지원금 수혜 등 편익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자료: 저자 작성.

〈부도 1-4〉 소득신고 준비에 필요한 비용의 변화에 따른 소득신고



자료: 저자 작성.

5. 소결

이 절에서는 모형을 활용하여 소득신고로 인한 대출 확대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소득신고 유인의 메커니즘을 전개하였다.

Blackburn et al.(2012)의 모형에서는 대출 한도가 증가할수록, 리스크가 있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증가할수록, 확실한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률이 감소할수록 소득신고 유인이 증가함을 보였다.

Blackburn et al.(2012)의 모형을 확장하여 대출 이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 수입 보장보험, 농가 경영효율화 등 소득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편익과 소득신고 관련 금전과 시간 등 소득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득신고 유인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였다.

모형 분석 결과는 한 개인이 소득세 납부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은 소득신고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더 큰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신고로 인한 한계 편익이 커질수록, 소득신고에 소요되는 한계 비용이 감소할수록 소득신고 유인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모형을 통해 신고된 소득이 정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소득을 과대·과소 신고했을 때의 불이익 때문인데, 과대 신고할 경우에는 세 부담 증가를, 과소 신고할 때에는 조달 가능한 자금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에 소득신고자는 실제소득에 가깝게 신고하게 된다.

일본 농협의 청색신고 지원⁸²⁾

1. 영농지도사업의 변화

일본의 농협은 장기간 영농지도사업을 통하여 농가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생산 기술 보급 등 주산지 형성에 주력해 왔다.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와 법인화, 마을영농조직 확산, 농업생산법인의 증가 등을 배경으로 일본 농협의 역할은 농업경영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종전에는 농업기술 지도나 생산부회(작목반) 운영, 쌀 생산조정이나 채소 산지형성 등과 같은 행정과의 연락 조정 등이 농협의 영농지도에서 중요한 업무였으나 농가의 수요를 고려하여 농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 회계, 청색신고,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농업경영관리(농업경영컨설팅)를 강화하게 되었다. 제24회 JA 전국대회(2006년)를 계기로 일부 지역농협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농업경영관리사업’은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다.

2. 청색신고 지원체계

농업경영관리는 인정농업자, 대규모 농가, 마을영농, 농업생산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경영상황을 파악, 분석하여 실태에 근거한 기술이나 경영을 지도하는 사업이다.

이 중에서 청색신고와 관련해서는 농협이 확정신고를 지원하거나 기장을 대행하는 사업 등을 통하여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영분석을 수행하여 경영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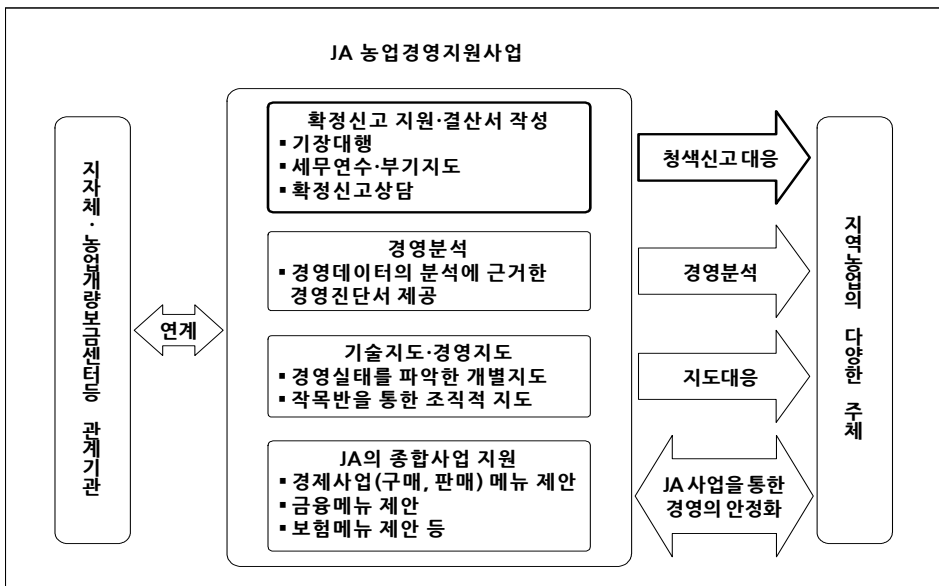
82) 김태곤 KREI 시니어 이코노미스트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도 한다.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 단계의 농업개량보급센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면서, 농협의 현연합회·전국 조직과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되, 농협의 다른 사업, 즉 경제사업(구매, 판매), 신용사업, 보험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자세하게 청색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농협의 청색신고 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세무연수·설명회, 확정신고 상담, 부기·기장지도, 기장대행 등이다<부도 2-1>.

농협이 청색신고를 지원하는 조직은 ‘청색신고회’이다. 임의조직인 청색신고회가 연수사업을 실시하고, 회계기장을 대행하거나 확정신고를 지원한다. 청색신고회는 농협에 사무국을 두되, 회원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회원의 규모에 따라 1~3명 정도의 세무사를 두고 있다. 청색신고회는 세무사의 전문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되, 신고업무는 농협과 세무사 간에 분담한다<부표 2-1>.

<부도 2-1> 농협의 농업경영지원사업과 청색신고 지도



자료: JA 홈페이지(<https://org.ja-group.jp/factbook>). (2006). JAの指導事業. 검색일: 2022. 7. 25.

〈부표 2-1〉 농협과 세무사의 청색신고 업무 분담

농협	세무사
• 결산서류 작성 - 복식부기에 의한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보존한다. - JA가 도입·개발한 전용부기시스템(소리마치)을 운용·대응한다. • 청색신고에 대응한 각종 장부의 작성·보존 - 자동 작성되는 장부서류는 시스템 내에서 7년간 보존되며, 세무조사에 대응 가능하다. 단지 월별 현금 출납장에 대해서는 농업인 자신이 작성·보존한다.	• 청색(백색)신고서 작성 •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 법인세 등 확정신고서 작성 • 소비세확정신고서 작성 • 세무세에 e-tax(전자신고)로 신고서 송신(확정신고)

자료: JA 이와테(2017).

3. 청색신고회

3.1. 이즈모 농협 사례

시마네현(島根県) 이즈모시(出雲市) 이즈모 농협(JA 이즈모)이 청색신고회를 설치, 회원 농가의 청색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 법인, 마을영농조직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원제’ 조직이며, 회원을 대상으로 세무연수, 신고상담, 기장지도, 기장대행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색신고회의 사업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세무연수(연간 3~5회), 부기 소프트 조작지도, 확정신고 상담, 경영 상담 등이다. 두 번째, PC부기 기장지도(PC부기회원)이다. 세 번째는 세제 개정에 의해 농업인의 농업부기 기장 의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JA 종합사업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거래 데이터에 근거, 조합원의 기장·경리사무 등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부기 기장에서 신고 지원용 관련 서류(결산서, 소비세 계산서류 등)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다(기장대행회원).

청색신고회의 연회비는 1,000엔이다. 이용요금은 기장대행회원의 경우, 백색신고를 하면 1만 엔/연이고, 청색신고를 하면 2만 엔/연이며, 법인·단체 회원은

3만 5,000엔/연이다. PC부기회원의 연회비는 개인(청색, 백색), 법인, 단체 모두 3,000엔이다.

청색신고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점이나 영농센터 창구에서 가입원서를 작성하여, 사무국까지 송부하면 된다.

기장대행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장대행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회원은 번잡한 일상의 장부기장·경리사무에서 해방되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다. 두 번째,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JA의 특색을 살린 자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색신고 사무국이 기장대행 업무를 담당하고, 의뢰받은 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수비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안심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네 번째는 회원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청색신고에 의한 특별공제(최고 65만 엔)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수증이나 대장의 복사, 현금의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으로 매월의 기록장,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총감정원장, 감가상각자산대장, 청색신고결산서(농업소득용)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받는다(JAいずも青色申告会 홈페이지(www.izmccci.or.jp). 검색일: 2022. 7. 25.).

3.2. JA 사가현의 사례

3.2.1. 경과

청색신고회는 모든 현의 지역농협(JA)에 설치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규슈(九州), 도호쿠(東北), 홋카이도(北海道)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농협에 사무국을 두고 있다. 즉, 농협 이용이 활발한 지역일수록 청색신고회의 조직화 정도가 높다.

1998년까지는 백색신고가 중심이었으며, 백색신고는 표준과세 방식에 의존하였다. ‘표준과세’는 ‘세무서의 농업담당’과 ‘현 농협중앙회’가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 하지만, 표준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서의 농업 담당도 없어졌다. 표준과세를 예를 들면, 쌀 1ha당 수입과 비용이 얼마인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농가는

이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관계로 정확한 경영을 파악할 필요는 없다. 표준과세의 수준은 현의 세무서별로 결정한다(현내 5개서).

1998년경 백색신고의 표준과세를 폐지하고, 청색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세무서의 방침이었다. 이는 농가의 스스로 농산물 판매수입이나 비용 등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

3.2.2. 사가 농협의 청색신고회 주요활동

사가현(佐賀県)에서는 청색신고회가 20개 조직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르다. 범위는 농협단위, 시정촌단위 등 다양하다. 또한, 청색신고회가 없는 지역도 있다. 예를 들어, 사가현 후지정(富士町)에서는 농협 직원이 상담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

청색신고회는 ‘임의조직’이다. 회장은 농업인 중에서 선정되며, 회원은 농업인, 농협 직원이 사무국을 담당한다. 회원은 100명에서 800명 정도로 다양하다. 청색신고회의 회비는 연간 수천 엔 정도이고(1만 엔을 이하), 농협은 신고회에 각출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각 신고회에는 회원의 규모에 따라 1~3명의 세무사를 두고 있다.

사가 농협 청색신고회의 목적은 신고납세제도상에서 신고의 한 형태인 청색신고제도가 있고, JA는 청색신고회를 조직하여 조합원의 세무신고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고납세제도의 취지에 따라 청색신고의 보급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회원의 세무경리 기술을 향상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3.2.3. 사업 내용

사가 농협 청색신고회에서는 소득세·소비세의 신고에 관한 결산, 확정신고(e-tax, 전자신고) 등의 실무와 회원·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등을 실시한다.

사가 농협 청색신고회의 사업내용은 1) 기장지도, 연수회, 2) 경영지원시스템에 의한 기장대행, 3) 사업주의 급여 지불자에 관한 원천징수계산서 접수, 4) 사업주

의 결산·확정신고 접수, 5) 경영개선·세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이다. 청색신고회의 연간사업은 <부표 2-2>와 같다(JA 사가, 2022).

〈부표 2-2〉 사가 농협 청색신고회의 연간사업

시기	사업	사업내용
연중	청색신고에 관한 신고서 및 신청서 제출	소득세의 청색신고 승인신청서 청색산업 종사자 급여에 관한 신고서 원천소득세 납기특례 승인에 관한 신청서 상기 이외의 신고서, 신청서
	기장대행	기장대행 희망자에 대한 대응 PC 조작
7월	원천징수 사무접수담당자 연수회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 절차 PC 조작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 사무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납부서) 접수 PC 조작
9월	확정신고 연수회	기장, 결산, 확정신고, 원천징수에 관한 절차
12월	원천징수 사무(연말조정) 접수담당자 연수회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 절차 PC 조작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사무(연말조정)	청색사업 종사자 급여 원천징수 접수 PC 조작
1월	결산준비	결산, 확정신고 이전의 사전준비
	신고지원 전표 발송	JA 거래실적 전표 발송
2월	확정신고사무 접수담당자 연수회	청색신고 확정신고에 관한 접수사무 절차 PC 조작
	확정신고 준비·접수	결산, 확정신고 접수 PC 조작

주: 사가현 JA 청색신고회의 확정신고 지원은 약 4,000건, JA와 거래실적이 있는 전표 제공은 약 1만 7,000건임.
자료: JA 사가(2022).

3.2.4. 사업체계

현(県) 농협에는 ‘농협 정보센터’라는 조직이 있다. 농협 정보센터는 ‘소리마치’라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센터의 활동은 각 지역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진다.

농협 정보센터는 청색신고의 시스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에 의한 JA 구매판매 사업의 실적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센터는 JA를 통한 이용내역만 파악

할 수 있으며, 농가가 비료나 농약 등 부족분을 홈센터(농업자재 등 판매소) 등에서 구입한 경우 영수증을 첨부, JA 이용분에 추가하여 계산한다. JA 점포에서 구입한 경우는 ‘조합카드’에 의하여 구입이력이 추가되고, 현금의 경우는 영수증이 필요하다.

청색신고회는 회원으로부터 확정신고의 기장대행을 의뢰받은 경우 신고회가 기장을 대행한다. 기장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1) 청색신고회에서 독자적으로 고용하는 경우(극히 소수)와 전직 농협 직원, 전직 기업의 경리담당 등, 2) JA 영농경제센터의 비정규 직원, 3) JA 직원(영농기획과) 등이다.

JA 직원(영농기획과)의 경우는 영농기획과 직원이 소수이므로 기장대행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기장대행은 매월 장부나 영수증 등의 확인을 농업인에게 부탁한다. 그러나 그때마다 농업인이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도 자주 있다. 최종적으로는 확정신고 직전에 확인 작업이 집중한다. 이 때문에 농협으로서는 기장대행을 꺼려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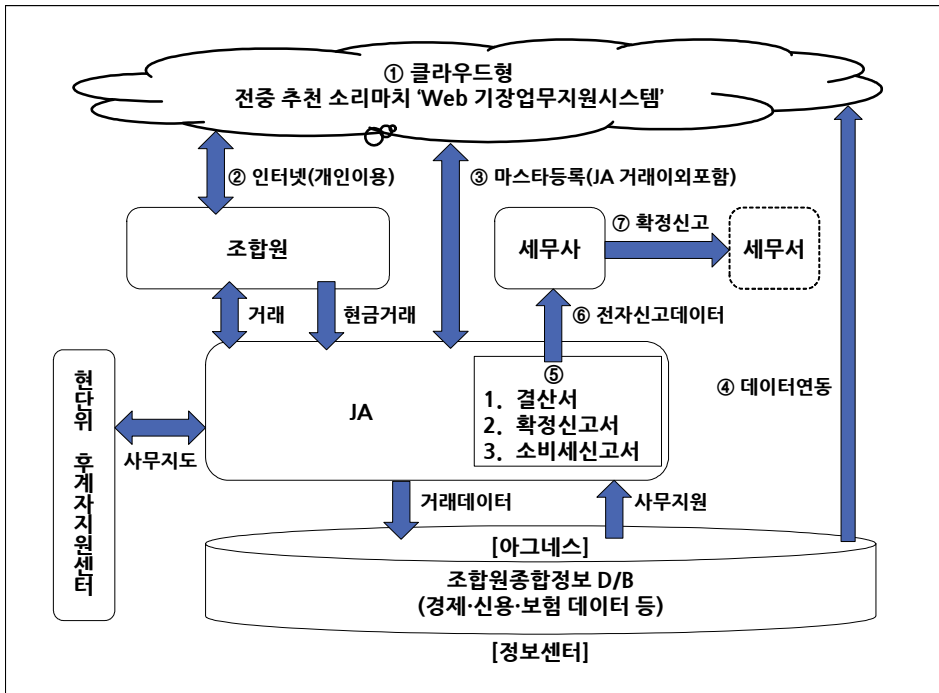
기장대행비용은 의뢰하는 농업인의 숫자나 청색신고회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례로 청색 3만 엔, 백색 16만 엔 등 회비로 충당하기 위해 회비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

기장대행은 2008년경부터 시작되어 점차 기장대행 요구가 늘어났다. 이는 세무사에 직접 의뢰하는 경우보다 싸기 때문(세무사의 경우 연간 10만 엔)이다.

대부분의 농업인은 스스로 확정신고를 기장한다. 기장에 필요한 농협의 출하금액이나 자재구입비용 등 상세한 명세서를 청색신고회에서 제출받는다. 그 요금은 2,500~3,000엔 정도이다.

또한, 확정신고는 세무사(税務士)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세무사를 두고서 신고회 사업에 임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무사회와 협의를 거치고 업무내용은 세무사와 계약으로 결정한다. 세무사는 상담이나 자문을 비롯하여, 서류 확인을 거친 후, 신고서 전원분의 확정신고를 취합하여 전자신고(e-tax)로 제출한다<부도 2-2>.

〈부도 2-2〉 JA 사가의 농업부기시스템 개념도



자료: JA 사가(2022).

국가나 현에서 청색신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은 없다. 백색신고의 접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받는다. 이 때문에 시정촌에서는 신고지원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실제 지원사업은 없다.

3.2.5. 청색신고의 현황 및 추이

사가현의 경우 청색신고의 추이는 20년 전 8,000건에서 최근 4,000건으로 줄어들고 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이농이다.

사가현 전체의 농협 정조합원은 5만 호, 그중 1만 호는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수입금액 수준이다. 나머지 4만 호 중에서 청색신고를 6,000호에서 하고 있고, 백색신고를 3만 4,000호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청색신고는 수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중에서 기장대행을 하는 자는 700호 정도이다.

최근 청색신고회 회원의 증감은 거의 없다. 청색신고를 가입요건으로 하는 수입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청색신고가 늘었다는 움직임은 없다. 백색에서 청색으로 전환한 자는 부모에서 자식으로 세대교체가 많다. 이는 사실상 자식이 부모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1. 개념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생산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이를 관리·처리하는데 있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다. 개인데이터가 경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은 본인의 데이터가 판매되거나 활용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고, 그 개인데이터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이데이터는 개인데이터가 관리 및 활용되는 체계를 기관 중심(Organization-centric system)에서 사람 중심(Human-centric system)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노현주, 2021, p.6).

마이데이터의 원칙은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개인데이터를 통제, 제공,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하고 소유한 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다(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pp.10-11). 즉, 마이데이터에서는 개인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데이터를 생산한 본인이 가지며, 개인이 개인데이터를 요구할 때 기관(업)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한 동시에 그 결과를 개인이 알 수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노현주, 2021, pp.6-7).

〈부표 3-1〉 마이데이터 원칙

구분	내용
데이터 권한	개인이 개인데이터의 접근, 이동, 활용 등에 대한 통제권 및 결정권을 가져야 함
데이터 제공	개인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업)은 개인이 요구할 때, 개인데이터를 안전한 환경에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여야 함
데이터 활용	개인의 요청 및 승인(동의)에 의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제3자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그 활용 결과를 개인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함

자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19, p.11).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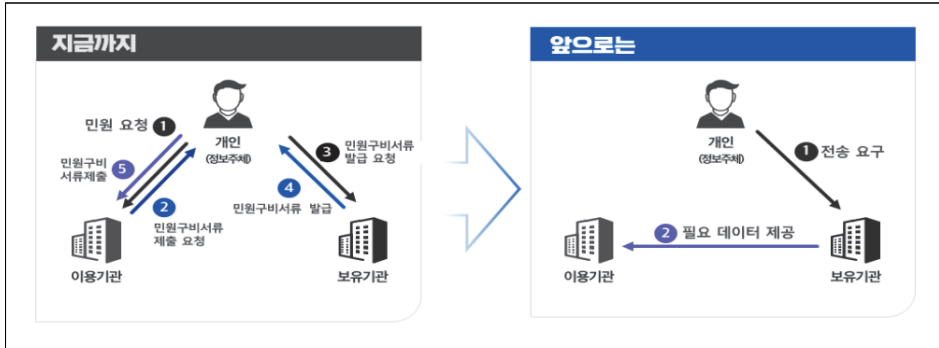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추진현황

2.1. 공공 마이데이터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의 행정 정보를 보유하고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따라 원하는 곳에 행정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행정안전부, 2022, pp.4-5). 공공 마이데이터는 2019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 계획’의 일부이다. 이것은 각종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최소한의 개인데이터를 모아 서 이용하려는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2021년 2월 개시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소상공인, 일자리, 금융 등 6개 관계기관, 8개 서비스에 적용되고 시행되었다(이기호, 2021, pp.58-59).

기존에는 공공 서비스 신청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행정·공공기관에서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 이용기관에서도 제출된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각종 행정·공공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개인데이터 소유자인 국민이 정보 보유기관에 요구하여 데이터를 한번에 모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부도 3-1〉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념도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 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검색일: 2022. 7. 21.

2022년 1월 20일 기준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 가능한 행정 정보 활용 서비스는 건강·의료, 고용·취업, 창업·경영, 생활·안전, 복지·수혜 5가지 분야에 총 24개 서비스가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 정보 87종을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이용 가능한 행정 정보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금융·의료 등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행정 정보는 청년 면접수당, 은행신용대출,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 준비 절차 간소화, 적절한 응급처치 및 최적의 치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부표 3-2〉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예시

서비스명	기관명	활용 행정정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경기도 일자리재단	- 주민등록표등·초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은행신용대출	한국신용정보원	- 소득금액증명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아동급식신청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등록표등·초본 - 한부모가족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계속)

서비스명	기관명	활용 행정정보
119안심콜	소방청	• 주민등록표등·초본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투약이력정보
소상공인확인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중소기업확인서 • 폐업사실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자료: 행정안전부(2022, p.2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2.2. 농식품 마이데이터

농업부문에서도 농업인 마이데이터를 구축해서 농업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책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농식품 마이데이터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농업부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농식품 마이데이터의 기능은 농업인의 영농 활동을 통해 수집된 농업경영체 정보, 농기자재 구매 정보, 재배 품목 정보, 경작 사실 정보, 경작지 정보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공익직불제 등의 신청과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에 따른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맞춤형 영농정보 등 농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2년 현재 농식품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인은 기본형 직불금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는 경작 확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농식품 마이데이터는 2023년도에는 공익형 직불금 신청 제출 서류 간소화와 등록된 농지 여부 판단 자동화, 직불금 수령 여부 판단 자동화 등 자격요건 검증 자동화에 활용될 전망이다. 2024년 이후에는 직불 이외 보조사업 간소화, 신규농업인 농업경영체 신청 자격 검증, 빅데이터 분석 등의 서비스에 활용될 계획이다.

농식품 마이데이터를 통해 농업인은 직불제 등 신청,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에 따른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관련 기관에서는 맞춤형 영농정보 등 농업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사전·사후 검증이 강화되어, 농업인의 자격증명 서류 및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소유권 이전 및 임대계약 종료 증명, 경작사 실확인서 등 농업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부담이 증가하게 하였다. 농식품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직불금 신청, 자격 점검, 이행 점검에 필요한 각종 제출서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3. 민간부문 마이데이터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금융, 에너지, 유통, 의료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융 외에서는 아직 시범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노현주, 2021, p.32).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및 마이데이터 산업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0년 8월에는 ‘데이터 3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전송요구권이 규정되었고, 금융분야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였다(노현주, 2021, pp.12-14).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는 2021년 12월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에는 2022년 1월 기준 33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출범하였고, 2022년 7월에는 총 5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업권별로는 은행 10개사, 보험 2개사, 금융투자 7개사, 여신전문금융 9개사, 저축은행 2개사, 상호금융 1개사, CB 2개사, IT 1개사, 핀테크 23개사, 통신 1개사, 전자금융 1개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부표 3-3〉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참여 사업자(2022년 7월 기준)

업권	제공 정보
은행 (10개 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DGB대구은행
보험 (2개 사)	교보생명, KB손해보험
금융투자 (7개 사)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현대차증권
여신전문금융 (9개 사)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롯데카드
저축은행 (2개 사)	웰컴저축은행, 동양저축은행
상호금융 (1개 사)	농협중앙회
CB (2개 사)	NICE평가정보, KCB
IT (1개 사)	LG CNS
핀테크 (23개 사)	토스, 네이버파이낸셜,뱅크샐러드,페이코, 카카오페이, 헥토이노베이션, 해빗팩토리, 한국신용데이터, 쿠팡, 핀셋앤, 팀웍, 보맵, 핀다, 모니, SK플래닛, 아이지넷, 핀크, 뱅큐, 유비벨록스, 핀트, 에프앤가이드, 코드에프, HN핀코어
통신 (1개 사)	SK텔레콤
전자금융 (1개 사)	11번가

자료: 마이데이터 종합포털(<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index/index.do>). 검색일: 2022. 7. 21.

공공부문 마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금융부문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은 여러 기관 및 사업자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종합된 금융 정보는 특정 개인의 재무 현황 분석, 신용 관리 및 정보 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추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부표 3-4〉 마이데이터의 제공 정보

업권	제공 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 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 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융투자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신전문금융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로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통신 결제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 11. 29.).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금융당국은 농협 상호금융의 ‘NH콕마이데이터’를 상호금융업권에서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선정하였다. NH콕마이데이터는 2021년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2022년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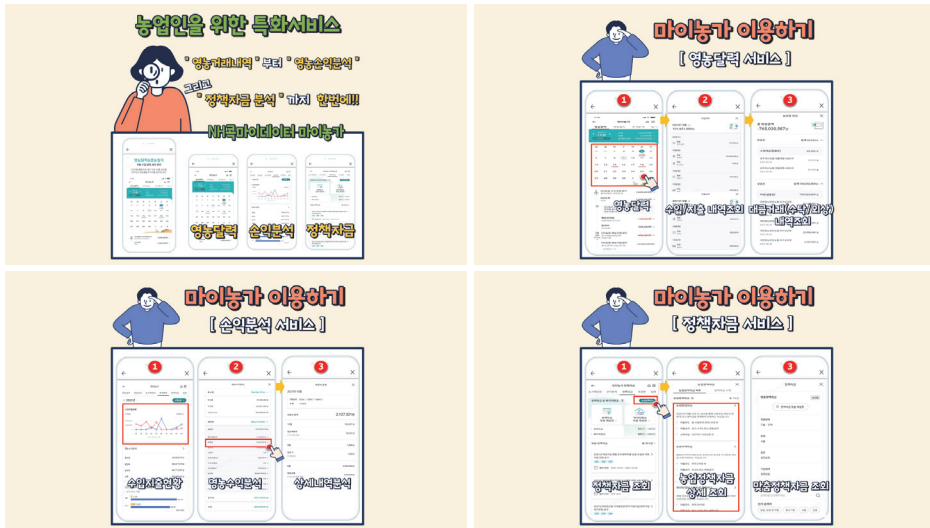
사용자는 NH콕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자산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다. 특히 NH콕마이데이터는 ‘마이농가’ 서비스를 통해 농·축협 조합원에게 농업인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농가 서비스에서는 NH콕마이데이터를 통해 통합된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과 농업경영으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하여 영농손익을 분석해준다. 또한 거주지역과 영농형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농업정책자금 및 복지자금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인 농산물 판매 수입과 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농업인이 농협경제지주의 유통망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마이농가 서비스에서 자동적으로 농산물 판매 수입을 불러들일 수 있다.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출 내역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생성할 수 있다. 첫째, 조합원이 등록한 신용카드(타 금융기관 발급 카드 포함) 내역을 불러온 후, 그중에서 농자재 구입 등 농업 생산과 관련해서 지출한 항목을 체크하여 지출 정보를 자동 생성할 수 있다. 둘째, 증빙 등에 의거해서(증빙이 없으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직접 입력 가능) 조합원 스스로가 지출 내역을 직접 입력함으로써 지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영농일지 또한 조합원 스스로가 직접 입력한다.⁸³⁾

83) 관련 내용은 농협중앙회 ‘마이농가’ 담당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취득하였다(농협중앙회 이OO 과장. 2022. 10. 5. 전화 인터뷰.).

〈부도 3-2〉 NH코뱅크 마이농가 서비스



자료: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4. 시사점

우리나라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2018년 6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을 시작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2021년 보건복지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통합된 정보로 농업인이 농업 수익을 파악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통합된 금융 거래 내역 가운데 영농 활동과 관련된 내역만을 자동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다. 따라서 마이농가를 통해 농업 수입 및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농업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통합된 금융 거래 내역 가운데 영농 활동과 관련된 내역을 직접 선별한 후 수입 및 비용 관련 내용을 일일이 기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데이터 가운데 농업소득 및 지출 관련 내용을 자동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들어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만큼,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던 자산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합한 이후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를 통해 농업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수입·지출 정보 가운데 인공지능(AI), 머신러닝 등을 활용하여 영농 활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농업인이 직접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보관하고 소득을 기록하는 비용이 감소하여, 여러 기관에 분산된 농업 수입·지출 정보를 통합하고 손쉽게 관련 기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상남도. (2022).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공고.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
- 국세청. (2007). 2006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국세청. (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국세청. (2021a). 2020 국세통계연보.
- 국세청. (2021b).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권형근. (2017). “소득세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통한 세입확충 방안 검토: 자영업가구의 소득측소신고율 추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기획재정부. (2021). 조세개요 2021.
- 김문정. (2020). 과세자료 활용을 통한 특고종사자 소득파악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김재진. (2004).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김태호. (2000).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안종석, 기은선, 정경화(재인용). (2010).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제10권 제1호.
- 노현주. (2021).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 현황화 시사점. 보험연구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2). 농업경영장부(복식) 매뉴얼.
- 농림축산식품부. (2021).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 (2020). 농업회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실용화 연구.
- 농촌진흥청. (2021). 2020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 농협중앙회 내부자료.
- 명수환, 여민수, 홍승지. (2017).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제44권 제3호. pp.612-637.
- 박준기, 황의식, 김미복. (2010). 전업농의 투자행위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서상택, 전익수, 김성섭, 정우석, 박부용. (2012).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상택, 김성섭, 정효재. (2014). 농업회계 확대방안.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서상택, 정우석, 하지희. (2019).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 서상택, 김수진, 정윤희. (2020).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소순열, 유찬주, 장동헌, 황영모. (2007). 농업경영 기록 및 진단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신영임, 강민지. (2014).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 국회예산정책처.
- 안종석, 기은선, 정경화. (2010).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제10권 제1호.; 임소영, 김윤진, 이실(재인용).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 엄진영, 김부영. (2020). 고용보험제도의 농업부문 적용 가능성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한옥. (2008). 재정안정화를 위한 소득과약체계 정비방안 - 소득조사를 중심으로 -. 한국개발연구원.
- 이기호. (2021).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 및 보건복지 분야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학, 최세현, 손찬수, 하현정. (2012). “농업인의 경영기록 실태 및 특성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3권 제7호. pp.2937-2948.
- 일본 국세청. (2022a). 青色申告制度.
- 일본 국세청. (2022b). 帳簿の記帳のしかた-農業所得者用-.
- 일본 중소기업청,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2021). 農業経営に使える税制・融資・補助金について.
- 임소영, 김윤진, 이실, 안창남. (2016).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박지연. (2018). 농업부문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영준, 하인혜. (2021).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위한 농지 지원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소영, 김수린. (2022). 주요국 농업인 연금제도 사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규언, 오윤택. (2005). “자영업자의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유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6권 제3호. pp.7-28.
- 조경란. (2015). “농업회계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무역통상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선주, 민현주, 문성현, 이선행, 김효선. (20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보험 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 중소벤처기업부. (2022).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 중소기업부 공고 제2022-417호.
- 채광석, 김홍상, 윤성은. (2016).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관리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19).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세계농업 2019. 2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인혁, 정다운, 김진수. (2021).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최인혁, 정훈. (2021).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통계청. (2021a). 2020 농림어업총조사.
- 통계청. (2021b). 2020 농축산물생산비조사
- 통계청. (2022). 2021 농림어업조사.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 행정안전부. (2022).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
- 행정자치부. (2005). 2005 지방세정연감.
- JA 사가(佐賀). (2022). 청색신고회의 활동개요.
- JA 이와테. (2017). JA의 새로운 서비스, 농업경영관리지원사업 안내.
- Butler, J. (2013). “Farm Taxation in the UK and Ireland: Differences, Similarities and Current Challenges.” Irish Tax Review. 2.
- Blackburn, K., N. Bose. & S. Capasso. (2012). “Tax evasion, the underground economy and

- financial develop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83(2). pp.243-253.
- Maddala, G.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Econometric Society Monographs.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 (2020). *Taxation in Agriculture*.
- République Française. (2021). *Évaluations de Voies et moyens*.
- 국세기본법(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6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26조의2(<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1. 15.
-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시행: 2022. 5. 10.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28호, 2022. 5. 1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7. 13.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4. 4. 30. 대통령령 제25341호, 2014. 4. 30.,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4. 2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07호, 2018. 12. 24.,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4. 2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79호, 2021. 1. 5., 타법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4. 21.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495호, 2021. 10. 8., 타법개정). 제2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4. 21.
- 부가가치세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7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8조 제1항(<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6. 3.
- 세무사법(시행 2022. 11. 24. 법률 제18521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6조(<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8. 17.
- 소득세법(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2호, 2011. 9. 15., 타법개정)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5. 13.
- 소득세법(시행 2022. 7. 1.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2조, 제19조, 제80조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5. 6.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3. 1. 5. 대통령령 제32931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9조의4 (<https://www.law.go.kr/LSW/main.html>). 검색일: 2022. 10. 4.

경산농협 홈페이지(<https://kyungsan.nonghyup.com:8100/user/indexSub.do?codyMenuSeq=2016821&siteId=kyungsan&dum=dum&command=list&comSeq=2026527&parentMenuSeq=2026527&selectedSeq1=2026527&page=1>). 검색일: 2022. 10. 8.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eg/ei/eiEminsrr/retrieveEi350Info.do>). 검색일: 2022. 7.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main/main.do>). 검색일: 2022. 7. 14.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main.do>). 검색일: 2022. 7. 14.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종합소득세 개요. 검색일: 2022. 1. 15.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296&cntntsId=238910>). 신고 및 소득세 납부 방법. 검색일: 2022. 1. 15.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47&cntntsId=238923>).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안내. 검색일: 2022. 7. 26.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검색일: 2022. 10. 2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s://nongshinbo.nonghyup.com:8100/user/indexMain.do?siteId=nongshinbo>). 검색일: 2022. 10. 8.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https://www.apfs.kr/front/contents/sub.do?contId=90&menuId=%205325#>). 수입보장보험. 검색일: 2022. 10. 18.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https://www.mydatacenter.or.kr:3441/myd/index/index.do>). 검색일: 2022. 7. 21.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33). 신용카드 이용실적. 검색일: 2022. 7. 20.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농축산물생산비조사. 검색일: 2022. 5. 23.

NH농협 금융상품몰 홈페이지(<https://smartmarket.nonghyup.com/servlet/SFSL0071R.view>). 검색일: 2022. 10. 7.

야요이 홈페이지(<https://www.yayoi-kk.co.jp/>). 검색일: 2022. 7. 2.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rates>). 검색일: 2022. 10. 6.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 검색일: 2022. 8. 2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national-insurance/national-insurance-classes>). 검색일: 2022. 8. 24.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t-up-sole-trader>). 검색일: 2022. 8. 24.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what-records-to-keep>). 검색일: 2022. 8. 2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income-tax>). 검색일: 2022. 8. 2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working-for-yourself?step-by-step-nav=01ff8dbd-886a-4dbb-872c-d2092b31b2cf>). 검색일: 2022. 8. 29.

영국 정부 홈페이지(<https://www.gov.uk/self-employed-records/how-long-to-keep-your-records>). 검색일: 2022. 8. 29.

일본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a.go.jp/english/taxes/individual/pdf/incometax_2021/01.pdf). 검색일: 2022. 8. 1.

일본 MoneyForward 홈페이지(https://biz.moneyforward.com/tax_return). 검색일: 2022. 8. 23.

캐나다 농업금융서비스회사(Agriculture Financial Services Corporation) 홈페이지(<https://afsc.ca/income-stabilization/agristability>). 검색일: 2022. 9. 15.

JAいずも青色申告会 홈페이지(www.izmcci.or.jp). 검색일: 2022. 7. 25.

JA 홈페이지(<https://org.ja-group.jp/factbook>). (2006). JAの指導事業. 검색일: 2022. 7. 25.

The Accountancy 홈페이지(<https://www.theaccountancy.co.uk/tax>). 검색일: 2022. 7. 2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1. 11. 29.).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금융 마이데이터) 전면시행(’22.1.1일)에 앞서 ’21.12.1일 16시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파이낸셜 뉴스. (2021. 6. 1.). “국세청, 자영업자 소득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7. 1.). “개인 맞춤형 공공 정보(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다.” 검색일: 2022. 7. 21.

김OO(농업인, 농업법인 대표). 2022. 4. 13. 전화 인터뷰.

김OO(인력지원센터 관계자). 2022. 4. 21. 나주시.
김OO(산지유통인). 2022. 4. 29. 광주광역시.
노OO(농업인). 2022. 3. 22. 나주시.
농협중앙회 이OO 과장(마이농가 담당자). 2022. 10. 5. 전화 인터뷰.
변OO(대형 유통업체). 2022. 3. 28. 전화 인터뷰.
농협중앙회 신OO(농업경영자금 담당자). 2022. 10. 22. 전화 인터뷰.
윤OO(농업인). 2022. 1. 18. 영상 회의.
이OO(농협 관계자). 2022. 4. 14. 나주시.
이OO(산지유통인). 2022. 4. 27. 대구광역시.
이OO(도매시장 및 산지공판장). 2022. 3. 24. 전화 인터뷰.
전OO(농업인). 2022. 3. 22. 영암군.

KREI

www.krei.re.kr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Policy Tasks to Expand Farm Income Reporti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